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수탁보고 2019-15

발 간 등 록 번 호
58-9300000-000184-0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 연구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수탁보고 2019-15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진 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사 라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수탁보고 2019-15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 연구

발 행 일 2020년 3월
발 행 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주 소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54
전 화 044) 320-1000
팩 스 044) 320-3198
홈페이지 http://www.sje.go.kr/
인 쇄 처 경성문화사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58-9300000-000184-01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귀하

본 보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Ⅰ. 서론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및 범위 16
3. 연구 방법 17

Ⅱ. 사립유치원의 특성 및 법·제도 19

1. 사립유치원의 특성 19
2. 사립유치원 일반현황 20
3.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현황 30
4.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및 관련 법·지침 34
5. 현행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44

Ⅲ.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및 회계처리 현황 분석 53

1. 2019년도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예산 분석 53
2.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점 분석 80
3. 소결 84

Ⅳ.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관련 주요 논의 87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일반적 쟁점 87
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유치원 세입 예산과목 관련 논의 88
3.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유치원 세출 예산과목 관련 논의 98
4. 사립유치원 적립금 제도 관련 논의 104
5. 사립유치원 차입금 제도 관련 논의 123
6. 소결 125

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방안 **129**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선안 ····· 129
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5, 6] 개선안 ····· 129

참고문헌 **143**

부록 **147**

부록 1. 사립유치원 적립금 적립재원 ····· 147
부록 2.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 148
부록 3.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 ····· 149
부록 4.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매뉴얼 보완(안) ····· 152

표 목차

〈표 Ⅰ-3-1〉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실적 ····· 17
〈표 Ⅰ-3-2〉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 18
〈표 Ⅱ-1-1〉 유치원의 설립주체, 유형 및 운영형태 ····· 19
〈표 Ⅱ-2-1〉 2018년 유치원 개황 ····· 21
〈표 Ⅱ-2-2〉 2018년 설립유형별 유치원수 및 원아수 ····· 22
〈표 Ⅱ-2-3〉 2018년 시·도교육청별, 설립유형별 유치원수 ····· 22
〈표 Ⅱ-2-4〉 2018년 시·도교육청별, 설립유형별 유치원 원아수 ····· 23
〈표 Ⅱ-2-5〉 2018년 지역규모 및 유치원규모별 유치원수 ····· 25
〈표 Ⅱ-2-6〉 2018년 지역규모별 유치원 원아수 ····· 25
〈표 Ⅱ-2-7〉 2018년 시·도교육청별, 지역규모별 유치원 원아수 ····· 26
〈표 Ⅱ-2-8〉 설립연도별, 설립유형별 유치원수 및 원아수 ····· 27
〈표 Ⅱ-2-9〉 설립연도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수 ····· 28
〈표 Ⅱ-2-10〉 설립연도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원아수 ····· 28
〈표 Ⅱ-3-1〉 2019년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항목(누리과정지원비 제외) ····· 32
〈표 Ⅱ-3-2〉 2019년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규모(누리과정지원비 제외) ····· 33
〈표 Ⅱ-4-1〉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법령 ····· 37
〈표 Ⅱ-4-2〉 사립유치원 예산의 일반원칙 ····· 38
〈표 Ⅱ-4-3〉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업무흐름 ····· 40
〈표 Ⅱ-4-4〉 사립유치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 41
〈표 Ⅱ-4-5〉 사립유치원 성립전 예산 업무흐름 ····· 41
〈표 Ⅱ-5-1〉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예산과목 요약 ····· 46
〈표 Ⅱ-5-2〉 사립유치원 세입 예산과목 세부내역 ····· 47
〈표 Ⅱ-5-3〉 사립유치원 세출 예산과목 세부내역 ····· 50
〈표 Ⅲ-1-1〉 사립유치원 분석대상 ····· 53
〈표 Ⅲ-1-2〉 2019년 사립유치원 세입예산 규모 ····· 54
〈표 Ⅲ-1-3〉 2019년 사립유치원 세입예산 분포 ····· 56
〈표 Ⅲ-1-4〉 2019년 사립유치원 보조금및지원금 세입예산 ····· 58
〈표 Ⅲ-1-5〉 2019년 사립유치원 보조금및지원금 세입예산 분포 ····· 59
〈표 Ⅲ-1-6〉 2019년 사립유치원 수익자부담수입 세입예산 ····· 61
〈표 Ⅲ-1-7〉 2019년 사립유치원 수익자부담수입 세입예산 분포 ····· 62
〈표 Ⅲ-1-8〉 2019년 사립유치원 차입금 세입예산 규모 및 분포 ····· 63

〈표 Ⅲ-1-9〉 2019년 사립유치원 잡수입금 세입예산 규모 및 분포 ····· 64
〈표 Ⅲ-1-10〉 2019년 사립유치원 전년도이월금 세입예산 규모 및 분포 ····· 66
〈표 Ⅲ-1-11〉 2019년 사립유치원 세출예산 규모 ····· 67
〈표 Ⅲ-1-12〉 2019년 사립유치원 세출예산 분포 ····· 69
〈표 Ⅲ-1-13〉 2019년 사립유치원 인건비 세출예산 분포 ····· 70
〈표 Ⅲ-1-14〉 2019년 사립유치원 운영비 세출예산 분포 ····· 71
〈표 Ⅲ-1-15〉 2019년 사립유치원 일반교육활동비 세출예산 분포 ····· 72
〈표 Ⅲ-1-16〉 2019년 사립유치원 선택적교육활동비 세출예산 분포 ····· 74
〈표 Ⅲ-1-17〉 2019년 사립유치원 적립금 세출예산 분포(1) ····· 75
〈표 Ⅲ-1-18〉 2019년 사립유치원 적립금 세출예산 분포(2) ····· 77
〈표 Ⅲ-1-19〉 2019년 사립유치원 적립금 세출예산 분포(3) ····· 77
〈표 Ⅲ-1-20〉 2019년 사립유치원 상환금 세출예산 분포(1) ····· 78
〈표 Ⅲ-1-21〉 2019년 사립유치원 시설·설비비 세출예산 분포 ····· 79
〈표 Ⅲ-2-1〉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오류 주요 사례 ····· 82
〈표 Ⅳ-2-1〉 사립유치원 측의 세입 '보조금 및 지원금' 관 과목 변경 주장 ····· 88
〈표 Ⅳ-2-2〉 사립유치원 측의 세입 '수익자부담수입' 관 과목 변경 주장(1) ····· 90
〈표 Ⅳ-2-3〉 사립유치원 측의 세입 '수익자부담수입' 관 과목 변경 주장(2) ····· 91
〈표 Ⅳ-2-4〉 사립유치원 세입 중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개선(안) ····· 94
〈표 Ⅳ-2-5〉 사립유치원 세입 중 차입금 개선(안) ····· 94
〈표 Ⅳ-2-6〉 초중등학교 학교발전기금 주요 법령 및 조항 ····· 95
〈표 Ⅳ-2-7〉 사립유치원 기부·후원금 주요업무 및 내용(안) ····· 97
〈표 Ⅳ-2-8〉 사립유치원 세입 '교육 부대 및 그밖의 수입' 신설·조정(안) ····· 98
〈표 Ⅳ-3-1〉 사립유치원 세출 중 방과후과정비에 대한 개선(안) ····· 101
〈표 Ⅳ-3-2〉 사립유치원 세출 중 상환금 개선(안) ····· 101
〈표 Ⅳ-3-3〉 사립유치원 세출 중 시설비 개선(안) ····· 103
〈표 Ⅳ-3-4〉 사립유치원 세출 중 반환금 개선(안) ····· 104
〈표 Ⅳ-4-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 104
〈표 Ⅳ-4-2〉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105
〈표 Ⅳ-4-3〉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 106
〈표 Ⅳ-4-4〉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107
〈표 Ⅳ-4-5〉 적립금액 산출식 ····· 108
〈표 Ⅳ-4-6〉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2019년) ····· 109
〈표 Ⅳ-4-7〉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2 제4항 후단) 개선(안) ····· 110
〈표 Ⅳ-4-8〉 시·도별 사립유치원 적립금 한도 ····· 111

〈표 Ⅳ-4-9〉 시·도별 사립유치원 적립금 적립기간 ····· 112
〈표 Ⅳ-4-10〉 2019년 사립유치원 적립금 세출예산 편성 현황 ····· 113
〈표 Ⅳ-4-11〉 2019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적립금(유치원정보공시 세출예산자료) ····· 113
〈표 Ⅳ-4-12〉 2019년 사립유치원 시설비 편성 현황(전체) ····· 114
〈표 Ⅳ-4-13〉 2019년 사립유치원 시설비 편성 현황(내용연수 도과 유치원 대상) ····· 115
〈표 Ⅳ-4-14〉 사립학교(초·중·고) 자산취득비 결산 현황 ····· 116
〈표 Ⅳ-4-15〉 어린이집 유형별 적립금 및 재산조성비 현황(2017년) ····· 117
〈표 Ⅳ-4-16〉 어린이집 규모별 적립금 및 재산조성비 현황(2017년) ····· 117
〈표 Ⅳ-4-1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 118
〈표 Ⅳ-4-18〉 적립금 적립한도 관련 검토 결과 ····· 119
〈표 Ⅳ-4-19〉 사립유치원 정원충족률 대비 적립금 한도 허용(안) ····· 120
〈표 Ⅳ-4-20〉 2019년도 사립유치원 원장·설립경영자 인건비 예산(○○교육청 일부) ····· 120
〈표 Ⅳ-5-1〉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4조 및 제8조 제1항 ····· 123
〈표 Ⅳ-5-2〉 차입금 종류 및 차입처 ····· 123
〈표 Ⅴ-2-1〉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 129
〈표 Ⅴ-2-2〉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 131
〈표 Ⅴ-2-3〉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세부내역 포함 ·· 134
〈표 Ⅴ-2-4〉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세부내역 포함 · 138

그림 목차

[그림 Ⅱ-2-1] 영유아 장래인구추계 ····· 30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1〉 사립유치원 적립금 적립재원 ····· 147
〈부록 표 2〉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 148
〈부록 표 3〉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 ····· 149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개정(2017. 2.24.) 및 시행(2017. 9. 1.)됨에 따라 2018학년도 회계부터는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세입세출예산과목(별표 5, 6)이 적용되고 있음.

□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 이후, 10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교육부, 2018)에 따라 2019년 3월 1일부터 현원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의무대상으로 하여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임.

□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논의와 함께, 사립유치원 현장 및 관련 단체는 여전히 현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이 현장의 목소리와 특성을 반영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적용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쟁점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면서 규칙의 현장 적합성과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 관련 법·제도를 파악함.

□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현황, 예산 편성·집행 시 문제점을 분석함.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함.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안 도출 및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보완

다. 연구방법

□ 문헌분석 및 자료수집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세미나 개최(7회, 변호사, 회계사, 교수, 현장 등)

□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개최(2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4회)

2. 연구의 배경

가. 사립유치원 일반현황

□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유치원은 9,021개원이고, 이 중 국립은 3개원, 공립은 4,798개원, 사립유치원은 4,220개원으로,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46.8%를 차지함.

○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 비해 유치원수는 적지만(46.8%), 그 외에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는 70% 이상으로 공립유치원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요약표 1〉 2018년 유치원 개황

단위: 개원, %

구분	계	국립	공립	사립	비율
유치원수	9,021	3	4,798	4,220	46.8
학급수	37,748	15	10,881	26,852	71.1
원아수	675,998	249	172,121	503,628	74.5
교원수	54,892	22	15,847	39,023	71.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18.4.1. 조사기준

○ 사립유치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인(私人)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전체 사립 유치원의 86.2%를 차지하였음.

〈요약표 2〉 2018년 설립유형별 유치원수 및 원아수

단위: 개원, 명

구분	설립유형		유치원수	원아수(%)
국공립유치원	국립		3	249(0.004%)
	공립		4,798	172,121(25.5%)
	계		4,801	
사립유치원	사인		3,637	503,628(74.5%)
	법인	학교법인	130	
		사단법인	44	
		재단법인	360	
		사회복지법인	11	
		기타	-	
		소계	545	
	군부대		12	
	기타		26	
	계		4,220	
전체			9,021	675,998(10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18.4.1. 조사기준

□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영유아수의 급감을 초래하고 있다.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수는 2017년 1,406,856명에서 2027년 871,093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2028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하여 2035년까지 1,062,950명으로 증가한 후, 이를 정점으로 이후 206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39,275명으로 예상됨.

나.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현황

□ 사립유치원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임.

○ 유아교육 전체 재원 중 공공 재원의 비율은 2014년도 기준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아학비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의 지원 예산액은 1조 6천억 원임.[1)]

□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하고 시·도교육청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지원 항목으로는 학급운영비, 교사기본급보조비, 단기대체교사, 급식비(식품비), 방과후과정 관련 지원비 등이 있음.

○ 2019년도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4,990.3억원 수준이었음.

○ 예산지원항목으로는 교사기본급 보조비 2,566.2억원(51.4%), 급식비(식품비) 지원 1,130.8억원(22.7%), 학급운영비 지원 843.9억원(16.9%)으로 3가지 항목이 전체의 91.0%를 차지하였음.

다.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세입세출 예산과목

□ 세입 예산과목은 9관 16항 32목, 세출 예산과목은 10관 16항 43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 · 특색과 관할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및 회계처리 현황 분석

가. 2019년도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예산 분석

□ 2019년 사립유치원 예산 분석은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였음.

○ 공시된 사립유치원 3,812개 중 3,750개 사립유치원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분석함.

---

1)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 등. 공보 제274호. 867 [기각]

* 세입-세출 총예산액이 0원이거나 1천만원 미만(단위 오류 의심)인 사립유치원 62개를 분석에서 제외함.

□ 2019년 사립유치원 세입예산 분석

○ 2019년 사립유치원 세입예산 총규모는 3조 1,888억원 규모임.

○ 세입예산과목별 비중은 보조금 및 지원금(54.5%)과 수익자부담수입(42.3%)이 전체 세입의 96.8%를 차지하였고, 전년도이월금 2.0%, 설치·경영자이전수입 0.4%, 적립금이전수입 0.4%, 차입금 0.2%, 잡수입금 0.2% 순으로 나타남.

- 설립유형별로는 법인 사립유치원은 사인 사립유치원에 비해 수익자부담수입 비율이 다소 낮은 반면, 전년도이월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현원규모별로는 현원규모가 적어질수록 보조금 및 지원금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수익자부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음.

○ 보조금 및 지원금(관)은 공통과정지원금(70.9%),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17.5%), 일반운영보조금(10.2%(교육청 7.1%, 지자체 2.8%))이 98.6%를 차지함.

○ 수익자부담수입은 교육비(63.2%:(일반교육과정비 62.2%, 입학금 0.9%)), 방과후과정비(18.7%), 급간식비(10%),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4.3%)임.

○ 차입금 규모는 약 71억원이며, 이 중 단기차입금이 47억원(65.4%)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함.

○ 전년도 이월금은 이월사업비,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기타가 각각 223억원(35.6%), 2억원(0.4%), 397억원(63.2%), 5억원(0.9%)로 나타남.

□ 2019년 사립유치원 세출예산 분석

○ 2019년 사립유치원 세출예산 총규모는 3조 2,020억원 규모임.

○ 세출예산에서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0.0%, 일반교육활동비 17.2%, 선택적교육활동비 15.2%, 운영비 9.3%, 시설설비비 3.7%, 적립금 0.4%, 예비비 0.2%, 지연지출금 0.1%, 상환금 0.1%, 잡지출 0.0%, 반환금 0.0%임.

- 설립유형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법인 사립유치원은 사인 사립유치원에 비해 적립금, 시설설비비, 예비비 비중이 더 높았고, 사인 사립유치원은 일반교육활동비와 선택적교육활동비가 좀더 높게 나타남.
- 현원규모별로는 현원규모가 적어질수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일반교육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음. 선택적교육활동비는 현원규모에 상관없이 비슷하였고, 규모가 커질수록 적립금, 시설설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규모에 비해 다소 컸음.

○ 인건비(관)는 교원인건비, 직원인건비, 그 밖의 인건비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72.4%, 22.6%, 5.0%를 차지하였음. 약 70%가 담임교사 등 정규직 교원 인건비로 편성함.

○ 운영비(관)는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 2개 항으로 각각 91.5%, 8.5%를 차지하였음.

○ 일반교육활동비(관)는 일반급식비·간식비, 교사연수·연구비가 각각 43.8%, 36.3%로 일반교육활동비의 80.1%를 차지함.

○ 선택적교육활동비(관)는 방과후교육활동과 그 밖의 교육활동비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선택적교육활동비에서 68.0%, 32.0%를 차지함.

○ 적립금(관)을 편성한 사립유치원수는 총 3,750개원 중 437개원으로 11.7%가 편성하였고, 전체 적립금규모는 139억원 수준임.

- 설립유형별로는 법인 사립유치원 중 18.9%(107개원), 사인 사립유치원 중 10.4%((330개원)가 적립금을 편성하였고, 현원규모로는 100~200인 미만 사립유치원 중 16.1%(267개원),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중 14.2%(58개원)가 적립금을 편성하였음.

- 개원연도와 현원규모에 따라 적립금 세출예산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개원연도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적립금을 편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에서 상대적으로 적립금을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아당으로 산출하여 적립금 편성액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257천원, 월 2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적립금 재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설치·경영자 이전수입(법정부담금 제외), 잡수입금, 순세계잉여금 세입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세입예산 중 적립금 재원이 가능한 규모는 총 2조 1,449억원 규모임.

  · 실제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437개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가능 재원 총액은 2,927억원 규모였으며, 원아당으로 386천원 규모임.

  · 실제 적립금 편성규모는 139억원 규모로 적립금 가능재원 총액의 4.8% 수준이고, 원아당으로 산출하면 5.5%임[2].

○ 상환금(관)을 편성한 사립유치원수는 총 3,750개원 중 101개원으로 2.7%가 편성하였고, 전체 상환금규모는 38억원 수준으로 이중 단기차입상환금은 약 18억 8천만원, 장기차입상환금이 약 19억 7천만원 규모임.

- 유치원당 상환금 규모는 전체 기준으로는 원당 1,028천원, 상환금을 편성한 유효 유치원 기준으로는 원당 38,165천원으로 나타남.

2) 5% 미만은 303개원, 5%~10% 미만은 100개원이었고, 10%~20% 미만은 26개원, 20% 이상인 유치원은 8개원이 있었음.

○ 시설·설비비(관)은 시설비와 설비·비품비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66.1%, 33.9%를 차지함.

나.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점 분석

□ 예산편성·집행의 근거 불충분

○ 교직원이 아닌 설립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근거없는 급여 또는 수당을 지출을 하거나, 일부 교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원장 및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등과 관련한 서류 미비(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예산편성 오류 및 집행 상 부적절

○ 예산과목 편성 오류

-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함에도 누락하는 경우 발생
- 일부 교직원에 대한 4대보험 미편성 및 수익자부담수입의 세입·세출 예산액 미일치
- 시설비에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불법 편성
- 인건비에 대출상환금(목)을 신설하여 편성하는 경우

○ 예산 집행 부적절

- 예산지출 대상자에 아닌 경우에도 퇴직금이나 사학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
-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관련 비용을 지출(개인의 보험료, 과태료, 재산세, 양도소득세, 통신요금, 개인채무 상환, 개인차량 할부금, 주유비, 가족 소유 시설비 등)
- 유치원연합회 기부금, 동창회비, 대학축제 후원금 등 유치원회계에서 지출
- 사전 승인 없이 적립금 중도 인출
- 유치원회계에서 원장 소유 타 기관회계로의 부적절한 비용 이체
- 당초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관할청 보고 등 행정처리 미준수

○ 적립금과 관련하여 관할청에 사전 보고 및 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거나,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없이 편성·집행하는 경우 발생

○ 예결산에 대한 관할청 보고 미준수

○ 지출명령자와 지출원의 날인이 없는 지출결의서 작성 지급 등

4.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관련 주요 논의

가. 세입 관련

□ 보조금과 지원금의 분리 등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통과정지원금과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은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을 한 보호자의 인증을 거쳐 매월 유치원으로 입금되는 유아학비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공공재원의 대부분이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현행 사학기관 재무·규칙 별표5에는 교사(校舍) 등 시설·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으로 자본보조금을 두고 있는데, 사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자본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는 시설·설비보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 수익자부담수입(관) 용어를 학부모부담수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 항-목 체계는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함.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교육비(입학금, 일반교육과정비)와 수익자부담수입에 대한 집행을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

□ 급식비·간식비를 기본적인 교육비에 포함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익자부담경비로서 별도로 편성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임. 다만, 향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시 관련 항목을 별도로 산출하는 등 지역이나 사립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 하에 일정수준의 급·간식비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기존의 설치·경영자이전수입 관을 이전수입으로 변경하고, 유치원 설립유형과 이전수입 기관 등을 고려하여 목 과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및 재해보상 부담금 등에 대한 전입금과 유치원으로 교부하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설치·경영자이전수입을 법인법정부담금과 그밖의 이전수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자방자치단체, 교육청 이외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등에 대한 (항)기타공공이전수입 대한 과목 신설이 필요함.

□ 적립금은 건축적립금과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이 있고, 사전에 관할청이 사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당초 적립금이전수입을 건축적립금과 그밖의 적립금으로 구분함.

□ 기부·후원금은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 별도관리가 필요하나, 소규모와 현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유치원회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최소한 기부·후원금의 경우 기부후원 일지, 기부후원자, 기부후원금 용도 등이 포함된 접수·관리대장과 출납부는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잡수입, 기부·후원금 수입, 지연수납수입, 행정활동 수입은 현재 발생비율이나 금액규모가 작아 예산과목 명칭과 배열을 조정하여 '교육 부대 및 그 밖의 수입' 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잡수입, 기부·후원금 수입, 지연수납수입은 현 유치원에서 필요한 과목이나 그 규모나 빈도가 낮아 교육부대 및 그 밖의 수입 관을 신설하여 교육부대 수입, 이자 및 잡수입 항을 신설함.

나. 세출 관련

□ 운영비 관과 관련하여 관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항을 구분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관리비와 운영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관항목 체계를 유지하는 입장도 있음. 현장의 혼란과 일부 유연성의 보장을 위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적립금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현행 적립금을 건축적립금과 그밖의 적립금으로 구분함.

□ 상환금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되어 있으나, 상환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 잡지출은 법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소송비나 보상금, 각종 사례금, 원단위 절사금 등 다른 세출예산과목에 편성할 수 없는 성격의 지출이 있어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신·증축비와 대규모 수선 및 개·보수 등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 시설부대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기존의 시설비-신·증축비와 유지비를 시설비로 용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반환금에 사립유치원 재원아의 퇴원이나 출결일수 부족으로 인한 지원금 반납 등 지원금 과오납 등으로 인한 반환계정을 신설함.

다. 적립금 및 차입금

□ 적립금 적립시 감가상각비를 편의상 건축적립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도과한 내용연수분에 대해서는 유아들에 대한 직접교육비 축소 우려 등으로 소급하여 적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를 우선 고려하고, 최초 취득가액 서류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 건물가액에 대한 서류를 증빙하도록 하며, 건물기준시가나 검인계약서 등을 활용함.

□ 감가상각에 의해 건축적립금을 적립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적립한 적립금이 개보수 비용에 못미치거나, 내용연수가 도과한 사립유치원은 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어 실제 활용가능성이 낮아짐. 이에 기존 감가상각비 적용 방식이 아닌, 건축적립금에 한해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실제 건축비(예를 들어 시공 견적)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통학차량적립금은 신규 통학차량 구입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노후 통학차량 교체로 구분하고, 노후 통학차량 교체를 위한 적립금은 기본적으로 건축적립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교체의 경우 잔존가액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도록 함.

□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적립금 편성은 유아교육의 질 저하와 유아의 학습권에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고,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한도액을 일정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립금 적정한도를 적립금 적정한도 5% 이내와 5~10% 이내 등 2개안으로 제안하고, 적립기간은 5년 이내에서 추가로 관할청 승인하에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사립유치원 적립금 한도액 설정시 추가로 정원충족률과 원장·설립경영자 인건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인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적립한도 비율을 100%, 이후, 정원충족률이 5% 하락할 때마다 적립한도액 비율을 일정비율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 유아교육의 질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장·설립경영자의 인건비 비율이 적립금 재원 대비 20% 이상인 경우에는 적립금을 허용하지 않을 필요도 있음.

□ 적립금이 있는 경우 사인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할 경우, 관할청은 적립금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원 승인 불허를 원칙으로 하여 적립금이 유용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적립금 현황에 대해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홈페이지, 유치원알리미 공시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차입금은 그 용도가 적립금과 유사하기에 적립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차입은 유치원의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리고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립유치원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행처럼 차입금액, 사유, 방법과 상환방법, 계획에 대한 관할청의 사전 허가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임. 이를 통해 무분별한 차입이나 공금 유용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함.

5.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세입·세출예산과목[별표5,6] 개선안

〈요약표 3〉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현행			개선(안)		
관	항	목	관	항	목
1. 보조금 및 지원금			1. 보조금 및 지원금 수입		
	1. 공통과정지원금			1. 공통과정 지원금 수입	
		1. 공통과정지원금			1. 공통과정 지원금
	2.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2.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수입	
		1.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1.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수입	
		1. 국가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4. 자본 보조금			4. 시설 설비 보조금 수입	
		1. 국가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5. 일반운영 보조금			5. 일반운영 보조금 수입	
		1. 국가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2. 수익자부담수입			2. 학부모부담금 수입		
	1. 교육비			1. 교육비 수입	
		1. 입학금			1. 입학금
		2. 일반 교육과정비			2. 일반 교육과정 수업료
	2. 방과후과정비			2. 방과후과정비 수입	
		1. 방과후교육 · 돌봄비			1. 방과후교육 · 돌봄비
		2. 방과후특성화비			2. 방과후특성화비
	3. 급식비 · 간식비			3. 급식비 · 간식비 수입	
		1. 일반급식비 · 간식비			1. 일반급식비 · 간식비
		2. 특별급식비 · 간식비			2. 특별급식비 · 간식비
	4.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4.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1. 현장체험학습비			1. 현장체험학습비
		2. 통학차량이용비			2. 통학차량이용비
		3. 졸업앨범비			3. 졸업앨범비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현행			개선(안)		
관	항	목	관	항	목
3. 설치 · 경영자이전수입			3. 이전수입		
	1. 설치 · 경영자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1. 설치 · 경영자이전수입			1. 법인법정부담금
					2. 그 밖의 이전수입
				2. 기타 이전수입	
					1. 기타 공공이전수입
4. 차입금			4. 차입금		
	1. 차입금			1. 차입금	
		1. 단기차입금			1. 단기차입금
		2. 장기차입금			2. 장기차입금
5. 적립금이전수입			5.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1. 건축적립금
					2. 그 밖의 적립금
6. 잡수입금			6. 교육 부대 및 그 밖의 수입		
	1. 잡수입금			1. 교육 부대 수입	
		1. 이자수입			1. 지연수납수입
		2. 행정활동수입			2. 기부 · 후원금수입
7. 기부 · 후원금수입					
	1. 기부 · 후원금수입			2. 잡수입	
		1. 기부 · 후원금수입			1. 이자수입
					2. 행정활동수입
8. 지연수납수입					
	1. 지연수납수입				
		1. 지연수납수입			
9. 전년도이월금			7. 전년도 이월금 수입		
	1. 전년도이월금			1. 전년도 이월금 수입	
		1. 이월사업비			1. 이월사업비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2. 정산대상재원잔액
		3. 순세계잉여금			3. 순세계잉여금

〈요약표 4〉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현행			개선(안)		
관	항	목	관	항	목
1. 인건비			1. 인건비		
	1. 교원인건비			1. 교원인건비	
		1. 급여			1. 급여
		2. 수당			2. 수당
		3. 복리후생비			3. 복리후생비
		4. 법정부담금			4. 법정부담금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 직원인건비			2. 직원인건비	
		1. 급여			1. 급여
		2. 수당			2. 수당
		3. 복리후생비			3. 복리후생비
		4. 법정부담금			4. 법정부담금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 그 밖의 인건비			3. 그 밖의 인건비	
		1. 그 밖의 인건비			1. 그 밖의 인건비
2. 운영비			2. 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수용비			1. 수용비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3. 연료비			3. 연료비
		4. 여비			4. 여비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2. 업무추진비			2. 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3. 일반교육활동비			3. 일반교육활동비		
	1. 일반교육활동비			1. 일반교육활동비	
		1. 교사연수 · 연구비			1. 교사연수 · 연구비
		2. 교재 · 교구구입비			2. 교재 · 교구구입비
		3. 행사비			3. 행사비
		4. 장학금			4. 장학금
		5. 복리비			5. 복리비
		6. 일반급식비 · 간식비			6. 일반급식비 · 간식비

현행			개선(안)		
관	항	목	관	항	목
4. 선택적교육활동비			4. 선택적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 · 돌봄비			1. 방과후교육 · 돌봄비 인건비
		2. 방과후특성화비			2. 방과후교육 · 돌봄비 운영비
					3. 방과후특성화비
	2. 그 밖의 교육활동비			2. 그 밖의 선택적 교육활동비	
		1. 현장체험학습비			1. 현장체험학습비
		2. 통학차량이용비			2. 통학차량이용비
		3. 특별급식비 · 간식비			3. 특별급식비 · 간식비
		4. 졸업앨범비			4. 졸업앨범비
		5. 수익자부담재원교육활동비			5. 그 밖의 선택적 교육활동비
5. 적립금			5. 적립금		
	1. 적립금			1. 적립금	
		1. 적립금			1. 건축적립금
					2. 그 밖의 적립금
6. 상환금			6. 상환금		
	1. 상환금			1. 상환금	
		1. 단기차입상환금			1. 단기차입상환금
		2. 장기차입상환금			2. 장기차입상환금
7. 반환금					3. 이자상환금
	1. 반환금				
		1. 보조금반환금			
		2. 수익자반환금			
8. 시설 · 설비비			7. 시설 · 설비비		
	1. 시설비			1. 시설비	
		1. 신 · 증축비			1. 시설비
		2. 유지비			
	2. 설비 · 비품비			2. 설비 · 비품비	
		1. 취득비			1. 취득비
		2. 유지비			2. 유지비
9. 지연지출금			8.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현행			개선(안)		
관	항	목	관	항	목
10. 잡지출			9. 잡지출		
	1. 잡지출			1. 잡지출	
		1. 잡지출			1. 잡지출
11. 예비비			10. 예비비 및 반환금		
	1. 예비비			1. 예비비	
		1. 예비비			1. 예비비
				2. 반환금	
					1. 보조금반환금
					2. 수익자반환금
					3. 지원금반환금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2017. 2. 24.) 및 시행(2017. 9. 1.)함에 따라 2018학년도 회계부터는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세입세출예산과목이 적용되고 있음.

○ 기존에 사립 유치원이 초·중등학교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사립유치원의 회계 처리 기준, 사립 유치원 회계의 예산 항목 구분 및 그 세입 · 세출 결산에 관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립 유치원의 운영 실정에 맞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3)]

-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하게 하여, 공통과정지원금은 정부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보조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유치원에 직접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으로, 수익자부담수입은 학비 등 학부모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구분함(교육부 보도자료, 2017. 2. 27.).
- 또한 세출에서는 노후시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교육부 보도자료, 2017. 2. 27.).

○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개정 재무회계 규칙의 조기정착을 위해 먼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사립유치원에 맞게 별도로 추가된 재무회계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였고(교육부, 2017), 시·도교육청별로 별도로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 특히,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가 촉발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교육부, 2018)이 발표 되면서 따라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중요 과제로 추진됨.

-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유치원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수입관리 및 지출, 결산 등 에듀파인 회계 필수 기능 중심으로 사용하

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082&ancYd=20170224&ancNo=00122&efYd=201709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년 3월 18일 인출

도록 함(교육부 보도자료, 2019. 1. 1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현장 및 관련 단체는 여전히 현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이 현장의 목소리와 특성을 반영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적용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쟁점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면서 규칙의 현장 적합성과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련 규정과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하고, 사립유치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함.
-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을 중심으로 쟁점을 논의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함. 특히 사립유치원의 적립금과 차입금 제도 및 운용 상 개선점을 논의함.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별표 5,6)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하여 현행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보완함.

2.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법·제도 분석 및 세입·세출 현황 분석

○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현황 및 회계관련 법·지침 분석

○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예산 분석 및 회계처리 현황 분석

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쟁점 및 개선방안 논의

○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 세입세출예산과목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논의

○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및 차입금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

다.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안 마련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별표 5, 6) 세출 예산과목 개선안 마련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현장 안착을 위한 재정업무 매뉴얼 보완

3.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및 자료수집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관련 법 및 규정, 관련 지침 등 문헌 수집·검토,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유치원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한 2019년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예산을 분석함.

○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및 적립금·차입금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나. 자문회의 및 세미나개최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세미나를 통해 최종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7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과 1회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표 Ⅰ-3-1〉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실적

구분	전문가	주요내용
4. 17.	○○○회계사	재무회계규칙 개선을 위한 쟁점 논의
5. 28.	○○○회계사	사립유치원의 법적 위치 및 근거, 현 쟁점 논의
5. 30.	○○○유치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처리 방식, 개선사항 논의
5. 31.	○○○교수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 쟁점 및 개선사항 논의
6. 13.	○○○회계사, ○○○변호사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 관련 용어, 법적근거, 쟁점 논의
9. 4.	○○○교수, ○○○교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별표 5,6 개선 사항 논의
11. 27	○○○교수, ○○○교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 등 보고서 서면 검토
11. 28	○○○교수, ○○○박사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정책세미나

다.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개최

○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관련 담당자 회의 1회와 전체 워크숍을 개최(2회)를 통해 사립유치원을 관리·감독에 따른 현행 재무·회계규칙의 개선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였음.

〈표 Ⅰ-3-2〉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구분	전문가	주요내용
9. 26.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2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별표 5,6 현장적합성(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별표 5,6 개선 사항 논의
10. 1.	제1차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별표 5,6 현장적합성(에듀파인 포함)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별표 5,6 개선 사항 논의
11.13.	제2차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별표 5,6 개선에 따른 의견 수렴 등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원활한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의 재무회계규칙 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와의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개최하였음.

Ⅱ. 사립유치원의 특성 및 법·제도

1. 사립유치원의 특성

가. 사립유치원 특성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7조에 의해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이며,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노승부, 2014).

- 그 중 사립유치원은 법인 혹은 사인이 세운 기관을 의미하고, 법인화 여부에 따라 법인유치원과 비법인 유치원으로 구별함.
-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 유아교육기관은 주로 종교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주로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하며, 종교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와 군에서 운영되는 유치원도 포함됨.

〈표 Ⅱ-1-1〉 유치원의 설립주체, 유형 및 운영형태

구분	설립주체	유형	운영형태
국공립유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설유치원	유아교육을 위해 단독으로 설치된 유치원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장과 유치원감 아래 독립된 공간에서 유아교육 전용 시설을 갖추고 운영함.
		병설유치원	국립대학 또는 공립 초등학교와 함께 있으면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원장과 원감을 겸임하여 유치원을 운영함.
사립유치원	개인	비법인유치원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하며, 개인 이외 종교단체, 군부대 등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있음.
	법인	법인유치원	종교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해 운영함.

자료: 김병주·김성기·오범호(2011). 유치원재무회계규칙 제정의 쟁점과 방향. pp. 27-28.

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 교육기본법 제9조, 사립학교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이며, 공공성을 가져야만 하는 학교임.

- 교육기본법 제9조 1항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2항은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제2조 1항은 “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유아교육법 제 2조 2항은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설립, 감독기관의 지도와 감독, 교직원의 임무와 자격, 교육과정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음.[4)]

-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관계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 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함.

○ 사립유치원은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교지와 교사의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매년 감면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참조) 등 공공성을 가진 학교로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5)]

○ 또한 유치원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19-189호)은 3~5세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의 모든 유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2. 사립유치원 일반현황

가. 사립유치원 현황

○ 유치원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유치원은 9,021개원이고, 이 중 국립은 3개원, 공립은 4,798개원, 사립유치원은 4,220개원으로,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46.8%를 차지함.

---

4)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 등. 공보 제274호. 867 [기각]
5)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 등. 공보 제274호. 867 [기각]

- 유치원 학급 현황은 총 37,748개이고, 이 중 국립은 15개, 공립은 10,881개, 사립은 26,852개로, 사립유치원이 전체 학급수의 71.1%를 차지하고 있음.
- 원아수는 전체 675,998명 중 국립은 249명, 공립은 172,121명, 사립은 503,628명으로, 사립유치원이 전체 원아수의 74.5%를 차지함.
- 교원수는 전체 54,892명 중 국립은 22명, 공립은 15,847, 사립은 503,628명으로, 사립유치원이 전체 교원수의 71.1%를 차지함.

○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 비해 유치원수는 적지만(46.8%), 그 외에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는 70% 이상으로 공립유치원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표 Ⅱ-2-1〉 2018년 유치원 개황

단위: 개원, %

구분	계	국립	공립	사립	비율
유치원수	9,021	3	4,798	4,220	46.8
학급수	37,748	15	10,881	26,852	71.1
원아수	675,998	249	172,121	503,628	74.5
교원수	54,892	22	15,847	39,023	71.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18.4.1. 조사기준

○ 사립유치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인(私人)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전체 사립 유치원의 86.2%를 차지함.

- 사립유치원 설립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4,220개 사립유치원 중 사인설립 유치원이 3,637개원(86.2%), 법인 545개원(12.9%), 군부대 12개원(0.3%), 기타 26개원(0.6%)이었음.
- 법인설립 사립유치원 중 학교법인 130개원(23.9%), 사단법인 44개원(8.1%), 재단법인 360개원(66.1%), 사회복지법인 11개원(2.0%)으로 나타나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이 대부분이었음.

○ 전체 원아수는 675,998명이었고, 이 중 국립유치원 원아수는 249명(0.04%), 공립유치원은 172,121명(25.5%), 사립유치원은 503,628명(74.5%)으로 대부분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만큼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음을 의미함.

〈표 Ⅱ-2-2〉 2018년 설립유형별 유치원수 및 원아수

단위: 개원, 명

구분	설립유형		유치원수	원아수(%)
국공립유치원	국립		3	249(0.004%)
	공립		4,798	172,121(25.5%)
	계		4,801	
사립유치원	사인		3,637	503,628(74.5%)
	법인	학교법인	130	
		사단법인	44	
		재단법인	360	
		사회복지법인	11	
		기타	-	
		소계	545	
	군부대		12	
	기타		26	
	계		4,220	
전체			9,021	675,998(10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18.4.1. 조사기준

○ 시·도교육청별 유치원수 비율은 경기가 2,275개원(25.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76개원(9.7%), 경북 709개원(7.9%), 경남 691개원(7.7%) 순이었음. 세종은 59개원(0.7%)으로 가장 적었음.

-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가 1,096개원(26.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50개원(15.4%)로 높게 나왔고, 세종과 제주는 1% 미만이었음.
-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74.2%, 부산 76.0%, 대구 71.5%, 인천 60.5%, 광주 58.9%, 대전 63.6%, 울산 59.4%, 경기 48.2%로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경기를 제외한 도지역은 사립유치원 비율이 4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Ⅱ-2-3〉 2018년 시·도교육청별, 설립유형별 유치원수

단위: 개원, %

시도	전체 (A)	국립	공립			사립				사립유치원 비율	
			계	단설	병설	계 (B)	사인	법인	기타	전체 대비	B/A
전체	9,021	3	4,798	381	4,417	4,220	3,637	545	38	100.0	46.8

시도	전체 (A)	국립	공립			사립				사립유치원 비율	
			계	단설	병설	계 (B)	사인	법인	기타	전체 대비	B/A
서울	876	-	226	24	202	650	512	125	13	15.4	74.2
부산	413	-	99	20	79	314	264	49	1	7.4	76.0
대구	369	-	105	19	86	264	231	32	1	6.3	71.5
인천	423	-	167	13	154	256	240	16	-	6.1	60.5
광주	314	-	129	11	118	185	165	18	2	4.4	58.9
대전	269	-	98	9	89	171	150	19	2	4.1	63.6
울산	197	-	80	7	73	117	110	5	2	2.8	59.4
세종	59	-	56	37	19	3	2	1	-	0.1	5.1
경기	2,275	-	1,179	87	1,092	1,096	999	92	5	26.0	48.2
강원	373	1	262	23	239	110	88	20	2	2.6	29.5
충북	341	1	245	23	222	95	78	17	-	2.3	27.9
충남	511	1	373	22	351	137	108	26	3	3.2	26.8
전북	531	-	365	20	345	166	143	23	-	3.9	31.3
전남	551	-	434	24	410	117	99	18	-	2.8	21.2
경북	709	-	465	17	448	244	187	54	3	5.8	34.4
경남	691	-	418	25	393	273	254	16	3	6.5	39.5
제주	119	-	97	-	97	22	7	14	1	0.5	18.5

자료: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시·도교육청별 전체 유치원 원아수를 보면 경기가 189,645명(28.1%)으로 가장 많고, 서울 85123명(12.6%), 경남 51276명(7.6%), 부산 44,361명, 인천 42,324명(6.3%) 순으로 나타남.

- 시·도교육청별 공립유치원 원아수 대비 사립유치원 원아수 비율은 부산 84.2%, 대구 82.5%, 광주 81.7%, 대전 81.2%, 울산 79.0% 순으로 나타났고, 사립유치원 원아수 1, 2위 지역인 경기와 서울은 각각 75.6%, 82.0%로 나타남.

〈표 Ⅱ-2-4〉 2018년 시·도교육청별, 설립유형별 유치원 원아수

단위: 명, %

시도	전체	국공립		사립유치원	
		원아수	비율	원아수	비율
전체	675,998	172,370	25.5	503,628	74.5

시도	전체	국공립		사립유치원	
		원아수	비율	원아수	비율
서울	85,213	15,366	18.0	69,847	82.0
부산	44,361	6,990	15.8	37,371	84.2
대구	38,475	6,720	17.5	31,755	82.5
인천	42,324	9,980	23.6	32,344	76.4
광주	24,609	4,495	18.3	20,114	81.7
대전	24,012	4,519	18.8	19,493	81.2
울산	18,545	3,886	21.0	14,659	79.0
세종	6,393	6,147	96.2	246	3.8
경기	189,645	46,182	24.4	143,463	75.6
강원	16,561	6,282	37.9	10,279	62.1
충북	17,568	8,235	46.9	9,333	53.1
충남	27,991	9,877	35.3	18,114	64.7
전북	24,297	7,887	32.5	16,410	67.5
전남	19,670	10,277	52.2	9,393	47.8
경북	38,961	10,940	28.1	2,8021	71.9
경남	51,276	11,589	22.6	39,687	77.4
제주	6,097	2,998	49.2	3,099	50.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18.4.1. 조사기준

○ 지역규모별 유치원수는 전체 9,021개 유치원 중 대도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은 2,701개원, 중소도시는 3,353개원, 읍면지역은 2,631개원, 특수지역은 366개원으로 중소도시에 가장 많은 유치원이 있음.

- 공립대비 사립유치원수 비율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69.7%, 52.5%로 사립유치원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읍면지역은 21.9%, 특수지역은 0.3%로 공립의 비율이 높음.

○ 유치원 규모별 유치원수는 전체 9,021개원 중 9~49인 4,266개원, 50~99인 2,087개원, 100~149인 1,372개원, 150~200인 이상 1,296개원으로 9~49인이 가장 많게 나타남.

- 공립대비 사립유치원수 비율은 9~49인은 15.4%, 50~99인 60.7%, 100~149인 82.1%, 150~200인 이상 90.4%로, 유치원 규모가 클수록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비율이 크게 나타남.

〈표 Ⅱ-2-5〉 2018년 지역규모 및 유치원규모별 유치원수

단위: 개원, %

구분		계	국립	공립(A)	사립(B)	비율(B/A)
전체		9,021	3	4,798	4,220	46.8
지역 규모[1]	대도시	2,701	0	819	1,882	69.7
	중소도시	3,353	1	1,592	1,760	52.5
	읍면지역	2,631	2	2,052	577	21.9
	특수지역	336	0	335	1	0.3
유치원 규모	9~49인	4,266	-	3,610	656	15.4
	50~99인	2,087	2	819	1,266	60.7
	100~149인	1,372	1	244	1,127	82.1
	150~200인 이상	1,296	-	125	1,171	90.4

주: 1) 대도시: 특별/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소도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 읍지역(시·군의 하부행정 구역)과 면지역(군 관할하에 있는 지방행정 구역)
특수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18.4.1. 조사기준

○ 지역규모별 원아수는 전체 675,998명 중 대도시 소재 유치원 원아수가 264,065명, 중소도시는 301,311명, 읍면지역은 107,196명, 특수지역은 3,426명으로 중소도시에 재원아가 가장 많음.

- 공립대비 사립유치원 원아수 비율은 대도시 82.0%, 중소도시 73.9%, 읍면지역 60.0%로 사립유치원 원아수 비율이 더 높았음. 사립유치원수에 비해 재원아의 비중이 공립보다 더 크고, 읍면지역의 경우에 사립유치원수가 21.9%인데 반해 원아수 비율은 60.0%임.

〈표 Ⅱ-2-6〉 2018년 지역규모별 유치원 원아수

단위: 명, %

시도		계	국공립		사립유치원	
			원아수	비율	계	비율
전체		675,998	172,370	25.5	503,628	74.5
지역 규모[1]	대도시	264,065	47,440	18.0	216,625	82.0
	중소도시	301,311	78,685	26.1	222,626	73.9
	읍면지역	107,196	42,904	40.0	64,292	60.0
	특수지역	3,426	3,341	97.5	85	2.5

주: 1) 대도시: 특별/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소도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 읍지역(시·군의 하부행정 구역)과 면지역(군 관할하에 있는 지방행정 구역)
특수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18.4.1. 조사기준

○ 시·도교육청별, 지역규모별 유치원 원아수는 사립유치원 유치원 원아수가 매우 많고, 대도시는 서울지역이 사립유치원생 전체 216,625중 69,847명으로 32.2% 차지함.

○ 중소도시는 국공립 78,685명, 사립유치원 222,626명으로 지역규모 중에 가장 많음. 그중에 경기 지역 국공립유치원 원아가 39,349명으로 50.0%, 사립유치원 원아는 122,229명으로 54.9%로 전체 중소도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표 Ⅱ-2-7〉 2018년 시·도교육청별, 지역규모별 유치원 원아수

단위: 명

구분	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특수지역	
		국공립	사립 유치원	국공립	사립 유치원	국공립	사립 유치원	국공립	사립 유치원
전체	675,998	47,440	216,625	78,685	222,626	42,904	64,292	3,341	85
서울	85,213	15,366	69,847	-	-	-	-	-	-
부산	44,361	5,712	35,151	-	-	1,278	2,220	-	-
대구	38,475	4,754	27,670	-	-	1,966	4,085	-	-
인천	42,324	9,554	32,082	-	-	96	262	330	-
광주	24,609	4,495	20,114	-	-	-	-	-	-
대전	24,012	4,512	19,493	-	-	-	-	7	
울산	18,545	3,047	12,268	-	-	839	2391	-	-
세종	6,393	-	-	5,792	-	342	246	13	-
경기	189,645	-	-	39,349	122,229	6,515	21,234	318	-
강원	16,561	-	-	2,680	8,176	2,377	2,018	1,225	85
충북	17,568	-	-	4,166	6,969	3,981	2,364	88	-
충남	27,991	-	-	4,063	11,605	5,639	6,509	175	-
전북	24,297	-	-	4,673	15,219	3,125	1,191	89	-
전남	19,670	-	-	4,935	6,648	4,757	2,745	585	-
경북	38,961	-	-	5,550	21,242	5,094	6,779	296	-
경남	51,276	-	-	5,587	27,895	5,819	11,792	183	-
제주	6,097	-	-	1,890	2,643	1,076	456	32	-

주: 대도시: 특별/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소도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 읍지역(시·군의 하부행정 구역)과 면지역(군 관할하에 있는 지방행정 구역)
특수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18.4.1. 조사기준

○ 설립연도별, 설립유형별 유치원수를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은 1980년에 40개원으로 미미한 가운데 1985년에 3,767개원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여 2018년 4,801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사립유치원은 1980년 861개원에서 1985년도에 2,475개원, 10년 후인 1995년도에 4,543개원으로 증가한 후 2010년 3,887개원으로 줄었음.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도입·시행 이후 증가하여 2015년 4,252개원, 2018년 4,220개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 설립연도별, 설립유형별 원아수는 국공립의 국가의 책임 확대와 함께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사립유치원 원아수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2015년 사립유치원 원아수는 521,214명으로 누리과정이 도입·시행된 이후 크게 증가하였음.

〈표 Ⅱ-2-8〉 설립연도별, 설립유형별 유치원수 및 원아수

단위: 개원, 명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유치원수	국공립	40	3,767	4,603	4,417	4,176	4,412	4,501	4,678	4,801
	사립	861	2,475	3,751	4,543	4,318	3,863	3,887	4,252	4,220
	계	901	6,242	8,354	8,960	8,494	8,275	8,388	8,930	9,021
원아수	국공립	64,109	144,297	127,144	114,380	122,208	124,283	126,577	161,339	172,370
	사립	2,324	170,395	287,388	414,885	423,055	417,320	412,010	521,214	503,628
	계	66,433	314,692	414,532	529,265	545,263	541,603	538,587	682,553	675,99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설립연도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수 추이를 보면 서울은 사립유치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경기는 사립유치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 수는 최근 답보상태이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많음.

- 1980년에는 서울 260개원, 경북 132개원, 경기 117개원으로 3개 시·도가 전체 사립유치원의 59.1%를 차지하였고, 2018년에는 경기소재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경기, 서울, 부산 소재 사립유치원이 각각 1,096개원, 650개원, 314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중 48.8%를 차지하였음.

- 경기의 경우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증가하여 2018년 1,096개원이었으나, 특별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답보상태인 경우가 많고, 도지역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감소경향이 있음. 특히 서울의 경우 1995년 1,325개원이던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650개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하였음.

〈표 Ⅱ-2-9〉 설립연도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수

단위: 개원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전체	861	2,475	3,751	4,543	4,318	3,863	3,887	4,252	4,220
서울	260	912	1,374	1,325	1,076	806	728	691	650
부산	66	173	260	379	354	318	312	323	314
대구	-	130	153	175	185	178	197	266	264
인천	-	97	181	252	245	201	248	262	256
광주	-	-	142	156	140	138	136	189	185
대전	-	-	92	151	161	145	153	173	171
울산	-	-	-	-	120	112	105	116	117
세종	-	-	-	-	-	-	-	3	3
경기	117	324	567	840	906	886	942	1,071	1,096
강원	39	77	102	153	127	111	99	111	110
충북	16	48	87	121	104	93	87	92	95
충남	61	146	89	123	125	118	130	135	137
전북	30	57	93	142	145	148	150	169	166
전남	52	167	152	164	153	131	112	117	117
경북	132	125	154	190	202	206	212	248	244
경남	74	194	268	332	246	242	253	264	273
제주	14	25	37	40	29	30	23	22	2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설립연도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원아수는 전체로 보면 1980년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지만, 2015년에서 2018년에는 원아수가 감소하고 있음. 광주, 충남, 경남, 경북,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2015년에서 2018년 인원이 감소하였음.

〈표 Ⅱ-2-10〉 설립연도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원아수

단위: 명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전체	64,109	170,395	287,388	414,885	423,055	417,320	412,010	521,214	503,628
서울	22,073	58,208	92,188	100,920	88,171	76,714	68,716	76,287	69,847
부산	5,934	14,904	25,658	39,698	37,507	35,333	32,289	39,903	37,371
대구	-	12,300	16,216	23,853	24,781	24,774	23,391	32,054	31,755
인천	-	8,014	16,664	26,824	23,995	21,559	26,576	33,510	32,344
광주	-	-	9,128	11,996	11,598	12,869	13,602	19,257	20,114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대전	-	-	7,871	15,739	17,866	17,144	17,008	20,831	19,493
울산	-	-	-	-	17,280	15,460	12,707	15,757	14,659
세종	-	-	-	-	-	-	-	214	246
경기	8,318	20,702	42,127	75,864	89,312	98,500	107,267	148,846	143,463
강원	1,938	4,041	6,324	10,983	9,366	9,206	8,089	10,789	10,279
충북	1,003	2,814	6,848	10,639	9,361	8,467	7,484	9,540	9,333
충남	3,438	8,966	5,682	10,536	11,217	12,034	14,050	17,442	18,114
전북	2,221	3,939	7,103	12,395	13,685	13,421	13,202	16,931	16,410
전남	2,972	9,673	9,189	12,496	12,519	11,132	9,430	10,114	9,393
경북	10,193	9,312	13,719	20,248	24,349	24,861	22,201	27,774	28,021
경남	4,973	15,693	25,806	39,091	29,063	32,438	32,423	38,934	39,687
제주	1,046	1,829	2,865	3,603	2,985	3,408	2,575	3,031	3,09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나. 유치원 이용 원아수 추이

○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영유아수의 급감에 따라 향후 유치원 이용 유아의 급감이 예상됨.

○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는 급기야 2019년 3월에는 최근 초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1년에 공표예정이던 장래인구추계를 수정하여 특별추계를 공표함(통계청 보도자료, 2019. 3. 27.).

- 장래인구특별추계는 의하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유소년인구(0~14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함(통계청, 2019. 3. 27).

○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영유아수의 급감을 초래하고 있음.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수는 2017년 1,406,856명에서 2027년 871,093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2028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하여 2035년까지 1,062,950명으로 증가한 후, 이를 정점으로 이후 206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39,275명으로 예상됨.

- 특히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는 출산율이 소폭 증가하는 시점을 전망하고 있어 유아수 추이에서 변곡점이 2군데에서 발생하며, 이는 최근의 혼인율 감소폭이 둔화, 2020년대 초반의 20대 후반 및 베이비부머의 연령구조의 변화, 30대 초반 여성인구 증가, 주혼인연령층 성비의 불균형 완화 등 2020년대 초반의 인구학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9902).

[그림 Ⅱ-2-1] 영유아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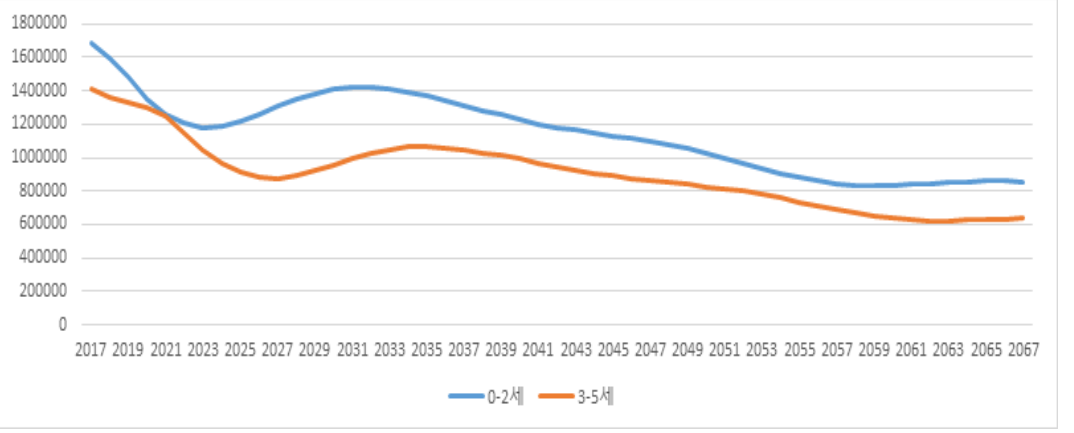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tat.go.kr)

3.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현황

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이는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적용됨(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6]

- 또한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하는 수익자부담수입, 설치·경영자가 유치원회계로 이전한 설치·경영자이전수입,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차입금, 적립금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적립금이전수입, 기부·후원금수입 등으로 구성됨.

○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재원은 대부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며, 유아교육 전체 재원 중 공공 재원의 비율은 2014년도 기준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아학비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의 지원 예산액은 1조 6천억 원임.[7]

6)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 등. 공보 제274호. 867 [기각]

나.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

○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학급운영비, 교사기본급보조비, 단기대체교사, 급식비(식품비), 방과후과정 관련 지원비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음.

- 비담임교사 보조,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보조비, 읍면동 인건비 보조, 방과후과정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명절휴가비 지원, 원비 동결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자율선택과제 운영비 지원 유아용 보호장구 지원 등은 특정 시·도교육청에서만 실시되고 있었음.

○ 2019년도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4,990.3억원 수준이었음.

- 예산지원항목으로는 교사기본급 보조비 2,566.2억원(51.4%), 급식비(식품비) 지원 1,130.8억원(22.7%), 학급운영비 지원 843.9억원(16.9%)으로 3가지 항목이 전체의 91.0%를 차지하였음.

7)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 등. 공보 제274호. 867 [기각]

〈표 Ⅱ-3-1〉 2019년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항목(누리과정지원비 제외)

시도	학급운영비	교재교구비	교사기본급보조비					단기대체교사	방과후과정운영비	방과후과정교재교구비구입지원	방과후과정인건비지원	신용카드수수료지원	명절휴가비지원	급식비(식품비)지원	교원연구비(연수비지원)	통학차량운영비	공기청정기임차료	원비동결지원	저소득층유아학비지원	장애아무상교육비	돌봄교실운영지원	놀이중심교육활동환경조성금지원	자율선택과제운영비지원	에듀파인운영지원금	유아용보호장구지원	출산용품지원
			담임	기본급보조	비담임보조	방과후과정전담교사	읍면동인건비보조																			
서울	O	O	O	O				O				O														
부산	O		O	O				O				O														
대구	O		O	O		O		O	O			O														
인천	O		O	O				O				O														
광주	O		O	O				O	O		O															
대전	O		O	O				O	O				O	O												
울산	O		O	O				O	O	O				O							O					O
세종	O		O	O				O																		
경기	O		O	O				O						O												
강원	O		O	O				O	O			O		O	O		O		O		O					
충북	O		O	O				O						O	O	O	O									
충남	O	O	O	O			O	O						O								O				
전북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전남	O		O	O				O	O					O					O						O	
경북	O		O	O				O	O		O			O		O	O		O							
경남	O		O	O				O	O																	
제주	O		O	O				O						O			O		O	O		O		O		
계	17	2	17	17	1	1	1	17	8	1	3	6	1	10	2	2	4	1	5	1	3	3	1	2	1	1

주: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2020년부터 단기대체교사 인건비(1일 69,000원/0.83억원)를 지원할 예정임.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표 Ⅱ-3-2〉 2019년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규모(누리과정지원비 제외)

단위: 억원, %

시도	학급운영비	교재교구비	교사기본급보조비	단기대체교사	방과후과정운영비	방과후과정교재교구비구입지원	방과후과정인건비지원	신용카드수수료지원	명절휴가비지원	급식비(식품비)지원	교원연구비(연수비지원)	통학차량운영비	공기청정기임차료	원비동결지원	저소득층유아학비지원	장애아무상교육비	돌봄교실운영지원	놀이중심교육활동환경조성금지원	자율선택과제운영비지원	에듀파인운영지원금	유아용보호장구지원	출산용품지원	계
서울	46.6	19.2	402.4	2.8	·	·		0.05	·	·	·	·	·										471.1
부산	41.3	·	213.9	1.5	·	·		0.01	·	·	·	·	·										256.7
대구	25	·	151	0.6	10			0.1	·	·	·	·	·										186.7
인천	53.4	·	154.5	1.6	·	·		0.09	·	·	·	·	·										209.6
광주	38.6		109.3	0.7	2.2	·	6.2	·	·	·	·	·	·										157
대전	45.1	·	99.5	0.7	10.2		·		1.5	80.8	·	·	·										237.8
울산	4.32		60.5	0.18	5.52	0.54	·	·	·	27.3	·	·	·				3.76					0.01	102.1
세종	0.6	·	1.2	0.04	·	·	·	·	·	·	·	·	·										1.8
경기	300	·	654.7	3.5	·	·	·	·		780	·	·	·										1,738.2
강원	20	·	50	0.64	2.1	·		0.02		57.4	1.08	·	2.2		3.7		50						187.1
충북	24.2	·	54.2	0.55	·	·	·	·		42.8	4	4.5	3										133.3
충남	44	4	107.7	0.7	·	·	·	·		68.4	·	·	·					109.03					333.8
전북	38.5	·	76	1.3	·		27.6	0.1		36.9	·	·	·	41.7	8.3		13.7	7.2	2.5	5.5			259.3
전남	29.5	·	58.1	0.83	5.15	·	·	·		5.27	·	·	·		4.8						2		105.7
경북	58.1	·	165	1	6		·	·		9.7	·	26.8	7.2		6								279.8
경남	70.4	·	194.6	0.9	19	·	·	·	·	·	·	·	1.25										286.2
제주	4.3	·	13.6	0.2	·	·	·	·		22.2	·	·	0.14		1.28	0.37		1.95		0.13			44.2
계	843.92	23.2	2,566.2	17.74	60.17	0.54	33.8	0.37	1.5	1,130.77	5.08	31.3	13.79	41.7	24.08	0.37	67.46	118.18	2.5	5.63	2	0.01	4,990.31
비율	16.9	0.5	51.4	0.4	1.2	0.0	0.7	0.0	0.0	22.7	0.1	0.6	0.3	0.8	0.5	0.0	1.4	2.4	0.1	0.1	0.0	0.0	100.0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4.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및 관련 법·지침

가. 유치원 회계투명성 개념

○ 학교재정 투명성이란 “학교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어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그것의 자유로운 흐름을 공개하는 것이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재정운영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김용남, 2017; 김용남 외, 2017; 이종현, 2012).

○ 배정호·임은정(2018)은 공공성 개념을 투명성, 공개성, 민주성, 개인 및 집단의 권익, 보장성, 국가 관련성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성이란 투명성을 기반으로 공적 규제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음.

- 선행연구들에서 유치원 공공성에 대한 접근으로 첫째, 국가 관련성, 국가재정, 법·정부 제도적 배경에서의 규정 등 국가와 관련된 성격에 의한 규정, 둘째, 공동체 관련성, 사회적 책임의 사회적 합의 필요, 사회 교육, 다수에 관한 일, 공익성, 시민성 등 공동체와 사회의 관련성에 관한 규정, 셋째, 공개성, 전달체계, 형평성, 보편성, 민주주의, 개방성 등 공공성 구성의 성질에 관한 규정으로 분류하였음(배정호·임은정, 2018).
- 그러나 그동안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의 발전과는 다르게 공적 비용의 투입보다는 사립유치원 설립에 의존함으로써, 공공성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인 하나를 놓쳐왔으며, 유치원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진 공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학교임에도 사립학교법에서 유치원에 대한 많은 예외 규정이 유치원의 외현적·내재적 공공성 확립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치원 공공성 확대의 담론에 방해가 되었다고 함(배정호·임은정, 2018), .

○ 김병주·김성기·오범호(2011)는 유치원 운영 및 재정현황 등이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 외부 참여기제가 부족하다는 점, 유치원 회계시스템이 회계연도 말에 시·도교육청에 결산보고 하는 형식으로 그치고 만다는 점이 유치원 공공성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하였음.

-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증진방안의 한가지인 유치원재무회계규칙 규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에 의존하지 않고 운영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안이라고 보았음

○ 2012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교육과학기술부, 2012)에서는 사립유치원은 교육관계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과 정책을 통해 통제·관리·지원되는 기관이며 3~5세 무상교육이 사립유치원에도 적용되므로 사립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3~5세 유아교육

은 공교육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보편성을 전제로 하고 교육 내용의 공통성을 가지므로 공교육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았음.

- 즉, 교육의 제공자, 비용부담자,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음.

○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지만 동 규칙은 대부분 법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적용 가능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였음(교육과학기술부, 2012).

○ 김성섭(2015)의 연구에서는 Vishwanath와 Kaufman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의 개념을 정보의 속성으로 설명한다는 점을 인용하여(황호찬, 2012, 재인용) 그 속성으로 회계에 대한 접근성, 합목적성, 신뢰성이 있다고 하였음.

- 이에 따라 회계 투명성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공시의 정도로 회계처리의 과정과 회계정보의 내용을 충분하게 공개함으로써 의문의 여지가 없게 하는 상태라고 봄.
-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관련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비교하여 봤을 때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현금주의의 목적보다는 발생주의적 회계 처리 방법을 따르며 규칙에 제시되어 있는 사립유치원 회계의 운용 대상이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힘듦.

나. 유치원 회계 관련 정책 및 주요 법·지침

1) 유치원회계 관련 정책

○ 2004년 유아교육법이 통과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호자와 저소득층 만 5세 자녀만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았던 것에서, 200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 만 3~4세 자녀와 모든 취학 전 만5세의 아동에 대해 무상교육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2006년에는 중·소도시, 2007년에는 대도시 등으로 확대되었음.

○ 유아교육의 재정 지원은 2007년까지 유아교육비 지원(학비지원,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자녀지원, 종일제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등)의 전액을 중앙에서 확보 및 배분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국립유치원을 제외한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있음.

○ 2009년도에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정책의 일환인 유아교육 역량 제고 사업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유아학비 지

원의 확대,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 등을 추진하였음.

- 그 결과 유치원회계규칙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립유치원은 2012년도에 국립유치원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였음.

○ 특히, 유아교육에서 출발선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사립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음.

- 2011년 누리과정의 도입 역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정책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을 제시하고, 연차적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여 2012년 3월 21일 이명박 정부는 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확보, 재정전달체계 등에 대한 총괄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에게도 만 3세 및 4세아의 누리과정비를 지원하였음(신하영·김수경, 2016).

○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주도로 추진했던 유보통합 논의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 또한 유보통합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합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였음.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2014년 10월 재무회계규칙제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10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사립유치원 측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음(신하영·김수경, 2016).

○ 현재 유치원회계 기준은 설립형태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먼저 국립유치원의 회계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6항 및 제19조의8 제6항에 따라 규정 및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역시 국립유치원의 회계기준을 준용하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 행정 특색을 반영하여 별도의 회계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음.

2) 시립유치원 회계 관련 법규 및 회계규정

○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학교에 속함.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이 있음.

○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제19조의7에서 국·공립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대한 조항이 제시되어 있음.

- 유치원회계는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

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등의 수입을 세입으로 함(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육아정책연구소, 2015).

- 또한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함.
- 기타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은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제시하고 있음(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육아정책연구소, 2015).

○ 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에서는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대한 조항이 제시되어 있음.

-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되어 다음연도 2월 말에 종료되며,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이 예산안을 심의해야 함.
- 또한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유치원회계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 사항은 국립유치원은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해당하는 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재무 및 회계의 운영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규칙 제27조(회계의 방법)에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 그러나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의 제5조(회계의 방법)에서는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에서도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의 확정 및 집행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함.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고 제시함.

〈표 Ⅱ-4-1〉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법령

구분	조항	주요 내용
유아교육법	제1장(총칙)~제6장(보칙과 벌칙), 부칙, 별표/서식	- 유치원 예결산 자문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사립학교법	제1장(총칙)~제6장(벌칙), 부칙	-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9조(과태료의	

구분	조항	주요 내용
	부과기준), 부칙, 별표/서식	- 사립학교에 대한 재산과 회계,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제1장(총칙)~제7장(보칙), 부칙	- 사립학교법 제32조, 제33조, 제51조 단서의 관련 규정으로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건	제1조(목적)~제5조(보고와 감독), 부칙, 별표/서식	-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법인에 대해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 관련 사항

○ 사립유치원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재원조달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수입, 이전수입, 차입금, 적립금이전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재정수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됨.

3)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지침

가) 사립유치원 회계 예산

(1) 예산의 일반원칙

○ 사립유치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관·항·목으로 구성된 세입·세출과목을 기준으로 서식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 또한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산원칙이 있음. 주요 원칙으로는 건전재정 운영 원칙,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 예산총계주의,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목적외 사용금지, 공개성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음.

〈표 Ⅱ-4-2〉 사립유치원 예산의 일반원칙

원칙	내용	근거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해서는 안 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6조
예산총계주의	수입과 지출은 누락됨이 없이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1조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0조

원칙	내용	근거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교비회계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은 엄격히 금지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제1항)
공개성의 원칙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 관할청 보고 및 학교 홈페이지 공개(1년간)하고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에 의거 4월 공시(추경은 편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사립학교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제24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당해 연도 경비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당해 연도 책정경비의 다음연도 사용제한 일반원칙	-
기타 원칙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및 적립금은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 유치원교육에 직접 필요한 제 경비를 반영하여 경비 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한 후 잉여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함	-

자료: 교육부(2017).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pp. 8-9.

Ⅱ

(2)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업무흐름

○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정한 계획서로 예산편성이란 한 회계연도 동안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임(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 유치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되며, 세입과 세출은 한 회계연도 기간 동안 발생한 유치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각각 의미함(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가) 본예산

○ 사립유치원의 기본적인 예산편성 업무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예산편성 사전준비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년 11월 정도에 유치원에서는 회계연도에 가능한 세입규모와 지출되는 세출규모는 사전에 검토함. 세입규모는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수익자부담경비,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계하고, 세출규모는 교직원인건비,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필수경비 등을 산출하고 세입규모 등 재원을 사전에 검토함.
- 둘째, 예산편성지침의 마련과 시행임. 시·도교육청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집행기준, 예산편성을 위한 단가, 서식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유치원으로 통보함.
- 셋째, 유치원 차원에서 예산편성 요령을 확정·통보함. 사립유치원 이사장(또는 경영자)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초하여 회계연도의 예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장에게 통보함.

- 넷째, 예산을 편성·제출함. 사립유치원은 교직원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세입세출 규모에 맞춰 자체 심의조정한 후 예산안을 확정함. 이를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통해 이사장(또는 경영자)에게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1월말)까지 제출함.
- 다섯째, 예산안을 심의·의결함. 이사장(또는 경영자)는 운영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 유치원 원장에게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송부함.
- 여섯째, 예산서를 보고 및 공개함. 회계연도 개기 5일전까지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에 예산안을 보고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함.

〈표 Ⅱ-4-3〉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업무흐름

구분	주요 절차	시기	비고
예산편성 사전 준비	•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수익자부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규모 추계 • 교직원인건비,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필수경비 산출 및 세입 재원을 고려한 세출규모 사전 검토	전년도 11월말	원장 또는 교직원
↓			
예산편성 지침 마련·시행	•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집행기준 • 단가 및 서식 등 예산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전년도 12월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예산편성 요령 확정·통보	•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유치원 예산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	전년도 12월말	이사장(경영자) →원장
↓			
예산편성·제출	• 교직원 예산요구 → 자체 심의·조정 → 예산안 확정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제출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1월)	원장→이사장 (경영자)
↓			
심의의결 송부	• 회계 관계 법령, 편성 지침 및 요령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한 후 유치원장에게 송부, 유치원장이 확정·집행	회계연도개시 10일전(2월)	이사장(경영자) →원장
↓			
보고·공개/ 공시	•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홈페이지 1년간 공개 • 예산은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에 의거 4월 공시	회계연도개시 5일전(2월)/ 4월	이사장(경영자)

자료: 교육부(2017).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p. 7.

○ 또한 사학기관 재무·화계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 교육청 예산보고시 예산총칙, 수입지출예산명세서,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 포함), 직원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과년도

미수액 조서, 기구와 정원일람표,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사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으로 대체),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교육부, 2017).

(나) 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을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이미 확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사유시 발생하기 때문에 잦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함.

〈표 Ⅱ-4-4〉 사립유치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구분	내용
편성요건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의 발생, 유치원재정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편성 •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 ⇒ 기존예산 금액의 과부족 ⇒ 예산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예산의 추가 증액, 삭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전년도 이월액 확정에 따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
편성시기	•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4~6월경(전년도 이월금 확정액 반영) • 결산 추가경정예산 : 다음해 1~2월(결산 추경 실시하여 불용액 최소화)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p. 63.

(다) 성립전 예산

○ 성립전 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업무흐름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Ⅱ-4-5〉 사립유치원 성립전 예산 업무흐름

구분	주요 절차	담당
예산변경 사유발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된 금액이 교부	국가 또는 지자체, 교육청 외
↓		

구분	주요 절차	담당
성립전 예산 집행 결의	• 사업담당자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립전 예산 사용 신청에 대해 성립전 예산 집행 결정 • 징수부 및 지출부 정리(당해 사업과목)	원장 또는 교직원
↓		
예산 집행	• 사업예산 집행 및 지출부 정리	원장 또는 교직원
↓		
차기 추경예산 반영	•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성립전예산 집행액 확인 후 반영 • 성립전 예산은 반드시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시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야 함	원장 또는 교직원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p. 64.

나) 사립유치원 회계 수입·지출

(1) 수입

○ 세입은 한 회계연도 기간 동안 발생한 유치원의 모든 수입으로, 수입은 유치원 재원이 될 현금 수납을 위한 세입의 징수 행위로부터 수납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회계행위이며, 징수행위와 수납행위로 구분됨. 징수행위는 수입의 원인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납입을 고지하는 행위이고, 수납행위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하는 납입금을 영수하는 행위임(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 수입의 원칙으로는(서울시교육청, 2017),

- 첫째, 유치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및 수납하여야 함.
- 둘째, 유치원장은 세입을 징수결정 하고자 할 때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함.
- 셋째, 유치원장은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하여야 함.
- 넷째, 유치원의 모든 세입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유치원 명의 예금계좌에 수납함. 단,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수납된 세입은 수납한 날에 지정된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함.
- 다섯째, 유치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으로 결정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함. 또한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금 징수 시 세부 산출기초를 도출하여 소요경비만 징수하고 혜택이 대상자에게 부여되도록 수납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2) 지출

○ 지출은 예산집행 품의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채주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함.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예산집행 품의라 하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기타의 행위로 당해 유치원의 장이 행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 함(교육부, 2017;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 지출의 원칙으로는(서울시교육청, 2017),

- 첫째, 유치원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유치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함.
- 둘째, 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가를 조사하고 지출하여야 함.
- 셋째,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나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함.
- 넷째, 유치원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 지출결의서,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함.
- 다섯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함.

다) 사립유치원 회계 결산

○ 사립유치원 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먼저 관련 용어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 먼저 예산현액은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예산액, 예비비지출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증감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 세입결산서의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유치원회계에 수납된 금액이고, 세출결산서의 결산액은 예산현액 중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말함.
- 이월액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사업비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잔액으로 예산현액에서 세출결산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이외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는 세입액 대비 잔액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사용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결산서의 작성원칙 다음과 같음(교육부, 2017;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 첫째, 결산은 '원'단위로 작성함.
- 둘째,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결산액 및 비교 증감대비액, 불용액에 있어서의 수입총액·지출총액과 차인잔액(불용액)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셋째, 세입·세출 관항목, 세입재원, 징수부, 지출부 및 통장확인 등을 통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수정 및 변경은 금지됨.
- 넷째, 전년도 집행 잔액은 이월금 계상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산출기초는 반드시 집행사업과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명기하여야 함. 특히, 인건비의 경우, 원장, 유치원교사(평균), 행정실장, 직원(평균)을 구분하여 산출기초를 명시하여야 함.
- 다섯째, 결산액과 예금 잔액증명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불부합조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여섯째, 결산결과 발생된 불용액(집행잔액과 이월금 계상액이 서로 다른 경우) 및 과년도수입(미수액조서에 반영)은 익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

5. 현행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주요 경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 유치원은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해 세입·세출을 명시하고 있음.

-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이전에 사립유치원은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학교법인 등 법인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된 세입・세출예산과목의 적용을 받아왔음.[8)]
- 이로 인해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으로 수입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하여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였고 사립유치원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회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면이 있었음.

○ 2012년부터 정부는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교육과정이 일원화되면서 영유아들은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전 계층이 유아학비 지원금과 보육비로 각각 20만 원씩이 지방 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원되었음. 더욱이 2013년부터는 만 3~5세아로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8)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 등. 공보 제274호. 867 [기각]

22만원씩 지원되었음.

○ 국가의 지원과 함께 관할청의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지도의 중요성이 또한 커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정한 재무회계 규칙이 필요하고 개인과 법인 유치원간 규칙에 대한 공통성 적용,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간 재무회계 규칙의 조율 등이 필요하게 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2004년 유아교육법을 제정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더욱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되었음.
- 사립유치원은 재무회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소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고(오창걸, 2012), 따라서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적용 가능한 별도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공청회 자료집, 2012).

○ 이에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위한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 연구를 진행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사립유치원 관련단체의 반발 등으로 실제 도입은 유보되었고(김은설, 박진아, 이동하, 2015; 우명숙, 박경호, 전홍주, 정병수, 2012), 2017년에 이르러 유치원 특성에 맞게 기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방향으로 추진됨.

○ 교육부는 2017년 2월 24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공포하고 2017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였음. 이는 사립유치원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는 등 재무회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누리과정 시행 후 정부지원금이 새어나가는 것과 학부모 부담 경비 누수도 예방하며 감사 근거를 마련하였음.

- 사립유치원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사립학교법인(사립학교) 또는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등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규칙으로 기존 규칙 제15조의 2(예산과목의 구분) 제 1항에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을 신설하였음.

○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2017. 2.24. 교육부령 제122호)을 통해 종전에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도 초·중등학교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사립 유치원 회계의 예산 항목 구분 및 그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립 유치원의 운영 실정에 맞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관할청이 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조치 등 적립금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유치원회계 세입과목은 9개 관, 13개 항, 24개목 이며 9

개의 관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비, 수익자부담 수입. 보조금 및 지원금, 전입금 및 기부금, 적립금, 차입금, 지연수납수입, 잡수입, 전년도 이월액이며, 세출과목은 10개 관, 16개 항, 32개목이며 10개의 관을 살펴보면 인건비, 운영비, 교육활동비, 수익자 부담경비, 적립금, 상환 반환금, 재산조성비,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임.

○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 운영상의 애로점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일부 사립유치원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존재함.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주요 내용

1)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개요

○ 세입 예산과목은 9관 16항 32목, 세출 예산과목은 10관 16항 43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특색과 관할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표 Ⅱ-5-1〉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예산과목 요약

세 입('천원'단위, 산출기초는 '원'단위)			세 출('천원'단위, 산출기초는 '원'단위)		
▹ 관항목 구분, 절사 원칙 ▹ 지원·재원부담주체에 따라 구분			▹ 관항목 구분, 절상 원칙 ▹ 경비 성격 및 재원부담주체에 따라 구분		
관	항	목	관	항	목
보조금및 지원금	공통과정 지원금	공통과정지원금	인건비	교원인건비	급여
					수당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인건비 보조금	국가보조금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직원인건비	상동
		교육청보조금		그밖의인건비	그밖의인건비
	자본보조금	국가보조금	운영비	관리운영비	수용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수수료및제세공과금
		교육청보조금			연료비
	일반운영 보조금	국가보조금			여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그밖의관리운영비
		교육청보조금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수익자 부담수입	교육비	입학금·일반 교육과정비	일반교육 활동비	일반교육 활동비	교사연수·연구비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교육·돌봄비			교재·교구구입비
		방과후특성화비			행사비

세 입('천원'단위, 산출기초는 '원'단위)			세 출('천원'단위, 산출기초는 '원'단위)		
	급식비·간식비	일반급식비·간식비			복리비
					일반급식비·간식비
		특별급식비·간식비	선택적 교육 활동비	방과후교육 활동비	방과후교육·돌봄비
	그밖의 수익자 부담수입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특성화비
		통학차량이용비		그밖의 교육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통학차량이용비
		그 밖의 교육활동수익자부담수입			특별급식비·간식비
					졸업앨범비
경영자이전수입	경영자이전수입	설치·경영자이전수입			수익자부담재원교육활동비
차입금	차입금	단기차입금차입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장기차입금차입	상환금	상환금	단기차입상환금
					장기차입상환금
적립금이전수입	적립금이전수입	적립금이전수입	반환금	반환금	보조금반환금
					수익자반환금
잡수입금	잡수입금	이자수입·행정활동수입	시설·설비비	시설비	신·증축비
기부·후원수입	기부·후원수입	기부·후원금수입			유지비
				설비·비품비	취득비
지연수납수입	지연수납수입	지연수납수입			유지비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이월사업비	지연지출금	지연지출금	지연지출금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자료: 교육부(2017).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p. 11.

2)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세부내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Ⅱ-5-2〉 사립유치원 세입 예산과목 세부내역

관	항	목	세부 내역
1. 보조금 및 지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
	1. 공통과정지원금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지원금(학부모 등이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공통과정지원금	
	2.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 및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관	항	목	세부 내역
		1.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교원 급여 등 인건비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4. 자본 보조금		교사(校舍) 등 시설·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5. 일반운영 보조금		급식비·간식비 보조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2. 수익자부담수입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
	1. 교육비		
		1. 입학금	
		2. 일반 교육과정비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학부모 등이 공통과정지원금을 받아 납입한 금액은 공통과정지원금으로 처리
	2. 방과후과정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방과후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비용은 방과후특성화비로 처리
		2.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급식비·간식비		
		1.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의 급식·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특별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통학차량이용비	통학차량이용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입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수익자부담금

관	항	목	세부 내역
		수입	
3. 설치·경영자이전수입			설치·경영자가 학교회계로 이전한 금액 ※ 설치·경영자가 대출을 받아 학교회계로 이전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4. 차입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차입금		
		1. 단기차입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
		2.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외의 차입금
5. 적립금이전수입			적립금에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6. 잡수입금			
	1. 잡수입금		
		1. 이자수입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2. 행정활동수입	물품 등 자산 매각 수입,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및 보험금 수입 등 행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7. 기부·후원금수입			기부 또는 후원으로 발생한 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8. 지연수납수입			해당 회계연도 전에 이전 또는 수납되었어야 하나 이전·납부되지 않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납부된 수입
	1. 지연수납수입		
		1. 지연수납수입	
9. 전년도이월금			
	1. 전년도이월금		
		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금액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전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
		3.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비고
1.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관·항·목에 따른다.

자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 5].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은 다음과 같음.

〈표 Ⅱ-5-3〉 사립유치원 세출 예산과목 세부내역

관	항	목	세부 내역
1. 인건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1. 교원인건비		정규직 교원인건비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교직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 직원인건비		정규직 직원인건비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3. 그 밖의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조·대체교사 보수 및 일용직 급여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인건비
		1. 그 밖의 인건비	
2. 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수용비	소모품 구입비, 인쇄비, 교육용도서 외 일반도서 구입비, 차량 정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임차료, 대관료 및 비품대여료 등 유치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 통학차량 정비·유지비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전기·전화요금, 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안전공제회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직원 건강검진비 등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성격의 경비
		3. 연료비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료 및 차량 유류대 등 건물 난방 및 차량 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 통학차량 유류대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4. 여비	출장에 따른 소요 여비

관	항	목	세부 내역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2. 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유치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
3. 일반교육활동비			유치원 일반 교육활동 소요 경비
	1. 일반교육활동비		
		1. 교사연수·연구비	교직원 연수비 및 연구비
		2. 교재·교구구입비	교육 기자재, 교육용도서 등 구입 및 제작 소요 경비
		3. 행사비	원아 교육과 직접 관련된 각종 행사 소요 경비
		4. 장학금	원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5. 복리비	원아건강검진비 등 원아 건강 및 안전 관련 소요 경비
		6.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시간 내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을 위한 소요 경비
4. 선택적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한 소요 경비
	2. 그 밖의 교육활동비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통학차량이용비	통학차량 정비·유지비 및 유류대 등 통학차량 이용을 위한 소요 경비
		3. 특별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한 소요 경비
		4.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입 소요 경비
		5. 수익자부담재원교육활동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수익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활동 소요 경비
5. 적립금			건축적립금 및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로 처리
	적립금		
		적립금	
6. 상환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1. 상환금		
		1. 단기차입상환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장기차입상환금	단기차입상환금 외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7. 반환금			

관	항	목	세부 내역
	1. 반환금		
		1. 보조금반환금	보조금 미사용 등에 따른 반환금
		2. 수익자반환금	수익자부담금 미사용에 따른 반환금
8. 시설·설비비			
	1. 시설비		
		1. 신·증축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 경비
		2. 유지비	시설 유지, 수선 및 개·보수 소요 경비
	2. 설비·비품비		
		1. 취득비	설비 설치비, 비품 구입비, 차량 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등 설비나 비품 취득 소요 경비
		2. 유지비	설비, 장비 및 비품의 정비·유지 비용 ※ 차량 정비·유지 비용은 차량 성격에 따라 수용비 또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9. 지연지출금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지출되었어야 하나 지출되지 않았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된 사업비 등
	지연지출금		
		지연지출금	
9. 잡지출			원 단위 절사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성격의 지출
	잡지출		
		잡지출	
10. 예비비			재해·재난 관련 비용 등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예비비		
		예비비	

비고
1.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관·항·목에 따른다.

자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 6].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Ⅲ.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및 회계처리 현황 분석

1. 2019년도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예산 분석

가. 2019년 사립유치원 예산 분석 자료 및 대상

○ 2019년 사립유치원 예산 분석은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였음.

- 2017년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별도 신설하여 2018학년도 회계부터 적용되었고, 별도 유치원회계 예산과목이 적용된 2018년 결산자료가 공시되지 않은 시점으로 2019년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함.

○ 공시된 사립유치원 3,812개 중 3,750개 사립유치원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분석함.

- 세입-세출 총예산액이 0원이거나 1천만원 미만(단위 오류 의심)인 사립유치원 62개를 분석에서 제외함.
- 분석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립유형별로는 법인 사립유치원은 566개원, 사인 사립유치원은 3,184개원이고, 현원규모로는 50인 미만은 473개원, 50~100인 미만은 1,206개원, 100~200인 미만은 1,662개원, 200인 이상은 409개원임.

〈표 Ⅲ-1-1〉 사립유치원 분석대상

구분	유치원수	구분	유치원수	구분	유치원수
시·도교육청		경기	972	설립유형	
서울	569	강원	92	사립(법인)	566
부산	290	충북	77	사립(사인)	3,184
대구	233	충남	124	현원규모	
인천	228	전북	144	50인 미만	473
광주	157	전남	101	50~100인 미만	1,206
대전	153	경북	223	100~200인 미만	1,662
울산	108	경남	256	200인 이상	409
세종	3	제주	20	계	3,750

나. 2019년도 사립유치원 세입예산

1) 전체 세입예산 규모

○ 2019년 사립유치원 세입예산 총규모는 3조 1,888억원 규모임.

- 보조금 및 지원금이 1조 7,388억원, 수익자부담수입이 1조 3,490억원, 설치·경영자이전수입 123억원, 차입금 71억원, 적립금이전수입 112억원, 잡수입금 66억원, 기부·후원금수입 6억원, 지연수납수입 5억원, 전년도이월금 627억원 규모로 나타남.

○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가 9,477억원(29.7%)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이 4,857억원(15.2%), 경남 2,375억원(7.4%), 부산 2,213억원(6.9%), 인천 2,186억원(6.9%), 대구 1,975억원(6.2%) 순으로 나타남.

○ 설립유형별로는 법인 사립유치원 예산규모는 4,183억원(13.1%), 사인 사립유치원은 2조 7,705억원(86.9%) 규모임.

○ 현원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의 세입 예산규모는 1,275억원(4.0%), 50인~100인 미만은 6,353억원(19.9%), 100인~200인 미만은 1조 6,441억원(51.6%), 200인 이상은 7,819억원(24.5%)으로 나타남.

〈표 Ⅲ-1-2〉 2019년 사립유치원 세입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개원)

구분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수입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차입금	적립금 이전 수입	잡수입금	기부·후원금 수입	지연 수납 수입	전년도 이월금	계	유치원 수
시도											
서울	206,588	256,557	2,219	2,015	2,667	819	160	47	14,644	485,715	569
부산	128,300	86,974	479	45	466	245	128	40	4,651	221,328	290
대구	103,787	90,340	1,297	91	343	147	40	10	1,482	197,537	233
인천	121,801	94,266	490	371	134	275	28	34	1,244	218,642	228
광주	70,973	45,227	381	0	2	167	2	42	575	117,369	157
대전	84,629	53,142	98	253	903	242	0	26	3,392	142,685	153
울산	50,252	29,283	38	20	140	105	17	2	1,285	81,141	108
세종	858	299	0	0	0	1	0	0	5	1,162	3
경기	491,617	425,857	2,045	3,371	2,400	2,625	74	183	19,551	947,723	972
강원	39,241	18,365	519	70	798	404	21	3	3,720	63,141	92
충북	33,295	14,059	274	184	50	48	0	6	2,495	50,411	77
충남	67,022	36,548	1,795	44	360	289	18	14	1,995	108,084	124

구분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수입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차입금	적립금 이전 수입	잡수입금	기부·후원금 수입	지연 수납 수입	전년도 이월금	계	유치원 수
전북	57,002	30,611	121	429	457	542	50	18	747	89,976	144
전남	35,188	18,114	750	181	433	71	63	40	617	55,458	101
경북	99,569	46,518	1,426	71	1,840	373	2	4	3,566	153,368	223
경남	135,914	98,462	302	0	223	191	19	17	2,371	237,498	256
제주	12,635	4,380	53	0	0	102	13	0	403	17,586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224,982	163,180	5,313	796	5,172	1,042	279	19	17,536	418,319	566
사립(사인)	1,513,689	1,185,823	6,973	6,348	6,042	5,603	353	469	45,206	2,770,507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77,239	41,752	3,544	2,477	196	380	225	54	1,632	127,498	473
50~100인 미만	368,023	248,530	3,452	1,966	2,470	1,347	325	88	9,103	635,304	1,206
100~200인 미만	891,995	703,473	2,645	1,449	5,375	3,614	47	236	35,244	1,644,078	1,662
200인 이상	401,414	355,249	2,645	1,253	3,173	1,303	35	109	16,763	781,946	409
계	**1,738,671**	**1,349,003**	**12,286**	**7,144**	**11,215**	**6,645**	**633**	**487**	**62,742**	**3,188,825**	**3,750**

2) 전체 세입예산 과목별 분포

○ 세입예산에서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및 지원금(54.5%)과 수익자부담수입(42.3%)이 전체 세입의 96.8%를 차지하였고, 전년도이월금 2.0%, 설치·경영자이전수입 0.4%, 적립금이전수입 0.4%, 차입금 0.2%, 잡수입금 0.2% 순으로 나타남.

○ 시·도교육청별로는 보조금 및 지원금 비율이 세종과 제주가 각각 73.8%와 71.8%로 평균 54.5%를 크게 상회하였고, 서울, 경기, 대구는 각각 42.5%, 51.9%, 52.5%로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음. 수익자부담수입은 서울, 대구, 경기, 인천이 각각 52.8%, 45.7%, 44.9%, 43.1%로 평균보다 높고, 세종과 제주는 30% 미만으로 평균을 다소 크게 밑돌았음.

○ 설립유형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법인 사립유치원은 사인 사립유치원에 비해 수익자부담수입 비율이 다소 낮은 반면, 전년도이월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현원규모별로는 현원규모가 적어질수록 보조금 및 지원금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수익자부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음.

〈표 Ⅲ-1-3〉 2019년 사립유치원 세입예산 분포

(단위: %, 개원)

구분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수입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차입금	적립금 이전 수입	잡 수입금	기부·후원금 수입	지연 수납 수입	전년도 이월금	계	유치원 수
시도											
서울	42.5	52.8	0.5	0.4	0.5	0.2	0.0	0.0	3.0	100.0	569
부산	58.0	39.3	0.2	0.0	0.2	0.1	0.1	0.0	2.1	100.0	290
대구	52.5	45.7	0.7	0.0	0.2	0.1	0.0	0.0	0.8	100.0	233
인천	55.7	43.1	0.2	0.2	0.1	0.1	0.0	0.0	0.6	100.0	228
광주	60.5	38.5	0.3	0.0	0.0	0.1	0.0	0.0	0.5	100.0	157
대전	59.3	37.2	0.1	0.2	0.6	0.2	0.0	0.0	2.4	100.0	153
울산	61.9	36.1	0.0	0.0	0.2	0.1	0.0	0.0	1.6	100.0	108
세종	73.8	25.7	0.0	0.0	0.0	0.1	0.0	0.0	0.4	100.0	3
경기	51.9	44.9	0.2	0.4	0.3	0.3	0.0	0.0	2.1	100.0	972
강원	62.1	29.1	0.8	0.1	1.3	0.6	0.0	0.0	5.9	100.0	92
충북	66.0	27.9	0.5	0.4	0.1	0.1	0.0	0.0	4.9	100.0	77
충남	62.0	33.8	1.7	0.0	0.3	0.3	0.0	0.0	1.8	100.0	124
전북	63.4	34.0	0.1	0.5	0.5	0.6	0.1	0.0	0.8	100.0	144
전남	63.5	32.7	1.4	0.3	0.8	0.1	0.1	0.1	1.1	100.0	101
경북	64.9	30.3	0.9	0.0	1.2	0.2	0.0	0.0	2.3	100.0	223
경남	57.2	41.5	0.1	0.0	0.1	0.1	0.0	0.0	1.0	100.0	256
제주	71.8	24.9	0.3	0.0	0.0	0.6	0.1	0.0	2.3	100.0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53.8	39.0	1.3	0.2	1.2	0.2	0.1	0.0	4.2	100.0	566
사립(사인)	54.6	42.8	0.3	0.2	0.2	0.2	0.0	0.0	1.6	100.0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60.6	32.7	2.8	1.9	0.2	0.3	0.2	0.0	1.3	100.0	473
50~100인 미만	57.9	39.1	0.5	0.3	0.4	0.2	0.1	0.0	1.4	100.0	1,206
100~200인 미만	54.3	42.8	0.2	0.1	0.3	0.2	0.0	0.0	2.1	100.0	1,662
200인 이상	51.3	45.4	0.3	0.2	0.4	0.2	0.0	0.0	2.1	100.0	409
계	**54.5**	**42.3**	**0.4**	**0.2**	**0.4**	**0.2**	**0.0**	**0.0**	**2.0**	**100.0**	**3,750**

3) 세부 세입 예산과목별 규모

가)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금및지원금(관)은 공통과정지원금,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인건비보조금, 자본보조금, 일반운영보조금 등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보조금및지원금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각각 1조 2,333억원, 3,039억원, 1,591억원, 85억원, 1,770억원으로 나타남.

- 비율로 보면 보조금 및 지원금(관)은 공통과정지원금(70.9%),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17.5%), 일반운영보조금(10.2%(교육청 7.1%, 지자체 2.8%))이 98.6%를 차지함.

○ 시·도교육청별로는 보조금 및 지원금 규모가 경기, 서울, 경남이 각각 4,916억원, 2,066억원, 1,359억원으로 컸으며, 충북, 전남, 강원이 각각 333억원, 352억원, 392억원으로 낮은 규모로 나타남.

○ 설립유형별로는 법인 사립유치원 보조금 및 지원금 예산규모는 2,250억원, 사인 사립유치원은 1조 5,137억원 규모임.

○ 현원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의 세입 예산규모는 772억원, 50인~100인 미만은 3,680억원, 100인~200인 미만은 8,920억원, 200인 이상은 4,014억원으로 나타남.

〈표 Ⅲ-1-4〉 2019년 사립유치원 보조금및지원금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개원)

구분	공통과정 지원금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인건비보조금					자본보조금					일반운영보조금					계	유치원 수
			국가	지자체	교육청	기타	소계	국가	지자체	교육청	기타	소계	국가	지자체	교육청	기타	소계		
시도																			
서울	163,547	32,064	311	1,263	2,411	0	3,985	45	727	170	0	941	125	2,851	3,038	36	6,050	206,588	569
부산	97,144	25,588	48	69	359	0	476	5	16	183	0	204	30	434	4,425	0	4,888	128,300	290
대구	77,757	22,851	1	7	56	0	64	0	15	17	0	32	37	13	3,034	0	3,083	103,787	233
인천	82,311	17,212	4	498	377	0	879	0	475	947	0	1,421	34	6,142	13,557	245	19,978	121,801	228
광주	51,679	15,191	0	0	102	0	102	29	0	114	0	143	137	7	3,715	0	3,859	70,973	157
대전	54,629	15,992	30	18	411	0	459	7	24	385	0	417	282	743	12,108	0	13,133	84,629	153
울산	34,947	10,931	1	8	87	0	96	0	17	109	0	125	2	439	3,697	15	4,152	50,252	108
세종	491	156	88	0	20	0	108	0	0	0	0	0	0	50	53	0	103	858	3
경기	338,423	67,681	660	2,491	2,713	0	5,864	96	1,026	1,502	36	2,659	867	32,652	42,754	716	76,989	491,617	972
강원	25,044	7,792	526	150	309	0	985	0	112	273	0	385	118	1,515	3,392	9	5,035	39,241	92
충북	20,506	6,436	31	36	478	0	544	167	16	231	0	415	77	117	5,172	28	5,394	33,295	77
충남	46,463	10,091	0	158	246	0	404	13	99	262	0	374	156	281	9,253	0	9,691	67,022	124
전북	39,272	12,254	0	35	683	0	718	26	37	97	28	187	91	111	4,030	339	4,571	57,002	144
전남	23,874	7,516	8	21	48	29	106	0	15	289	0	304	205	873	2,309	0	3,387	35,188	101
경북	69,114	21,570	24	144	365	3	536	15	136	376	0	527	117	1,925	5,753	27	7,822	99,569	223
경남	100,299	28,376	35	50	330	0	416	10	196	206	0	412	129	1,281	5,002	0	6,411	135,914	256
제주	7,848	2,176	0	0	170	0	170	0	0	0	0	0	0	0	2,441	0	2,441	12,635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162,991	35,532	624	901	1,999	3	3,526	29	257	519	0	805	275	5,332	16,510	10	22,128	224,982	566
사립(사인)	1,070,357	268,345	1,143	4,048	7,165	29	12,386	384	2,654	4,640	64	7,742	2,132	44,101	107,221	1,405	154,859	1,513,689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49,581	14,934	300	214	682	29	1,226	16	227	519	0	762	535	2,504	7,564	133	10,736	77,239	473
50~100인 미만	252,139	69,092	286	1,183	2,913	0	4,381	213	715	1,294	28	2,250	570	10,284	28,854	454	40,161	368,023	1,206
100~200인 미만	636,351	156,918	939	2,403	4,067	3	7,412	173	1,554	2,464	36	4,228	1,015	24,520	61,009	541	87,085	891,995	1,662
200인 이상	295,277	62,932	242	1,149	1,503	0	2,894	10	415	882	0	1,307	288	12,126	26,305	286	39,005	401,414	409
계	**1,233,348**	**303,877**	**1,767**	**4,949**	**9,165**	**32**	**15,912**	**413**	**2,911**	**5,159**	**64**	**8,547**	**2,408**	**49,433**	**123,732**	**1,414**	**176,987**	**1,738,671**	**3,750**

주: 기타는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조정한 경우임.

〈표 Ⅲ-1-5〉 2019년 사립유치원 보조금및지원금 세입예산 분포

(단위: %, 개원)

구분	공통과정 지원금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인건비보조금					자본보조금					일반운영보조금					계	유치원 수
			국가	지자체	교육청	기타	소계	국가	지자체	교육청	기타	소계	국가	지자체	교육청	기타	소계		
시도																			
서울	79.2	15.5	0.2	0.6	1.2	0.0	1.9	0.0	0.4	0.1	0.0	0.5	0.1	1.4	1.5	0.0	2.9	100.0	569
부산	75.7	19.9	0.0	0.1	0.3	0.0	0.4	0.0	0.0	0.1	0.0	0.2	0.0	0.3	3.4	0.0	3.8	100.0	290
대구	74.9	22.0	0.0	0.0	0.1	0.0	0.1	0.0	0.0	0.0	0.0	0.0	0.0	0.0	2.9	0.0	3.0	100.0	233
인천	67.6	14.1	0.0	0.4	0.3	0.0	0.7	0.0	0.4	0.8	0.0	1.2	0.0	5.0	11.1	0.2	16.4	100.0	228
광주	72.8	21.4	0.0	0.0	0.1	0.0	0.1	0.0	0.0	0.2	0.0	0.2	0.2	0.0	5.2	0.0	5.4	100.0	157
대전	64.6	18.9	0.0	0.0	0.5	0.0	0.5	0.0	0.0	0.5	0.0	0.5	0.3	0.9	14.3	0.0	15.5	100.0	153
울산	69.5	21.8	0.0	0.0	0.2	0.0	0.2	0.0	0.0	0.2	0.0	0.2	0.0	0.9	7.4	0.0	8.3	100.0	108
세종	57.2	18.2	10.2	0.0	2.4	0.0	12.6	0.0	0.0	0.0	0.0	0.0	0.0	5.8	6.2	0.0	12.0	100.0	3
경기	68.8	13.8	0.1	0.5	0.6	0.0	1.2	0.0	0.2	0.3	0.0	0.5	0.2	6.6	8.7	0.1	15.7	100.0	972
강원	63.8	19.9	1.3	0.4	0.8	0.0	2.5	0.0	0.3	0.7	0.0	1.0	0.3	3.9	8.6	0.0	12.8	100.0	92
충북	61.6	19.3	0.1	0.1	1.4	0.0	1.6	0.5	0.0	0.7	0.0	1.2	0.2	0.4	15.5	0.1	16.2	100.0	77
충남	69.3	15.1	0.0	0.2	0.4	0.0	0.6	0.0	0.1	0.4	0.0	0.6	0.2	0.4	13.8	0.0	14.5	100.0	124
전북	68.9	21.5	0.0	0.1	1.2	0.0	1.3	0.0	0.1	0.2	0.0	0.3	0.2	0.2	7.1	0.6	8.0	100.0	144
전남	67.8	21.4	0.0	0.1	0.1	0.1	0.3	0.0	0.0	0.8	0.0	0.9	0.6	2.5	6.6	0.0	9.6	100.0	101
경북	69.4	21.7	0.0	0.1	0.4	0.0	0.5	0.0	0.1	0.4	0.0	0.5	0.1	1.9	5.8	0.0	7.9	100.0	223
경남	73.8	20.9	0.0	0.0	0.2	0.0	0.3	0.0	0.1	0.2	0.0	0.3	0.1	0.9	3.7	0.0	4.7	100.0	256
제주	62.1	17.2	0.0	0.0	1.3	0.0	1.3	0.0	0.0	0.0	0.0	0.0	0.0	0.0	19.3	0.0	19.3	100.0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72.4	15.8	0.3	0.4	0.9	0.0	1.6	0.0	0.1	0.2	0.0	0.4	0.1	2.4	7.3	0.0	9.8	100.0	566
사립(사인)	70.7	17.7	0.1	0.3	0.5	0.0	0.8	0.0	0.2	0.3	0.0	0.5	0.1	2.9	7.1	0.1	10.2	100.0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64.2	19.3	0.4	0.3	0.9	0.0	1.6	0.0	0.3	0.7	0.0	1.0	0.7	3.2	9.8	0.2	13.9	100.0	473
50~100인 미만	68.5	18.8	0.1	0.3	0.8	0.0	1.2	0.1	0.2	0.4	0.0	0.6	0.2	2.8	7.8	0.1	10.9	100.0	1,206
100~200인 미만	71.3	17.6	0.1	0.3	0.5	0.0	0.8	0.0	0.2	0.3	0.0	0.5	0.1	2.7	6.8	0.1	9.8	100.0	1,662
200인 이상	73.6	15.7	0.1	0.3	0.4	0.0	0.7	0.0	0.1	0.2	0.0	0.3	0.1	3.0	6.6	0.1	9.7	100.0	409
계	**70.9**	**17.5**	**0.1**	**0.3**	**0.5**	**0.0**	**0.9**	**0.0**	**0.2**	**0.3**	**0.0**	**0.5**	**0.1**	**2.8**	**7.1**	**0.1**	**10.2**	**100.0**	**3,750**

주: 기타는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조정한 경우임.

나) 수익자부담수입

○ 수익자부담수입 세입예산 과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급식비·간식비,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8,530억원, 2,526억원, 1,350억원, 1,084억원으로 나타남.

- 비율로는 교육비는 63.2%, 방과후과정비는 18.7%, 급간식비는 10.0%,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은 4.3%임.

○ 시·도교육청별로는 수익자부담수입은 경기, 서울이 각각 4,259억원, 2,566억원으로 높았으며, 울산, 강원, 전남, 충북이 각각 293억원, 184억원, 181억원, 141억원으로 낮게 나타남.

○ 설립유형별로는 법인 사립유치원 보조금 및 지원금 예산규모는 1,632억원, 사인 사립유치원은 1조 1,858억원 규모임.

○ 현원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의 세입 예산규모는 418억원, 50인~100인 미만은 2,485억원, 100인~200인 미만은 7,035억원, 200인 이상은 3,552억원으로 나타남.

〈표 Ⅲ-1-6〉 2019년 사립유치원 수익자부담수입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개원)

구분	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급식비·간식비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계	유치원 수
	입학금	일반교육 과정비	기타	소계	방과후 교육·돌봄비	방과후 특성화비	기타	소계	일반	특별	기타	소계	현장체험 학습비	통학차량 이용비	졸업 앨범비	그 밖의 교육활동	소계		
시도																			
서울	2,873	145,901	234	149,008	24,825	25,861	10	50,696	35,525	1,627	176	37,329	1,834	9,214	315	8,161	19,524	256,557	569
부산	834	75,511	0	76,345	2,462	1,399	0	3,861	3,962	63	5	4,031	145	1,624	28	939	2,737	86,974	290
대구	881	41,899	0	42,780	2,356	12,111	0	14,467	18,564	540	7	19,111	1,350	4,328	597	7,706	13,981	90,340	233
인천	1,105	60,886	13	62,005	10,390	12,266	26	22,682	1,501	722	24	2,247	1,845	1,078	150	4,259	7,332	94,266	228
광주	346	15,906	0	16,251	1,776	9,740	0	11,516	10,753	758	12	11,522	1,353	694	114	3,776	5,938	45,227	157
대전	318	36,309	9	36,636	6,286	6,092	26	12,404	1,307	254	22	1,583	286	1,034	92	1,108	2,520	53,142	153
울산	358	17,553	0	17,911	1,379	4,344	15	5,739	2,954	215	6	3,175	255	405	23	1,776	2,459	29,283	108
세종	3	192	0	195	0	0	0	0	52	11	0	63	20	18	1	2	41	299	3
경기	3,426	296,195	60	299,681	32,769	49,900	62	82,731	10,144	1,909	250	12,303	4,533	8,452	420	17,737	31,142	425,857	972
강원	257	12,647	0	12,904	1,809	1,254	16	3,079	506	186	0	692	313	134	123	1,120	1,690	18,365	92
충북	66	11,947	17	12,029	346	544	0	890	385	61	2	448	114	131	26	421	693	14,059	77
충남	330	23,122	175	23,627	2,640	7,006	11	9,657	947	121	0	1,067	476	419	117	1,185	2,197	36,548	124
전북	114	17,724	0	17,837	1,096	869	0	1,965	6,746	239	9	6,994	466	1,677	9	1,662	3,815	30,611	144
전남	175	11,215	72	11,461	286	1,824	0	2,111	2,660	234	4	2,898	409	138	34	1,063	1,644	18,114	101
경북	737	24,344	24	25,105	2,410	4,883	64	7,357	8,366	412	48	8,827	887	434	107	3,801	5,229	46,518	223
경남	770	46,823	31	47,624	7,774	14,965	0	22,739	20,378	1,170	58	21,605	872	1,972	336	3,313	6,493	98,462	256
제주	101	1,514	0	1,615	628	48	0	676	961	131	0	1,092	199	674	77	47	997	4,380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2,481	90,805	259	93,545	12,675	14,623	36	27,334	22,180	1,895	106	24,182	2,692	8,331	445	6,652	18,120	163,180	566
사립(사인)	10,212	748,882	377	759,471	86,559	138,484	195	225,237	103,531	6,756	516	110,804	12,665	24,096	2,125	51,425	90,311	1,185,823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371	23,859	0	24,230	3,085	5,398	0	8,483	4,780	344	6	5,129	747	860	99	2,203	3,909	41,752	473
50~100인 미만	2,446	148,324	24	150,794	19,573	28,676	130	48,379	25,789	1,931	94	27,814	4,001	6,336	449	10,755	21,541	248,530	1,206
100~200인 미만	6,852	441,618	596	449,067	52,387	76,233	100	128,720	66,358	4,526	271	71,155	7,434	16,465	1,271	29,360	54,531	703,473	1,662
200인 이상	3,023	225,885	16	228,924	24,189	42,800	0	66,989	28,785	1,850	251	30,886	3,174	8,765	751	15,759	28,450	355,249	409
계	**12,693**	**839,687**	**636**	**853,016**	**99,234**	**153,107**	**230**	**252,571**	**125,712**	**8,651**	**623**	**134,986**	**15,357**	**32,427**	**2,570**	**58,077**	**108,431**	**1,349,003**	**3,750**

주: 기타는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조정한 경우이며, 그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에는 사립유치원 자체신설 예산을 포함하여 재산출하였음.

〈표 Ⅲ-1-7〉 2019년 사립유치원 수익자부담수입 세입예산 분포

(단위: %, 개원)

구분	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급식비·간식비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계	유치원 수
	입학금	일반교육 과정비	기타	소계	방과후 교육·돌봄비	방과후 특성화비	기타	소계	일반	특별	기타	소계	현장체험 학습비	통학차량 이용비	졸업 앨범비	그 밖의 교육활동	소계		
시도																			
서울	1.1	56.9	0.1	58.1	9.7	10.1	0.0	19.8	13.8	0.6	0.1	14.5	0.7	3.6	0.1	3.2	7.6	100.0	569
부산	1.0	86.8	0.0	87.8	2.8	1.6	0.0	4.4	4.6	0.1	0.0	4.6	0.2	1.9	0.0	1.1	3.1	100.0	290
대구	1.0	46.4	0.0	47.4	2.6	13.4	0.0	16.0	20.5	0.6	0.0	21.2	1.5	4.8	0.7	8.5	15.5	100.0	233
인천	1.2	64.6	0.0	65.8	11.0	13.0	0.0	24.1	1.6	0.8	0.0	2.4	2.0	1.1	0.2	4.5	7.8	100.0	228
광주	0.8	35.2	0.0	35.9	3.9	21.5	0.0	25.5	23.8	1.7	0.0	25.5	3.0	1.5	0.3	8.3	13.1	100.0	157
대전	0.6	68.3	0.0	68.9	11.8	11.5	0.0	23.3	2.5	0.5	0.0	3.0	0.5	1.9	0.2	2.1	4.7	100.0	153
울산	1.2	59.9	0.0	61.2	4.7	14.8	0.1	19.6	10.1	0.7	0.0	10.8	0.9	1.4	0.1	6.1	8.4	100.0	108
세종	1.0	64.3	0.0	65.3	0.0	0.0	0.0	0.0	17.3	3.7	0.0	21.0	6.5	6.1	0.3	0.7	13.7	100.0	3
경기	0.8	69.6	0.0	70.4	7.7	11.7	0.0	19.4	2.4	0.4	0.1	2.9	1.1	2.0	0.1	4.2	7.3	100.0	972
강원	1.4	68.9	0.0	70.3	9.9	6.8	0.1	16.8	2.8	1.0	0.0	3.8	1.7	0.7	0.7	6.1	9.2	100.0	92
충북	0.5	85.0	0.1	85.6	2.5	3.9	0.0	6.3	2.7	0.4	0.0	3.2	0.8	0.9	0.2	3.0	4.9	100.0	77
충남	0.9	63.3	0.5	64.6	7.2	19.2	0.0	26.4	2.6	0.3	0.0	2.9	1.3	1.1	0.3	3.2	6.0	100.0	124
전북	0.4	57.9	0.0	58.3	3.6	2.8	0.0	6.4	22.0	0.8	0.0	22.8	1.5	5.5	0.0	5.4	12.5	100.0	144
전남	1.0	61.9	0.4	63.3	1.6	10.1	0.0	11.7	14.7	1.3	0.0	16.0	2.3	0.8	0.2	5.9	9.1	100.0	101
경북	1.6	52.3	0.1	54.0	5.2	10.5	0.1	15.8	18.0	0.9	0.1	19.0	1.9	0.9	0.2	8.2	11.2	100.0	223
경남	0.8	47.6	0.0	48.4	7.9	15.2	0.0	23.1	20.7	1.2	0.1	21.9	0.9	2.0	0.3	3.4	6.6	100.0	256
제주	2.3	34.6	0.0	36.9	14.3	1.1	0.0	15.4	21.9	3.0	0.0	24.9	4.6	15.4	1.8	1.1	22.8	100.0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1.5	55.6	0.2	57.3	7.8	9.0	0.0	16.8	13.6	1.2	0.1	14.8	1.6	5.1	0.3	4.1	11.1	100.0	566
사립(사인)	0.9	63.2	0.0	64.0	7.3	11.7	0.0	19.0	8.7	0.6	0.0	9.3	1.1	2.0	0.2	4.3	7.6	100.0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0.9	57.1	0.0	58.0	7.4	12.9	0.0	20.3	11.4	0.8	0.0	12.3	1.8	2.1	0.2	5.3	9.4	100.0	473
50~100인 미만	1.0	59.7	0.0	60.7	7.9	11.5	0.1	19.5	10.4	0.8	0.0	11.2	1.6	2.5	0.2	4.3	8.7	100.0	1,206
100~200인 미만	1.0	62.8	0.1	63.8	7.4	10.8	0.0	18.3	9.4	0.6	0.0	10.1	1.1	2.3	0.2	4.2	7.8	100.0	1,662
200인 이상	0.9	63.6	0.0	64.4	6.8	12.0	0.0	18.9	8.1	0.5	0.1	8.7	0.9	2.5	0.2	4.4	8.0	100.0	409
계	**0.9**	**62.2**	**0.0**	**63.2**	**7.4**	**11.3**	**0.0**	**18.7**	**9.3**	**0.6**	**0.0**	**10.0**	**1.1**	**2.4**	**0.2**	**4.3**	**8.0**	**100.0**	**3,750**

주: 기타는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조정한 경우이며, 그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에는 사립유치원 자체신설 예산을 포함하여 재산출하였음.

다) 차입금

○ 차입금 규모는 약 71억원 수준으로,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기타로 구분되어있으며 각각 47억원(65.4%), 24억원(34.3%), 0.26억원(0.4%) 정도로 나타남.

○ 시·도교육청별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은 경기가 각각 23억원(67.5%), 11억원(32.5%)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2억원(58%), 8억원(42%)로 나타남. 그 외에 단기차입금이 전북, 전남, 충북, 인천이 1~3억원으로 고루 분포되었었으며, 장기차입금은 대전, 전북이 1~2억원으로 나타남.

○ 설립유형별로는 법인 사립유치원은 단기차입금 2억원(37.2%), 장기차입금 5억원(62.8%)이며, 사인 사립유치원은 각각 44억(68.9%), 19억(30.7%)으로 나타남.

○ 현원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의 차입금 세입 예산규모 및 분포는 25억원, 50인~100인 미만은 20억원, 100인~200인 미만은 14억원, 200인 이상은 13억원으로 나타남.

〈표 Ⅲ-1-8〉 2019년 사립유치원 차입금 세입예산 규모 및 분포

(단위: 백만원, %, 개원)

구분	차입금 규모				차입금 분포				유치원 수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기타	계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기타	계	
시도									
서울	1,169	847	0	2,015	58.0	42.0	0.0	100.0	569
부산	45	0	0	45	100.0	0.0	0.0	100.0	290
대구	91	0	0	91	100.0	0.0	0.0	100.0	233
인천	371	0	0	371	100.0	0.0	0.0	100.0	228
광주	0	0	0	0	0.0	0.0	0.0	0.0	157
대전	84	169	0	253	33.3	66.7	0.0	100.0	153
울산	20	0	0	20	100.0	0.0	0.0	100.0	108
세종	0	0	0	0	0.0	0.0	0.0	0.0	3
경기	2,275	1,096	0	3,371	67.5	32.5	0.0	100.0	972
강원	0	70	0	70	0.0	100.0	0.0	100.0	92
충북	161	23	0	184	87.5	12.5	0.0	100.0	77
충남	44	0	0	44	100.0	0.0	0.0	100.0	124
전북	216	213	0	429	50.4	49.6	0.0	100.0	144
전남	135	20	26	181	74.6	11.1	14.3	100.0	101
경북	59	12	0	71	83.1	16.9	0.0	100.0	223
경남	0	0	0	0	0.0	0.0	0.0	0.0	256
제주	0	0	0	0	0.0	0.0	0.0	0.0	20
설립유형									

구분	차입금 규모				차입금 분포				유치원 수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기타	계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기타	계	
사립(법인)	296	500	0	796	37.2	62.8	0.0	100.0	566
사립(사인)	4,374	1,949	26	6,348	68.9	30.7	0.4	100.0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1,962	515	0	2,477	79.2	20.8	0.0	100.0	473
50~100인 미만	977	963	26	1,966	49.7	49.0	1.3	100.0	1,206
100~200인 미만	1,199	250	0	1,449	82.7	17.3	0.0	100.0	1,662
200인 이상	533	720	0	1,253	42.5	57.5	0.0	100.0	409
계	**4,670**	**2,449**	**26**	**7,144**	**65.4**	**34.3**	**0.4**	**100.0**	**3,750**

주: 기타는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조정한 경우임.

라) 잡수입금

○ 잡수입금 규모는 약 66억원 수준으로, 이자수입, 행정활동수입, 기타로 구분되어있으며 각각 5억원(7.9%), 60억원(90.4%), 1억원(1.7%)으로 나타남.

○ 시·도교육청별 잡수입금 규모는 이자수입보다 행정활동수입 규모가 높으며, 행정활동수입에서 경기 25억원(95.6%)으로 가장 높이 나타남.

○ 설립유형별로는 법인 사립유치원은 10억원이며, 사인 사립유치원은 각각 56억원으로 나타남.

○ 현원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3억원, 50인~100인 미만은 13억원, 100인~200인 미만은 36억원, 200인 이상은 13억원으로 나타남.

〈표 Ⅲ-1-9〉 2019년 사립유치원 잡수입금 세입예산 규모 및 분포

(단위: 백만원, %, 개원)

구분	잡수입금 규모				잡수입금 분포				유치원 수
	이자수입	행정활동수입	기타	계	이자수입	행정활동수입	기타	계	
시도									
서울	102	697	20	819	12.5	85.1	2.4	100.0	569
부산	11	219	15	245	4.6	89.4	6.0	100.0	290
대구	16	125	6	147	10.9	84.8	4.2	100.0	233
인천	33	242	0	275	12.0	88.0	0.0	100.0	228
광주	7	159	0	167	4.5	95.5	0.0	100.0	157
대전	28	214	0	242	11.6	88.4	0.0	100.0	153
울산	9	68	28	105	8.8	64.6	26.5	100.0	108
세종	0	1	0	1	18.0	82.0	0.0	100.0	3
경기	103	2,509	13	2,625	3.9	95.6	0.5	100.0	972
강원	41	362	0	404	10.3	89.7	0.0	100.0	92

구분	잡수입금 규모				잡수입금 분포				유치원 수
	이자수입	행정활동수입	기타	계	이자수입	행정활동수입	기타	계	
충북	3	44	1	48	7.3	91.6	1.1	100.0	77
충남	42	246	1	289	14.7	85.1	0.2	100.0	124
전북	39	503	0	542	7.1	92.8	0.1	100.0	144
전남	10	56	6	71	13.6	78.6	7.8	100.0	101
경북	52	294	27	373	14.0	78.7	7.2	100.0	223
경남	23	168	0	191	12.0	87.9	0.1	100.0	256
제주	3	99	0	102	3.1	96.9	0.0	100.0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252	762	28	1,042	24.2	73.1	2.7	100.0	566
사립(사인)	272	5,243	88	5,603	4.9	93.6	1.6	100.0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16	354	10	380	4.3	93.2	2.6	100.0	473
50~100인 미만	64	1,270	13	1,347	4.7	94.3	1.0	100.0	1,206
100~200인 미만	328	3,195	91	3,614	9.1	88.4	2.5	100.0	1,662
200인 이상	116	1,186	2	1,303	8.9	91.0	0.1	100.0	409
계	**525**	**6,005**	**116**	**6,645**	**7.9**	**90.4**	**1.7**	**100.0**	**3,750**

주: 기타는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조정한 경우임.

마)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이월금 규모는 627억원 수준으로, 이월사업비,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기타로 구분되어있으며 각각 223억원(35.6%), 2억원(0.4%), 397억원(63.2%), 5억원(0.9%)로 나타남.

○ 시·도교육청별 전년도 이월금 규모는 이월사업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높았음.

○ 설립유형별로는 법인 사립유치원은 175억원이며, 사인 사립유치원은 각각 452억원으로 나타남.

○ 현원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16억원, 50인~100인 미만은 91억원, 100인~200인 미만은 352억원, 200인 이상은 168억원으로 나타남.

〈표 Ⅲ-1-10〉 2019년 사립유치원 전년도이월금 세입예산 규모 및 분포

(단위: 백만원, %, 개원)

구분	전년도이월금 규모					전년도이월금 분포					유치원 수
	이월 사업비	정산대상 재원사용 잔액	순세계 잉여금	기타	계	이월 사업비	정산대상 재원사용 잔액	순세계 잉여금	기타	계	
시도											
서울	6,098	66	7,959	521	14,644	41.6	0.5	54.3	3.6	100.0	569
부산	1,963	6	2,682	0	4,651	42.2	0.1	57.7	0.0	100.0	290
대구	659	3	820	0	1,482	44.5	0.2	55.3	0.0	100.0	233
인천	161	32	1,050	0	1,244	13.0	2.6	84.5	0.0	100.0	228
광주	34	0	541	0	575	5.9	0.0	94.1	0.0	100.0	157
대전	1,397	0	1,996	0	3,392	41.2	0.0	58.8	0.0	100.0	153
울산	556	0	729	0	1,285	43.2	0.0	56.7	0.0	100.0	108
세종	0	0	5	0	5	0.0	0.0	100.0	0.0	100.0	3
경기	5,774	65	13,708	4	19,551	29.5	0.3	70.1	0.0	100.0	972
강원	2,252	12	1,456	0	3,720	60.5	0.3	39.1	0.0	100.0	92
충북	959	1	1,535	0	2,495	38.4	0.0	61.5	0.0	100.0	77
충남	375	9	1,602	9	1,995	18.8	0.5	80.3	0.4	100.0	124
전북	165	1	580	0	747	22.1	0.2	77.8	0.0	100.0	144
전남	141	3	473	0	617	22.9	0.5	76.7	0.0	100.0	101
경북	1,092	19	2,446	9	3,566	30.6	0.5	68.6	0.2	100.0	223
경남	648	4	1,720	0	2,371	27.3	0.2	72.5	0.0	100.0	256
제주	38	9	356	0	403	9.4	2.2	88.4	0.0	100.0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7,045	41	9,930	521	17,536	40.2	0.2	56.6	3.0	100.0	566
사립(사인)	15,264	191	29,729	21	45,206	33.8	0.4	65.8	0.0	100.0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442	5	1,184	0	1,632	27.1	0.3	72.6	0.0	100.0	473
50~100인 미만	3,057	40	5,994	13	9,103	33.6	0.4	65.8	0.1	100.0	1,206
100~200인 미만	12,514	115	22,085	530	35,244	35.5	0.3	62.7	1.5	100.0	1,662
200인 이상	6,295	72	10,395	0	16,763	37.6	0.4	62.0	0.0	100.0	409
계	**22,309**	**232**	**39,658**	**542**	**62,742**	**35.6**	**0.4**	**63.2**	**0.9**	**100.0**	**3,750**

주: 기타는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조정한 경우임.

다. 2019년도 사립유치원 세출예산 현황 분석

1) 전체 세출예산 규모

○ 2019년 사립유치원 세출예산 총규모는 3조 2,020억원 규모임.

- 인건비가 1조 7,194억원, 운영비가 2,967억원, 일반교육활동비가 5,497억원, 선택적교육활동비가 4,878억원, 시설설비비가 1,195억원, 적립금이 140억원 규모로 나타남.

○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가 9,458억원(29.5%)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이 4,853억원(15.2%), 경남 2,378억원(7.4%), 부산 2,206억원(6.9%), 인천 2,191억원(6.8%), 대구 1,975억원(6.2%) 순으로 나타남.

○ 설립유형별로는 법인 사립유치원 예산규모는 4,191억원(13.1%), 사인 사립유치원은 2조 7,829억원(86.9%) 규모임.

○ 현원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의 예산규모는 1,267억원(4.0%), 50인~100인 미만은 6,373억원(19.9%), 100인~200인 미만은 1조 6,649억원(52.0%), 200인 이상은 7,731억원(24.1%)으로 나타남.

〈표 Ⅲ-1-11〉 2019년 사립유치원 세출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개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일반교육활동비	선택적교육활동비	적립금	상환금	반환금	시설·설비비	지연지출금	잡지출	예비비	계	유치원수
시도													
서울	266,580	40,400	75,552	76,370	2,805	429	101	18,909	2,204	104	1,841	485,295	569
부산	141,444	16,983	35,793	16,948	166	176	14	8,643	96	19	288	220,570	290
대구	98,092	15,298	34,438	43,190	555	0	3	5,738	76	20	126	197,537	233
인천	113,618	19,324	47,639	31,880	496	67	8	5,772	177	38	61	219,079	228
광주	61,003	11,714	18,451	21,567	97	0	0	4,135	182	8	210	117,368	157
대전	72,618	35,658	24,104	18,690	797	185	1	6,369	213	40	442	159,117	153
울산	42,697	5,155	11,518	18,432	320	0	1	2,943	9	12	210	81,298	108
세종	654	147	191	152	0	0	0	10	9	0	0	1,162	3
경기	502,560	85,469	178,621	138,042	3,714	2,352	44	33,411	818	462	347	945,842	972
강원	35,107	5,178	8,838	8,355	952	155	18	3,680	112	10	76	62,481	92
충북	28,957	4,344	8,774	5,686	208	97	3	2,106	60	2	204	50,441	77
충남	62,552	10,853	15,259	14,647	854	123	2	4,232	89	38	118	108,768	124
전북	48,297	6,939	13,521	16,754	400	160	1	3,253	40	7	258	89,629	144

구분	인건비	운영비	일반교육활동비	선택적교육활동비	적립금	상환금	반환금	시설·설비비	지연지출금	잡지출	예비비	계	유치원수
전남	29,726	4,696	8,066	10,228	353	71	68	1,860	162	15	210	55,454	101
경북	81,520	12,958	21,111	27,737	1,377	38	0	7,009	425	26	317	152,519	223
경남	126,524	20,474	43,985	35,154	577	0	0	10,514	106	28	475	237,837	256
제주	7,480	1,082	3,845	3,956	277	0	8	888	0	0	51	17,586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225,484	38,557	62,842	60,975	3,279	407	122	25,165	297	89	1,901	419,117	566
사립(사인)	1,493,946	258,116	486,864	426,813	10,672	3,448	150	94,309	4,479	738	3,333	2,782,867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74,875	12,077	16,689	19,157	98	611	7	2,688	171	46	232	126,651	473
50~100인 미만	360,758	58,054	93,541	99,873	2,166	657	47	20,308	765	111	1,006	637,288	1,206
100~200인 미만	896,877	161,179	276,590	250,457	7,717	1,380	190	65,034	1,455	529	3,510	1,664,917	1,662
200인 이상	386,919	65,363	162,886	118,300	3,969	1,207	29	31,444	2,385	142	486	773,128	409
계	**1,719,429**	**296,673**	**549,706**	**487,788**	**13,950**	**3,855**	**272**	**119,474**	**4,776**	**828**	**5,233**	**3,201,985**	**3,750**

2) 전체 세출예산 과목별 분포

○ 세출예산에서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0.0%, 일반교육활동비 17.2%, 선택적교육활동비 15.2%, 운영비 9.3%, 시설설비비 3.7%, 적립금 0.4%, 예비비 0.2%, 지연지출금 0.1%, 상환금 0.1%, 잡지출 0.0%, 반환금 0.0%임.

○ 시·도교육청별로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시도는 부산(64.1%)이었고, 운영비는 대전(22.4%), 일반교육활동비는 인천, 제주, 선택적교육활동비는 대구, 울산, 제주, 적립금은 강원, 제주, 시설설비비는 강원, 제주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음.

○ 설립유형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법인 사립유치원은 사인 사립유치원에 비해 적립금, 시설설비비, 예비비 비중이 더 높았고, 사인 사립유치원은 일반교육활동비와 선택적교육활동비가 좀더 높게 나타남.

○ 현원규모별로는 현원규모가 적어질수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일반교육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음. 선택적교육활동비는 현원규모에 상관없이 비슷하였고, 규모가 커질수록 적립금, 시설설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규모에 비해 다소 컸음.

〈표 Ⅲ-1-12〉 2019년 사립유치원 세출예산 분포

(단위: %, 개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일반 교육 활동비	선택적 교육 활동비	적립금	상환금	반환금	시설·설비비	지연 지출금	잡 지출	예비비	계	유치원수
시도													
서울	54.9	8.3	15.6	15.7	0.6	0.1	0.0	3.9	0.5	0.0	0.4	100.0	569
부산	64.1	7.7	16.2	7.7	0.1	0.1	0.0	3.9	0.0	0.0	0.1	100.0	290
대구	49.7	7.7	17.4	21.9	0.3	0.0	0.0	2.9	0.0	0.0	0.1	100.0	233
인천	51.9	8.8	21.7	14.6	0.2	0.0	0.0	2.6	0.1	0.0	0.0	100.0	228
광주	52.0	10.0	15.7	18.4	0.1	0.0	0.0	3.5	0.2	0.0	0.2	100.0	157
대전	45.6	22.4	15.1	11.7	0.5	0.1	0.0	4.0	0.1	0.0	0.3	100.0	153
울산	52.5	6.3	14.2	22.7	0.4	0.0	0.0	3.6	0.0	0.0	0.3	100.0	108
세종	56.2	12.6	16.4	13.1	0.0	0.0	0.0	0.9	0.7	0.0	0.0	100.0	3
경기	53.1	9.0	18.9	14.6	0.4	0.2	0.0	3.5	0.1	0.0	0.0	100.0	972
강원	56.2	8.3	14.1	13.4	1.5	0.2	0.0	5.9	0.2	0.0	0.1	100.0	92
충북	57.4	8.6	17.4	11.3	0.4	0.2	0.0	4.2	0.1	0.0	0.4	100.0	77
충남	57.5	10.0	14.0	13.5	0.8	0.1	0.0	3.9	0.1	0.0	0.1	100.0	124
전북	53.9	7.7	15.1	18.7	0.4	0.2	0.0	3.6	0.0	0.0	0.3	100.0	144
전남	53.6	8.5	14.5	18.4	0.6	0.1	0.1	3.4	0.3	0.0	0.4	100.0	101
경북	53.4	8.5	13.8	18.2	0.9	0.0	0.0	4.6	0.3	0.0	0.2	100.0	223
경남	53.2	8.6	18.5	14.8	0.2	0.0	0.0	4.4	0.0	0.0	0.2	100.0	256
제주	42.5	6.2	21.9	22.5	1.6	0.0	0.0	5.0	0.0	0.0	0.3	100.0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53.8	9.2	15.0	14.5	0.8	0.1	0.0	6.0	0.1	0.0	0.5	100.0	566
사립(사인)	53.7	9.3	17.5	15.3	0.4	0.1	0.0	3.4	0.2	0.0	0.1	100.0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59.1	9.5	13.2	15.1	0.1	0.5	0.0	2.1	0.1	0.0	0.2	100.0	473
50~100인 미만	56.6	9.1	14.7	15.7	0.3	0.1	0.0	3.2	0.1	0.0	0.2	100.0	1,206
100~200인 미만	53.9	9.7	16.6	15.0	0.5	0.1	0.0	3.9	0.1	0.0	0.2	100.0	1,662
200인 이상	50.0	8.5	21.1	15.3	0.5	0.2	0.0	4.1	0.3	0.0	0.1	100.0	409
계	**53.7**	**9.3**	**17.2**	**15.2**	**0.4**	**0.1**	**0.0**	**3.7**	**0.1**	**0.0**	**0.2**	**100.0**	**3,750**

3) 세부 세출 예산과목별 규모

가) 인건비

○ 인건비(관)는 교원인건비, 직원인건비, 그 밖의 인건비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인건비 구성은 각각 72.4%, 22.6%, 5.0%를 차지하였음. 약 70%가 담임교사 등 정규직 교원

인건비로 편성함.

○ 시·도교육청별로는 교원인건비 비중은 대구(80.9%), 경북(79.7%), 제주(78.8%), 울산(78.5%) 등이 80% 수준에 이르러 높은 편이며, 경기(67.9%), 서울(69.4%), 인천(69.6%)은 7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편성되었음.

- 그 밖의 인건비 편성 비율은 서울(7.4%), 세종(8.0%), 경기(6.7%)가 타 시·도교육청 소재 사립유치원에 비해 다소 높았음.

○ 설립유형별로는 사립 사립유치원의 직원인건비 비중(22.9%)이 법인 사립유치원(20.7%)에 비해 다소 높고, 법인 사립유치원은 그 밖의 인건비 비중(8.2%)이 사인 사립유치원(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원규모별로는 현원규모가 적어질수록 교원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직원인건비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규모가 커질수록 수당과 복리후생비,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임.

〈표 Ⅲ-1-13〉 2019년 사립유치원 인건비 세출예산 분포

(단위: %, 개원)

구분	인건비			세부내역별						유치원 수
	교원 인건비	직원 인건비	그 밖의 인건비	급여	수당	복리 후생비	법정 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기타[1]	
시도										
서울	69.4	23.2	7.4	73.0	7.7	2.9	7.4	1.6	7.4	569
부산	75.0	22.4	2.6	78.5	7.3	3.0	7.0	1.5	2.6	290
대구	80.9	16.4	2.7	78.1	7.8	3.1	7.5	0.9	2.7	233
인천	69.6	26.5	3.9	73.3	11.0	2.7	7.4	1.3	4.2	228
광주	76.5	18.0	5.5	78.1	4.5	1.9	8.9	1.0	5.5	157
대전	75.9	20.5	3.6	74.5	9.3	3.8	7.7	1.1	3.6	153
울산	78.5	19.5	2.0	77.8	8.2	2.4	8.3	1.2	2.0	108
세종	77.9	14.1	8.0	75.8	7.2	2.3	6.2	0.5	8.0	3
경기	67.9	25.4	6.7	72.3	9.2	2.9	7.5	1.3	6.7	972
강원	70.5	25.7	3.8	76.9	8.3	2.6	6.9	1.6	3.8	92
충북	71.5	23.0	5.5	74.3	8.6	3.1	7.4	1.0	5.5	77
충남	71.4	24.4	4.2	72.7	10.1	3.9	7.9	0.9	4.6	124
전북	77.1	19.8	3.1	78.2	6.8	2.9	7.8	1.2	3.2	144
전남	75.6	21.6	2.8	80.3	5.5	2.7	7.6	1.1	2.8	101
경북	79.7	17.1	3.2	79.1	6.3	2.1	7.7	1.5	3.2	223
경남	77.2	19.4	3.5	72.8	11.4	3.7	7.4	1.4	3.5	256

구분	인건비			세부내역별						유치원 수
	교원 인건비	직원 인건비	그 밖의 인건비	급여	수당	복리 후생비	법정 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기타[1]	
제주	78.8	16.5	4.6	69.8	9.5	5.9	9.0	1.2	4.6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71.2	20.7	8.2	71.5	7.7	3.6	7.3	1.6	8.2	566
사립(사인)	72.6	22.9	4.5	75.0	8.7	2.9	7.6	1.3	4.6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78.6	16.1	5.3	78.9	5.1	1.4	8.1	1.2	5.3	473
50~100인 미만	74.7	20.6	4.7	77.0	7.1	2.2	7.6	1.4	4.7	1,206
100~200인 미만	72.1	22.8	5.1	74.1	8.8	3.2	7.4	1.3	5.2	1,662
200인 이상	69.8	25.2	5.1	72.4	10.0	3.6	7.6	1.3	5.1	409
계	**72.4**	**22.6**	**5.0**	**74.6**	**8.6**	**3.0**	**7.5**	**1.3**	**5.1**	**3,750**

주: 1) 기타는 그 밖의 인건비와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조정한 경우임.

나) 운영비

○ 운영비(관)는 전체 예산에서는 9.3%를 차지하며,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비 구성은 각각 91.5%, 8.5%를 차지하였음.

〈표 Ⅲ-1-14〉 2019년 사립유치원 운영비 세출예산 분포

(단위: %, 개원)

구분	운영비		세부내역별									유치원 수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			
	관리 운영비	업무 추진비	수용비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연료비	여비	그 밖의 관리 운영비	자체 신설	일반 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 추진비	자체 신설	
시도												
서울	90.6	9.4	51.4	25.4	5.8	0.9	6.0	1.0	5.6	3.8	0.0	569
부산	91.1	8.9	49.0	25.1	6.8	1.3	8.6	0.2	4.9	4.0	0.0	290
대구	91.8	8.2	48.9	30.8	7.4	1.6	3.1	0.0	4.3	3.9	0.0	233
인천	92.4	7.6	60.1	22.5	4.8	0.7	4.3	0.0	4.4	3.2	0.0	228
광주	90.4	9.6	52.8	21.5	9.3	0.6	6.2	0.0	6.2	3.4	0.0	157
대전	96.9	3.1	18.5	72.9	2.4	0.4	2.7	0.0	1.6	1.5	0.0	153
울산	88.5	11.5	46.1	30.9	7.9	1.2	2.5	0.0	6.2	5.3	0.0	108
세종	95.3	4.7	65.2	24.3	4.7	0.3	0.7	0.0	0.9	3.8	0.0	3
경기	90.2	9.8	55.3	24.1	5.1	1.0	3.2	1.5	4.8	5.0	0.0	972
강원	90.2	9.8	53.8	26.1	6.0	1.6	2.8	0.0	6.2	3.6	0.0	92

구분	운영비		세부내역별									유치원수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			
	관리 운영비	업무 추진비	수용비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연료비	여비	그 밖의 관리 운영비	자체 신설	일반 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 추진비	자체 신설	
충북	89.8	10.2	43.0	29.4	6.1	1.1	6.1	4.2	5.6	4.6	0.0	77
충남	93.4	6.6	55.5	22.7	5.3	0.6	8.3	1.1	3.8	2.8	0.0	124
전북	87.0	13.0	40.7	33.1	8.2	1.6	3.0	0.4	5.0	8.0	0.0	144
전남	90.0	10.0	43.9	29.4	6.2	1.2	9.2	0.0	5.4	4.6	0.0	101
경북	89.4	10.6	47.5	29.1	6.7	1.8	4.3	0.1	4.1	6.5	0.0	223
경남	93.1	6.9	58.5	22.7	7.0	1.4	3.4	0.1	4.0	2.9	0.0	256
제주	89.0	11.0	41.3	35.1	6.7	3.1	2.9	0.0	6.9	4.0	0.0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91.4	8.6	47.9	27.4	6.7	1.6	6.8	1.0	5.1	3.5	0.0	566
사립(사인)	91.5	8.5	49.0	31.5	5.5	0.9	4.0	0.7	4.4	4.1	0.0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88.6	11.4	40.6	29.9	8.5	1.0	7.2	1.3	4.9	6.5	0.0	473
50~100인 미만	89.3	10.7	50.2	26.4	6.5	1.0	4.6	0.6	5.3	5.4	0.0	1,206
100~200인 미만	91.8	8.2	45.5	35.6	5.0	1.0	4.2	0.5	4.3	3.9	0.0	1,662
200인 이상	93.2	6.8	57.2	23.7	5.8	1.1	4.0	1.3	4.2	2.6	0.0	409
계	**91.5**	**8.5**	**48.8**	**31.0**	**5.6**	**1.0**	**4.4**	**0.7**	**4.5**	**4.0**	**0.0**	**3,750**

주: 1) 자체신설은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조정한 경우임.

다) 일반교육활동비

○ 일반교육활동비(관)는 전체 예산에서는 17.2%를 차지하며, 일반급식비·간식비, 교재교구구입비가 각각 43.8%, 36.3%로 일반교육활동비의 80.1%를 차지함.

〈표 Ⅲ-1-15〉 2019년 사립유치원 일반교육활동비 세출예산 분포

(단위: %, 개원)

구분	세부내역별							유치원수
	교사연수·연구비	교재교구 구입비	행사비	장학금	복리비	일반 급식비·간식비	자체신규	
시도								
서울	2.7	35.3	14.2	0.3	1.3	45.8	0.4	569
부산	2.5	35.3	11.8	0.2	2.1	48.0	0.0	290
대구	2.4	22.7	11.8	0.0	1.4	61.7	0.0	233
인천	1.4	42.2	16.4	0.1	0.7	39.0	0.3	228

구분	세부내역별							유치원수
	교사연수·연구비	교재교구 구입비	행사비	장학금	복리비	일반 급식비·간식비	자체신규	
광주	1.7	29.7	10.4	0.0	2.8	55.4	0.0	157
대전	2.5	40.3	15.9	0.0	1.3	37.0	2.9	153
울산	2.2	26.2	17.1	0.1	1.6	52.8	0.0	108
세종	0.9	48.2	7.3	0.0	0.8	42.8	0.0	3
경기	1.6	41.1	18.1	0.1	1.6	36.7	0.8	972
강원	2.4	32.9	12.4	0.0	1.4	50.8	0.1	92
충북	1.9	38.2	9.7	0.0	1.8	48.1	0.3	77
충남	2.9	55.0	25.0	0.4	1.7	13.7	1.3	124
전북	3.8	25.2	11.9	0.1	1.3	56.2	1.5	144
전남	2.1	33.8	9.3	0.1	3.4	49.6	1.7	101
경북	2.9	26.0	14.1	0.1	1.5	55.4	0.1	223
경남	2.2	32.3	12.9	0.1	4.5	47.9	0.1	256
제주	2.0	11.7	4.8	0.0	1.3	80.2	0.0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3.4	25.4	14.0	0.2	1.9	54.4	0.7	566
사립(사인)	1.9	37.8	15.4	0.1	1.7	42.4	0.6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2.4	25.4	11.4	0.5	1.6	58.2	0.6	473
50~100인 미만	2.2	29.6	13.1	0.3	1.7	52.6	0.6	1,206
100~200인 미만	2.2	35.7	14.9	0.1	1.7	44.7	0.6	1,662
200인 이상	1.8	42.4	17.5	0.1	1.9	35.8	0.6	409
계	**2.1**	**36.3**	**15.3**	**0.1**	**1.8**	**43.8**	**0.6**	**3,750**

주: 1) 자체신설은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조정한 경우임.

라) 선택적교육활동비

○ 선택적교육활동비(관)는 전체 예산에서는 15.2%를 차지하며, 방과후교육활동과 그 밖의 교육활동비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선택적교육활동비에서 68.0%, 32.0%를 차지함.

〈표 Ⅲ-1-16〉 2019년 사립유치원 선택적교육활동비 세출예산 분포

(단위: %, 개원)

구분	선택적 교육활동비		세부내역별									유치원 수
			방과후교육활동비			그 밖의 교육활동비						
	방과후 교육 활동비	그 밖의 교육 활동비	방과후 교육·돌봄비	방과후 특성화비	자체 신설	현장 체험 학습비	통학 차량 이용비	특별 급식비·간식비	졸업 앨범비	수익자 부담 재원 교육 활동비	자체 신설	
시도												
서울	67.9	32.1	33.5	34.1	0.3	3.8	11.9	4.6	0.5	10.3	1.0	569
부산	42.5	57.5	23.2	19.3	0.0	10.7	28.3	12.4	0.4	5.5	0.1	290
대구	57.0	43.0	20.8	36.2	0.0	3.5	17.4	3.0	1.4	17.4	0.2	233
인천	71.7	28.3	32.6	38.8	0.3	6.6	4.1	3.8	0.5	13.0	0.2	228
광주	64.3	35.7	17.1	47.2	0.0	6.9	4.4	6.7	0.5	17.1	0.0	157
대전	74.2	25.8	40.9	33.3	0.0	3.5	8.4	6.6	0.5	6.8	0.0	153
울산	77.0	23.0	50.3	26.7	0.0	2.1	8.2	3.3	0.1	9.1	0.1	108
세종	68.3	31.7	55.0	13.4	0.0	12.8	9.7	7.2	0.6	1.3	0.0	3
경기	71.3	28.7	33.1	38.1	0.0	4.5	7.1	4.1	0.3	12.4	0.3	972
강원	64.4	35.6	41.2	23.1	0.1	4.5	7.9	8.3	1.5	13.4	0.0	92
충북	66.2	33.8	39.1	26.9	0.2	5.7	18.0	3.9	0.6	5.1	0.5	77
충남	78.9	21.1	27.9	49.9	1.1	3.7	4.7	3.9	0.7	7.9	0.3	124
전북	58.6	41.4	31.8	25.3	1.5	4.8	19.9	2.9	0.2	12.0	1.6	144
전남	63.5	36.5	19.4	44.1	0.0	5.1	10.6	6.6	0.3	13.1	0.7	101
경북	65.6	34.4	38.7	26.6	0.3	4.0	12.6	3.2	0.4	14.1	0.1	223
경남	76.5	23.5	31.1	45.4	0.0	3.0	6.6	3.5	0.9	9.2	0.3	256
제주	67.1	32.9	64.0	3.1	0.0	5.9	19.2	5.9	1.9	0.0	0.0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58.1	41.9	30.4	27.3	0.3	5.8	17.2	6.7	0.8	11.2	0.3	566
사립(사인)	69.4	30.6	32.3	36.9	0.2	4.4	9.2	4.2	0.5	11.8	0.4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65.7	34.3	31.1	34.1	0.5	5.2	11.0	5.9	0.6	11.2	0.4	473
50~100인 미만	66.9	33.1	32.8	33.8	0.2	5.3	11.0	5.1	0.5	10.6	0.6	1,206
100~200인 미만	68.4	31.6	33.2	34.9	0.2	4.4	10.2	4.5	0.5	11.5	0.4	1,662
200인 이상	68.6	31.4	29.2	39.2	0.1	4.1	9.4	3.8	0.7	13.4	0.1	409
계	**68.0**	**32.0**	**32.1**	**35.7**	**0.2**	**4.5**	**10.2**	**4.5**	**0.6**	**11.8**	**0.4**	**3,750**

주: 1) 자체신설은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조정한 경우임.

마) 적립금

○ 적립금을 편성한 사립유치원수는 총 3,750개원 중 437개원으로 11.7%가 편성하였고, 전체 적립금규모는 139억원 수준임.

- 시·도교육청별 적립금 편성 유치원 비율은 제주가 50.0%로 가장 높고, 강원 26.1%, 대전 22.9%, 충남 22.6%, 경북 22.0%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경기는 각각 12.5%, 9.3%로 나타남.
- 설립유형별로는 법인 사립유치원 중 18.9%(107개원), 사인 사립유치원 중 10.4%(330개원)가 적립금을 편성하였고, 현원규모로는 100~200인 미만 사립유치원 중 16.1%(267개원),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중 14.2%(58개원)가 적립금을 편성하였음.

○ 유치원당 적립금 규모는 전체 기준으로는 원당 3,720천원, 적립금을 편성한 유효 유치원 기준으로는 원당 31,923천원으로 나타남.

- 시·도교육청별로는 유효유치원 기준으로 부산이 원당 55,437천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41,269천원, 강원 39,683천원, 서울 39,513천원 순으로 나타남.
- 현원규모별로는 유효유치원 기준으로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이 원당 68,428천원으로 규모가 컸고, 50인 미만인 경우는 원당 12,306천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 개원연도별로는 10년~20년 미만인 유치원이 원당 37,472천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10년 미만이 34,791천원, 20년~30년 미만인 유치원이 28,331천원, 30년 이상인 유치원은 26,806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1-17〉 2019년 사립유치원 적립금 세출예산 분포(1)

(단위: 천원, %, 개원)

구분	적립금 편성 유치원수		유치원당 적립금 규모		전체 적립금 규모	전체 유치원수
	유치원수	비율	전체	유효		
시도						
서울	71	12.5	4,930	39,513	2,805,454	569
부산	3	1.0	573	55,437	166,311	290
대구	20	8.6	2,382	27,750	555,004	233
인천	17	7.5	2,177	29,199	496,378	228
광주	7	4.5	619	13,873	97,109	157
대전	35	22.9	5,210	22,774	797,096	153
울산	15	13.9	2,964	21,343	320,145	108
세종	0	0.0	0	0	0	3
경기	90	9.3	3,821	41,269	3,714,187	972
강원	24	26.1	10,352	39,683	952,380	92

구분	적립금 편성 유치원수		유치원당 적립금 규모		전체 적립금 규모	전체 유치원수
	유치원수	비율	전체	유효		
충북	8	10.4	2,703	26,017	208,136	77
충남	28	22.6	6,889	30,506	854,181	124
전북	27	18.8	2,776	14,804	399,696	144
전남	12	11.9	3,497	29,433	353,195	101
경북	49	22.0	6,176	28,106	1,377,218	223
경남	21	8.2	2,254	27,477	577,008	256
제주	10	50.0	13,843	27,687	276,865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107	18.9	5,792	30,640	3,278,528	566
사립(사인)	330	10.4	3,352	32,339	10,671,834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8	1.7	208	12,306	98,449	473
50~100인 미만	104	8.6	1,796	20,832	2,166,490	1,206
100~200인 미만	267	16.1	4,643	28,901	7,716,627	1,662
200인 이상	58	14.2	9,704	68,428	3,968,797	409
개원연도						
10년 미만	110	11.5	3,986	34,791	3,826,966	960
10~20년 미만	114	12.8	4,778	37,472	4,271,831	894
20~30년 미만	93	8.7	2,465	28,331	2,634,806	1,069
30년 이상	120	14.5	3,890	26,806	3,216,760	827
계	**437**	**11.7**	**3,720**	**31,923**	**13,950,362**	**3,750**

○ 개원연도와 현원규모에 따라 적립금 세출예산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개원연도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적립금을 편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에서 상대적으로 적립금을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원규모별 원아당으로 산출하여 적립금 편성액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257천원, 월 2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적립금 재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설치·경영자이전수입(법정부담금 제외), 잡수입금, 순세계잉여금 세입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세입예산 중 적립금 재원이 가능한 규모는 총 2조 1,449억원 규모임.

- 실제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437개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가능 재원 총액은 2,927억원 규모였으며, 원아당으로 386천원 규모임.
- 실제 적립금 편성규모는 139억원 규모로 적립금 가능재원 총액의 4.8% 수준이고, 원아당으로 산출하면 5.5%임.[9)]

〈표 Ⅲ-1-18〉 2019년 사립유치원 적립금 세출예산 분포(2)

(단위: 천원, 개원)

구분	현원규모별 적립금 편성 유치원수					전체 유치원수
	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200인 미만	200인 이상	계	
개원연도						
10년 미만	1	17	72	20	110	960
10~20년 미만	3	23	66	22	114	894
20~30년 미만	3	17	65	8	93	1,069
30년 이상	1	47	64	8	120	827
계	**8**	**104**	**267**	**58**	**437**	**3,750**

구분	현원규모별 원아당 연간 적립금 편성액								평균	
	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200인 미만		200인 이상			
개원연도										
10년 미만	213	(18)	174	(14)	195	(16)	265	(22)	212	(18)
10~20년 미만	132	(11)	363	(30)	215	(18)	224	(19)	233	(19)
20~30년 미만	386	(32)	384	(32)	183	(15)	241	(20)	298	(25)
30년 이상	721	(60)	231	(19)	204	(17)	241	(20)	349	(29)
계	**311**	**(26)**	**276**	**(23)**	**199**	**(17)**	**243**	**(20)**	**257**	**(21)**

주: ( )는 현원규모별 원아당 월평균 적립금 편성액을 의미함

〈표 Ⅲ-1-19〉 2019년 사립유치원 적립금 세출예산 분포(3)

(단위: 천원, %, 개원)

전체		실제 적립금 편성 유치원 대상					
적립금 재원 가능규모	유치원수	적립금재원		실제 편성			유치원수
		가능 규모	원아당(월)(A)	편성규모	원아당(월)(B)	비율(B/A)	
2,144,953,016	3,750	292,709,102	386	13,950,362	21	5.5	437

바) 상환금

○ 상환금을 편성한 사립유치원수는 총 3,750개원 중 101개원으로 2.7%가 편성하였고, 전체 상환금규모는 38억원 수준으로 이중 단기차입상환금은 약 18억 8천만원, 장기차입상환금이 약 19억 7천만원 규모임.

- 시·도교육청별로 서울과 경기 소재 사립유치원이 총 60개원으로 60% 정도를 차지하였음
- 상환금 편성 유치원 비율은 충북이 7.8%로 가장 높고, 강원 5.4%, 대전 4.6% 순으로 나타남. 서울과 경기는 모두 3.9%로 나타남.

9) 5% 미만은 303개원, 5%~10% 미만은 100개원이었고, 10%~20% 미만은 26개원, 20% 이상인 유치원은 8개원이 있었음.

- 설립유형별로는 법인 사립유치원 중 2.8%(16개원), 사인 사립유치원 중 2.7%(85개원)가 상환금을 편성하였고, 현원규모로는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중 8.6%(35개원), 50인 미만 소형 사립유치원 중 8.7%(41개원)가 상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치원당 상환금 규모는 전체 기준으로는 원당 1,028천원, 상환금을 편성한 유효 유치원 기준으로는 원당 38,165천원으로 나타남.

- 시·도교육청별로는 유효유치원 기준으로 경기가 원당 61,894천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58,737천원, 강원 31,070천원 순으로 많았음.
- 설립유형별로 사인 사립유치원이 원당 40,561천원, 법인 사립유치원은 25,440천원으로 나타났음.
- 현원규모별로는 50인~100인 미만 사립유치원 중 상환금이 있는 유치원은 6개원에 불과하나, 원당 평균 상환금은 2억원이 넘어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였음.

〈표 Ⅲ-1-20〉 2019년 사립유치원 상환금 세출예산 분포(1)

(단위: 천원, %, 개원)

구분	상환금 편성		유치원당 상환금		전체 상환금 규모			전체 유치원수
	유치원수	비율	전체	유효	계	단기차입 상환금	장기차입 상환금	
시도								
서울	22	3.9	755	19,515	429,323	198,282	231,041	569
부산	3	1.0	608	58,737	176,210	1,200	175,010	290
대구	0	0.0	0	0	0	0	0	233
인천	3	1.3	294	22,314	66,943	41,583	25,360	228
광주	0	0.0	0	0	0	0	0	157
대전	7	4.6	1,210	26,457	185,202	14,601	170,601	153
울산	0	0.0	0	0	0	0	0	108
세종	0	0.0	0	0	0	0	0	3
경기	38	3.9	2,420	61,894	2,351,986	1,265,245	1,086,741	972
강원	5	5.4	1,689	31,070	155,349	66,316	89,033	92
충북	6	7.8	1,255	16,108	96,650	50,900	45,750	77
충남	5	4.0	993	24,616	123,082	34,000	89,082	124
전북	6	4.2	1,113	26,717	160,304	138,104	22,200	144
전남	3	3.0	705	23,733	71,200	70,000	1,200	101
경북	3	1.3	172	12,819	38,456	0	38,456	223
경남	0	0.0	0	0	0	0	0	256
제주	0	0.0	0	0	0	0	0	20
설립유형								

구분	상환금 편성		유치원당 상환금		전체 상환금 규모			전체 유치원수
	유치원수	비율	전체	유효	계	단기차입 상환금	장기차입 상환금	
사립(법인)	16	2.8	719	25,440	407,044	120,601	286,443	566
사립(사인)	85	2.7	1,083	40,561	3,447,661	1,759,630	1,688,031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41	8.7	2,918	33,658	1,379,978	480,187	899,791	473
50~100인 미만	6	0.5	1,001	201,103	1,206,619	414,099	792,520	1,206
100~200인 미만	19	1.1	367	32,139	610,641	529,760	80,881	1,662
200인 이상	35	8.6	1,607	18,785	657,467	456,185	201,282	409
개원연도								
10년 미만	24	2.5	1,075	42,988	1,031,705	681,145	350,560	960
10~20년 미만	24	2.7	810	30,191	724,580	486,993	237,587	894
20~30년 미만	33	3.1	1,586	51,371	1,695,234	568,023	1,127,211	1,069
30년 이상	20	2.4	488	20,159	403,186	144,070	259,116	827
계	**101**	**2.7**	**1,028**	**38,165**	**3,854,705**	**1,880,231**	**1,974,474**	**3,750**

사) 시설·설비비

○ 시설·설비비(관)는 전체 예산에서는 3.7%를 차지하며, 시설비와 설비·비품비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66.1%, 33.9%를 차지함.

〈표 Ⅲ-1-21〉 2019년 사립유치원 시설·설비비 세출예산 분포

(단위: %, 개원)

구분	시설·설비비		세부내역별						유치원수
			시설비			설비·비품비			
	시설비	설비·비품비	신·증축비	유지비	자체신설	취득비	유지비	자체신설	
시도									
서울	75.0	25.0	24.0	51.0	0.0	21.0	4.0	0.0	569
부산	65.4	34.6	9.8	55.6	0.0	30.0	4.6	0.0	290
대구	50.1	49.9	3.9	45.0	1.2	44.4	5.4	0.0	233
인천	70.6	29.4	13.6	57.0	0.0	26.2	3.2	0.0	228
광주	51.5	48.5	3.4	48.1	0.0	42.9	5.2	0.4	157
대전	63.6	36.4	18.4	45.2	0.0	30.0	6.4	0.0	153
울산	57.1	42.9	0.2	56.8	0.0	39.0	4.0	0.0	108
세종	38.8	61.2	0.0	38.8	0.0	19.4	41.7	0.0	3
경기	71.0	29.0	21.5	49.5	0.0	25.4	3.4	0.2	972
강원	72.8	27.2	29.6	43.2	0.0	24.6	2.7	0.0	92
충북	63.3	36.7	27.1	36.3	0.0	32.6	3.8	0.3	77

구분	시설·설비비		세부내역별						유치원 수
			시설비			설비·비품비			
	시설비	설비·비품비	신·증축비	유지비	자체신설	취득비	유지비	자체신설	
충남	54.4	45.6	5.6	48.2	0.6	37.0	8.5	0.0	124
전북	57.9	42.1	14.1	43.8	0.0	37.2	4.9	0.0	144
전남	56.7	43.3	22.8	33.9	0.0	36.2	7.1	0.0	101
경북	62.9	37.1	16.0	46.9	0.0	30.4	6.6	0.0	223
경남	59.9	40.1	3.1	56.9	0.0	36.8	3.3	0.0	256
제주	72.4	27.6	0.0	72.4	0.0	26.4	1.3	0.0	20
설립유형									
사립(법인)	74.8	25.2	28.5	46.0	0.3	21.1	4.1	0.0	566
사립(사인)	63.8	36.2	12.7	51.1	0.0	31.7	4.4	0.1	3,184
현원규모									
50인 미만	65.9	34.1	14.6	51.1	0.1	30.0	4.0	0.1	1,662
50~100인 미만	69.9	30.1	16.6	53.3	0.0	26.0	4.0	0.0	409
100~200인 미만	54.5	45.5	12.9	41.6	0.0	37.3	8.2	0.1	473
200인 이상	62.5	37.5	20.0	42.4	0.0	32.2	5.2	0.1	1,206
개원연도									
10년 미만	59.2	40.8	11.5	47.7	0.1	36.4	4.3	0.0	960
10~20년 미만	68.3	31.7	16.0	52.0	0.2	26.6	4.9	0.2	894
20~30년 미만	68.1	31.9	15.1	52.9	0.0	28.3	3.5	0.2	1,069
30년 이상	70.9	29.1	23.4	47.5	0.0	24.4	4.6	0.0	827
계	**66.1**	**33.9**	**16.0**	**50.0**	**0.1**	**29.5**	**4.3**	**0.1**	**3,750**

주: 1) 자체신설은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조정한 경우임.

2.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점 분석[10)]

가. 예산편성·집행의 근거 불충분

○ 교직원이 아닌 설립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근거없는 급여 또는 수당을 지출을 하거나, 일부 교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원장 및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등과 관련한 서류 미비(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0) 본 절은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자료 및 2019년 예산편성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

나. 예산편성 오류 및 집행 상 부적절

○ 예산과목 편성 오류

-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함에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 수익자부담수입, 보험료, 노후차량적립금 등에 대한 세입·세출 미편성하고, 설립자 또는 원장 개인명의 통장에 별도 관리하는 경우가 발생함.
  - 수익자부담경비나 반환금, 적립금 등을 개인 통장에서 별도 관리하거나 혼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음.
- 일부 교직원에 대해 4대보험 미편성하는 사례가 있음.
- 공통운영비와 재산조성비(행정장비 등), 공통운영비와 수수료및제세공과금(보안용역, 소방관련 점검료 등), 적립금과 수익자부담교육비(노후차량적립금) 등에 대한 잘못 편성하는 경우가 발생함.
- 수익자부담수입의 세입·세출 예산액이 미일치 하는 경우가 있음.
- 시설비에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불법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음.
- 2019년도의 세출예산 편성시 인건비에 대출상환금(목)을 신설하여 잘못 편성하는 경우가 있음.

○ 예산 집행 부적절

- 예산지출 대상자에 아닌 경우에도 퇴직금이나 사학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함.
-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관련 비용을 지출(개인의 보험료, 과태료, 재산세, 양도소득세, 통신요금, 개인채무 상환, 개인차량 할부금, 주유비, 가족 소유 시설비 등)하는 경우가 있음.
- 유치원연합회 기부금, 동창회비, 대학축제 후원금 등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는 집행 부적절 사례가 있음.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이나 시·도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가 발생함.
- 유치원회계에서 원장이 소유한 타 기관회계로의 부적절하게 비용을 이체하는 경우가 있음.
- 당초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음.

다. 관할청 보고 등 행정처리 미준수

○ 적립금과 관련하여 관할청에 사전 보고 및 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거나,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없이 편성·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함.

○ 예결산에 대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지출명령자와 지출원의 날인이 없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표 Ⅲ-2-1〉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오류 주요 사례

구분	내 용
인건비	- 원장 급여 이외 근거가 없는 별도 수당 수령 - 방과후 활동 교사인건비를 원장에게 지급 - 교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설립자나 직무가 불명확한 관계자(배우자 자녀 등)에게 월 급여 지급 - 개인 통신요금, 세금, 개인 차량 주유비, 원장 주택의 재산세 체납액, 양도소득세 등 유치원회계에서 지급 - 설립자 개인 사학연금부담금 유치원회계에서 집행 -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직원 보수 지급 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근로소득금액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거나, 연말정산 대상자임에도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음 - 소속 원장 및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신고 기초 자료를 제출하면서 근로소득 총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축소 신고 - 교사기본보조금 부정 수령 - 조리보조원, 보조교사, 운전원 등 근로자 4대 보험에 미 가입 - 실제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에게 통학차량 운전기사 인건비 지급 - 근로계약 미체결자에게 급여 부정 지급 및 근로계약과 상이한 보수 지급 -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 발생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음에도 이를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통장에 적립한 사실이 있다.
운영비	- 물품구입, 공사와 관련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대금 지급 등 회계관리 소홀 - 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 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국세청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원장 개인차량의 할부금, 보험료, 자동차세 및 과태료 유치원회계에서 집행 - 유치원회계에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개인명으로 등록하고 출·퇴근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행정자산확충비(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비품제외)는 공통운영비에 편성하여야 하나, 교수학습활동비 또는 재산조성비에 편성 - 캡스이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안전협회비, 소방안전점검료 등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은 공통운영비에 편성하여야 하나 시설비에 편성 - 동창회비, 대학축제 후원금 등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및 후원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
일반교육활동비	- 유치원연합회 기부금 등 납부 등 목적 외 용도 사용

구분	내 용
수익자 부담	- 수익자부담교육비는 1:1 매칭경비로서 세입/세출목, 세입/세출 예산액 미일치 - 수입의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미반영하고 집행 - 월납입 수업료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 의심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당사자 없이 견학·행사용으로 현금지출 및 설립자의 다른 유치원회계 계좌로 지출 - 급식비 학부모부담금 관련 식자재구입비·인건비 등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없이 징수 - 사립유치원에서 수익자부담경비 학부모 징수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미실시 - 급식비 예산목적 외 사용(교직원 간식, 커피, 맥주 등) - 설립자 개인명의 수입금 수납 후 일정금액이 되면 유치원회계 현금으로 일괄 입금 -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수익자부담경비를 유치원 교비 계좌 입금처리 및 유치원 회계로 징수처리하지 않고, 유치원 원장의 개인통장에 무단 보관 - 기타 수익자부담금인 교재교구구입비, 원복, 현장학습비, 앨범비 등을 예산에 미편입하고 별도 통장으로 관리 - 노후차량적립금은 적립금 목에 편성하여야 하나, 수익자부담교육비에 편성
적립금	- 관할청에 사전보고 없이 적립금 조성 명목으로 원장 또는 설립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료 유치원회계에서 지출 예: '재산종합보험', '재물보험', '화재배상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없이 적립금 운영 - 건축적립금을 원장 본인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적립 - 관할청에 건축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치원 외벽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해 건축적립금을 부당하게 중도 인출
상환·반환금	- 입학금 및 수업료 수납 시 반드시 회계처리를 하고 반환 또는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반환결의서 또는 감액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입학금 및 수업료를 회계처리(징수 및 수입처리)하지 않고 통장거래로 수납 및 반환
재산 조성비	- 원장 배우자 소유 체험학습장의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비를 유치원회계에서 집행(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부적정한 경우) - 3천만 원 이상 공사를 계약·집행하면서 계약서·설계서 등 관계서류 없이 시설공사 집행 - 도면 및 사진대장 등 공사입증 서류 없이 정당한 채주가 아닌 제3자에게 공사대금 지출
	- 일정금액(1억) 이상 공사임에도 1개 업체의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 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함 - 사유재산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비 과목 중 공통시설유지비목에 '사유재산공적이용료' 항목 편성 집행 - 원장 자녀 대학등록금, 모텔·호텔비, 노래방 등 카드 사용비 유치원회계에 지출
차입금	- 차입금은 법인 유치원만 해당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집행한 사례
이월금	- 급식비 집행잔액을 환불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처리 - 관할청에 사전보고 없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건축적립금 설립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임의 관리
잡지출	- 유치원연합회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 - 유니세프 및 한국심장재단 등에 후원금 명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한 사례 - 사적 기부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
예비비	-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사례

구분	내 용
기타	- 유치원 원장 본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ㅇㅇ어린이집 원아수가 줄어들어 인건비 등 운영비가 부족하자 유치원회계에서 지출명령 및 증빙 없이 어린이집 계좌로 00,000천원 이체 - 유치원회계 예산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예산의 성립전 사용결정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함. - 유치원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 - 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데도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품의를 득하고 지출결의서는 목별, 채주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계산서, 영수증)와 견적서 등을 적법하게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① 지출에 따른 품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례 ② 지출결의서를 목별, 채주별로 작성하지 않고 1건으로 일괄하여 작성함으로써 지출 현황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 ③ 지출결의서에 세금계산서(계산서)와 견적서 등을 누락한 사례 - 지출명령자와 지출원의 날인이 없는 지출결의서 작성 지급 - 세출 예산에 편성된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인지에 대한 결정과 정당 지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품의요구서류,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등 일부 회계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집행하는 등 유치원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 결산 산출내역은 사업명, 물량, 금액 등으로 기술하되, 원 단위까지 표시,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의하여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고 있음. 세입 및 세출 예산 집행 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절사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과목에서는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초과하고 있음

3. 소결

○ 유치원 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 사립유치원 세입·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 사립유치원 세입 중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의 재정지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부모 등 수익자부담수입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임.

- 2019년 사립유치원 세입예산 총규모는 3조 1,888억원 규모 수준이었으며, 세입예산과목별 비중은 보조금 및 지원금(54.5%)과 수익자부담수입(42.3%)이 전체 세입의 96.8%를 차지하였고, 전년도이월금 2.0%, 설치·경영자이전수입 0.4%, 적립금이전수입 0.4%, 차입금 0.2%, 잡수입금 0.2% 순으로 나타남.

- 보조금 및 지원금은 총 1조 7,388억원이었고, 이 중 공통과정지원금,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인건비보조금, 자본보조금, 일반운영보조금이 각각 1조 2,333억원, 3,039억원, 1,591억원, 85억원, 1,770억원으로, 공통과정지원금이 70.9%로 대부분이었음.
- 수익자부담수입은 총 1조 3,490억원으로, 이 중 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급식비·간식비,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이 각각 8,530억원, 2,526억원, 1,350억원, 1,084억원으로, 입학금과 일반교육과정비를 합한 교육비의 비중이 63.2%로 가장 높았음.

○ 사립유치원 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교육활동비와 운영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인 사립유치원은 사인 사립유치원에 비해 적립금, 시설설비비, 예비비 비중이 더 높았고, 사인 사립유치원은 일반교육활동비와 선택적교육활동비가 좀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전체적으로 세출 중 인건비 비중은 50.0%, 일반교육활동비 17.2%, 선택적교육활동비 15.2%, 운영비 9.3%, 시설설비비 3.7%, 적립금 0.4%, 예비비 0.2%, 지연지출금 0.1%, 상환금 0.1%, 잡지출 0.0%, 반환금 0.0%임.

○ 특히, 사립유치원 중 적립금을 편성한 유치원은 총 437개원으로 11.7%가 편성하였음.

- 전체 적립금 규모는 139억원 수준으로, 적립금을 편성한 유치원 평균은 31,923천원, 원아당 부담금액은 월 21천원이었음.

○ 사립유치원 예산집행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세입·세출예산과목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잘못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기관인 관할청에 승인, 보고 등의 행정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Ⅳ.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관련 주요 논의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일반적 쟁점

가. 설립유형(법인과 사인(私人))에 따른 적용 상의 문제

○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이 규칙은 포괄적으로 법인과 법인이 설립한 학교와 사인이 설립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세부 조항들의 내용은 학교를 설립하는 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조(목적)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

○ 이는 사인(私人) 설립 유치원의 비중과 이곳에 재원하는 원아수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립한 유치원에 재무·회계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음.

○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치원에 보다 적절한 재무·회계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별도 회계규칙 마련 등을 제안해 왔음(김병주 외, 2010, 우명숙 외, 2012; 김은설 외, 2014).

- 그러나 현재까지 별도의 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기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5, 6을 신설하여,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나. 사인(私人) 설립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 관련 규정 부재

○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사립유치원도 법인유치원과 함께 사립학교법의 조항을 따라야 하나, 관련 법령에는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설립자(경영자)의 권한과 의무, 급여 및 해산시 재산처분 등의 관련 규정이 부재함.

* 사립학교경영자: 사립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사립학교법 제2조)

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유치원 세입 예산과목 관련 논의

○ 본 절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 5], [별표 6]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가. 보조금과 지원금

1) 쟁점

○ 보조금과 지원금은 재원의 성질이 상이하여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유아교육법 제24조)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름.

2) 주장

○ 사립유치원 측은 '보조금 및 지원금' 관 과목을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구분하고, 지원금을 별도의 관 과목으로 신설이나, 관 조정을 요구함.

-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학부모가 결재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특정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보조금과는 성격이 달라 보조금과는 분리되어야 함(관 과목 신설).
- 또는 '1 보조금 및 지원금'은 1. 보조금만 다루고,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수업료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기존의 '수익자부담수입'의 교육과정비로 이동이 필요함(관 과목 조정).
-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을 '방과후과정운영지원금'으로 변경을 요구함.

〈표 Ⅳ-2-1〉 사립유치원 측의 세입 '보조금 및 지원금' 관 과목 변경 주장

세 입				세 입		
관	항	목		관	항	목
보조금및 지원금	공통과정 지원금	공통과정지원금	→	지원금	공통과정 지원금	공통과정지원금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방과후과정 운영지원금	방과후과정운영지원금
	인건비 보조금	국가보조금		보조금	인건비 보조금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교육청보조금				교육청보조금
	자본보조금	국가보조금			자본보조금	국가보조금

세 입		
관	항	목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교육청보조금
	일반운영 보조금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교육청보조금

세 입		
관	항	목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교육청보조금
	일반운영 보조금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교육청보조금

○ 사립유치원의 요구와 다르게 현재의 세입 예산과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 사립유치원 운영에서 공공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공통과정지원금(학부모가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기존의 세입예산 과목(별표 5)대로 유지하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에 따르면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고, 무상교육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며, 무상교육은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대상임. 또한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기존 세입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3) 반영 가능성 및 대안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지원금(학부모가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과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을 한 보호자의 인증을 거쳐 매월 유치원으로 입금하게 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유아학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공공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음.[11)]

○ 또한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로 나타난 회계부정 및 비리와 관련하여 회계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별도 관으로 신설하거나, 수익자부담수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아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되는 방과후과정비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결과에 따라, 현행대로 방과후과정비를 유아 보호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방과후과정비운영 보조금이라는 목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해 보임.

- 대법원(2019.4.3. 사건 제2016다203421)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9.25., 사건

11)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 등. 공보 제274호. 867 [기각]

2019나18023)에 따라 원아 1인당 월7만원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보조금이 아님.

- 유아교육법 제24조 2항에 따라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그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 이외에 현행 사학기관 재무·규칙 별표5에는 교사(校舍) 등 시설·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으로 자본보조금을 두고 있는데, 사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자본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보다는 시설·설비보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나. 수익자부담수입 용어 관련

1) 쟁점

○ ‘수익자부담수입’ 관 과목을 ‘학부모부담수입’으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함.

2) 주장

○ 사립유치원 측은 ‘수익자부담수입’ 관 과목을 ‘학부모부담수입’으로 관 명칭을 변경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별표3의 분류체계와 동일하게 하거나, ‘수익자부담수입’과 ‘학부모부담수입’ 관을 분리하여 학부모부담금과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함.

- 우선 명칭 변경을 통한 조정은 학부모부담수입은 등록금(입학금, 교육과정수업료, 방과후과정 수업료)과 수익자부담수입(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이용비, 졸업앨범비, 방과후특성화비, 특별급간식비, 그 밖의 교육활동수익자부담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Ⅳ-2-2〉 사립유치원 측의 세입 ‘수익자부담수입’ 관 과목 변경 주장(1)

세 입(현재)				세 입(사립유치원 측 요구)		
관	항	목		관	항	목
수익자 부담수입	교육비	입학금	→	학부모 부담수입	등록금	입학금
		일반 교육과정비				교육과정수업료 (일반 교육과정비 + 일반급식비 · 간식비)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교육 · 돌봄비				방과후과정수업료 (방과후교육 · 돌봄비 +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특성화비			그밖의 수익자 부담수입	현장체험학습비
	급식비 · 간식비	일반급식비 · 간식비				통학차량이용비
		특별급식비 · 간식비				졸업앨범비

세 입(현재)			세 입(사립유치원 측 요구)		
관	항	목	관	항	목
	그밖의 수익자 부담수입	현장체험학습비			특별급식비 · 간식비
		통학차량이용비			그밖의교육활동수익자부담수입
		졸업앨범비			
		그밖의교육활동수익자부담수입			

○ 또는 수익자부담수입과 학부모부담수입 관 과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학부모 부담수입에는 교육비, 급식비·간식비*로, 수익자부담수입은 방과후과정비, 그밖의 수익자 부담수입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교육부의 누리과정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유치원에서의 점심식사는 학부모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본 교육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부모부담수입에 포함하여 기본적인 수입으로 포함하도록 해야 함.

〈표 Ⅳ-2-3〉 사립유치원 측의 세입 '수익자부담수입' 관 과목 변경 주장(2)

세 입(현재)				세 입(사립유치원 측 요구)		
관	항	목		관	항	목
수익자 부담수입	교육비	입학금	→	학부모 부담수입	교육비	입학금
		일반 교육과정비				일반 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교육 · 돌봄비			급식비 · 간식비	일반급식비 · 간식비
		방과후특성화비				특별급식비 · 간식비
	급식비 · 간식비	일반급식비 · 간식비		수익자 부담수입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교육 · 돌봄비
		특별급식비 · 간식비				방과후특성화비
	그밖의 수익자 부담수입	현장체험학습비			그밖의 수익자 부담수입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이용비				통학차량이용비
		졸업앨범비				졸업앨범비
		그밖의교육활동수익자부담수입				그밖의교육활동수익자부담수입

○ 이에 대해 학부모부담수입으로의 용어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학교회계의 용어와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현재 사립학교 재원 구조하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유치원에서는 일반 교육과정비)는 등록금 항으로 분류하여 수익자부담수입(항)과 별도로 보고 있음.

○ 또한 방과후과정비나 급간식비를 수익자부담금이 아닌 등록금 등 기본경비에 포함하자는 요

구에 대해,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시간 이후 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과정이고, 급식비·간식비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방과후과정 수업료와 일반 급식비·간식비를 기본적 교육활동으로서 교육비에 포함하는 것 보다는 현행대로 수익자부담수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이외에도 학부모부담수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반환 기준이 있어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은 필요없고, 그 외 수입은 성질이 수익자부담금인 관계로 과목의 이름을 '학부모부담금 수입'으로 개정할 경우 명칭으로 인해 수익자부담금 정산 여부에 대한 논란 우려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일반 교육과정 운영 중의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항)-현장체험학습비(목) 중 원아 개인비용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것은 일반교육과정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반교육과정 운영 중 현장체험학습이 잦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모든 비용을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항)-현장체험학습비(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현재 상황임. 이는 정산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임.

3) 반영 가능성 및 대안

○ 수익자부담수입을 학부모부담수입으로 변경이 바람직해 보임. 다만,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비(입학금, 일반교육과정비)와 수익자부담수입으로 항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임.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 3] 학교회계 세입예산 과목에서도 (관)학부모부담수입, (항)등록금, (항)수익자부담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교육비와 수익자부담수입 항으로 재조정할 경우, 관-항-목 구조의 현행 세입예산 구조에서는 수익자부담수입 항 하위 목의 개수가 8개로 적절치 않아 보임. 이에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운영상에서 재정업무매뉴얼에 명시하거나, 교육을 통해 교육비 수입과 수익자부담수입에 대한 집행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교육과정 운영 상에 발생하는 일부 비용은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항)-현장체험학습비(목) 세부 내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재정업무매뉴얼 보완 필요함.

- 일반교육과정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 중 원아 개별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전세버스임차비용 등이 일반교육과정비에 포함 된 경우에는 일반교육과정비(목)으로 편성 가능하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비 중 원아 1인당 비용 산출이 명확한 입장료, 체험 등은 기존대로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항)-현장체험학습비(목)에 편성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급식비·간식비의 경우 유치원 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지원되는 필수적인 사항이나 기본적인 교육비에 포함하는 것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급간식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보조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간식비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등 과목의 성질상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아직 기본적인 교육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임. 관련하여 교육재정백서(한국교육개발원, 2017)에서도 학교급식비, 앨범비 등은 교육과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음.
- 다만, 향후 급식비·간식비 비용단가가 지역 물가나 급·간식 질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사립유치원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으나, 지역이나 사립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 하에 일정수준의 급·간식비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시 관련 항목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과후과정은 유치원의 운영방침이나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본적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대로 수익자부담금으로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다. 세입에 누락된 과목 신설 및 조정

1) (목)법인 법정부담금 이전수입 등 신설

○ 현재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관 과목에 설치·경영자가 학교회계로 이전한 금액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특성상 크게 법인설립 사립유치원과 사인설립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법인사립유치원이 전체 사립유치원 중에서 약 12%를 차지(학교법인은 2.6%)하고 있으며,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및 재해보상 부담금 등에 대한 전입금과 유치원으로 교부하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는 과목신설이 필요함.
- 참고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3] 학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 15조의 2 제1항 관련)에서는 (관)그 밖의 이전수입 - (항)사학법인 이전수입 - (목)법인법정부담금, (목)법인이전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음.

2) 예산과목 용어 수정 및 (항)기타 이전수입 신설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이외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등에 대한 '기타 공공이전수입'을 반영하기 위한 목 과목을 신설함.

○ 초·중등학교회계와 마찬가지로 유치원회계간이전수입 목 과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별도 과목을 신설하지는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처럼 급식과 관련하여 거점유치원에서 타 유치원 예산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치원회계간이전수입 항 과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 현재 규칙에 이미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사인이 운영하는 다른 유치원에 전출하는 부분이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나 오용의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 현재 설치 · 경영자이전수입 관, 항, 목과 명칭이 동일하여 이전수입 항, 목의 신설에 따라 기존의 설치·경영자이전수입 관 과목명을 이전수입으로 변경함.

〈표 Ⅳ-2-4〉 사립유치원 세입 중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개선(안)

세 입(현재)				세 입(개선 안)		
관	항	목		관	항	목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	이전수입	설치·경영자이전수입	법인 법정부담금
						그 밖의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기타 공공이전수입

라. 행정활동수입 관련

○ 현재 물품 등 자산 매각 수입,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및 보험금 수입 등 행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 만기환급형 해지 환급금 등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기타로 발생한 수입을 추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 차입금 관련

○ (관)차입금에 있는 학교회계 용어를 유치원회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Ⅳ-2-5〉 사립유치원 세입 중 차입금 개선(안)

관	항	목	세부 내역		세부 내역
4. 차입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바. 적립금이전수입

○ 현행 적립금은 건축적립금과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이 있고, 사전에 관할청이 사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당초 적립금이전수입을 건축적립금과 그밖의 적립금으로 구분함.

사. 기부·후원금 수입

○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유치원 세입 재원으로 기부·후원금 수입이 신설되었으나 관련 법 및 별도의 운용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장기적으로는 초·중등학교 학교발전기금과 유사한 형태로 사립유치원도 기부·후원금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타 학교급에 비해 소규모인 점이나 현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유치원회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 사립학교회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과목으로 별도로 두고 있음.

1) 초·중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관련 법 및 주요내용

○ 현재 초·중등 사립학교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성격의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회계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

○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 Ⅳ-2-6〉 초중등학교 학교발전기금 주요 법령 및 조항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초중등교육법 제33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조성방법 -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 외의 조직 ·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사용용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45조	·학교발전기금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해야 함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 ·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음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함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45조	·학교발전기금회계를 별도 설치·관리해야 함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 ·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음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함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46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 - 사업목적, 기금 조성방법, 수입 및 지출 계획,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50조	·결산보고 - 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수입 및 지출 계산서 - 예탁금 잔액증명서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52조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2) 사립학교 기부금 법 조항

○ 유아교육법에는 기부·후원금 등 학교발전기금 관련 조항은 없으나, 사립학교법에는 기부금 관련 조항이 있음.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면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로 되어 있음.

3) 사립유치원 기부·후원금 관리방안(안)

○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사립유치원의 기부·후원금 규모가 작아(2019년 분석대상 사립유치원의 세입예산 633백만원) 당분간 기존처럼 유치원회계에서 처리하되, 학교발전기금 등의 사례에 비추어 중장기적으로는 〈표 Ⅳ-2-7〉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 기부·후원금은 “사립유치원의 교육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후원한 금품(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최소한 기부·후원금의 경우 기부후원 일지, 기부후원자, 기부후원금 용도 등이 포함된 접수·관리대장과 출납부는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Ⅳ-2-7〉 사립유치원 기부·후원금 주요업무 및 내용(안)

구분	주요업무 내용
기부·후원금 계획수립	·계획 수립 주체 : 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 ·계획 시기 : 회계연도 개시 전을 원칙
기부·후원금 운용	·회계처리 : 지정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시스템) ·사용용도 - 유치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 유치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 유치원 원아의 복지 지원 * 업무추진비, 부채상환 및 재산증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 원칙적으로 제한 ·사용제한 - 유치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 경비 - 교직원 등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물품(체육복) 구입비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 추진비 - 차입금상환이나 재산증식을 위한 자산취득비 - 기타 기부·후원금의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
기부·후원금 관리	·기부·후원금 기탁서 ·기부·후원금 접수·관리대장 * 기부후원 일지, 기부후원자, 기부후원금 용도 포함 ·기부·후원금 출납부 등
기부·후원금 회계 결산	·결산시기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산보고 : 관할청(매년 5월 말까지) ·결산공개 : 전체 학부모(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결산보고자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위원회가 없는 경우 원장)
업무 위탁	·유치원회계 전출 절차 - 전출할 사업계획 수립 →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 유치원회계로 전출 → 유치원회계로 편입(유치원회계 예산에 편성) → 원장 집행
관할청의 시정명령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지연수납수입

○ 지연수납수입은 “해당 회계연도 전에 이전 또는 수납되어야 하나 이전·납부되지 않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납부된 수입”으로 ‘과년도수입’ 또는 ‘지난년도수입’이라고도 한, 사립학교 회계와의 일관성을 위해 지연수납수입을 유지함.

* 사립학교회계 세입·세출 상에는 ‘지연수납행정활동수입’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에는 지연수납수입이 아닌, ‘지난년도수입’이라는 표현으로 기술되어 사용되고 있음.

자. ‘교육 부대 및 그 밖의 수입’ 신설·조정

○ 잡수입, 기부·후원금 수입, 지연수납수입, 행정활동 수입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발생비율이나 금액규모가 작아 예산과목 명칭과 배열을 한데 묶어 일부 조정이 필요함.

- 2019년 세입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분석대상 사립유치원 전체 예산의 7,765백만원으로 전체 0.24%에 불과함.

〈표 Ⅳ-2-8〉 사립유치원 세입 ‘교육 부대 및 그밖의 수입’ 신설·조정(안)

세 입(현재)				세 입(개선 안)		
관	항	목		관	항	목
잡수입금	잡수입금	이자수입	→	교육 부대 수입 및 그 밖의 수입	교육 부대 수입	지연수납수입
		행정활동수입				기부·후원금수입
기부·후원금수입	기부·후원금수입	기부·후원금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지연수납수입	지연수납수입	지연수납수입				행정활동수입

3.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유치원 세출 예산과목 관련 논의

가. 임차료 및 시설사용료

○ 보상차원에서의 사유재산 이용료 인정해달라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음.

○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을 가진 학교로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 사업소득세와 부가가

치세는 면제되고(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교지와 교사의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매년 감면되어 왔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참조).

○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상의 학교이므로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적합하고, 규칙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수익 등은 유치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에 따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유아교육법상 요구되는 유치원 설립기준의 충족을 위해 스스로 교지·교사를 제공한 것이 기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교지·교사의 사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음[12)]

나. 방과후과정비

1) 쟁점

○ 방과후과정비를 선택적교육활동비가 아닌 기본적인 교육활동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2) 주장

○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방과후과정은 거의 모두 사립유치원생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교육활동비 보다는 기본적인 교육활동비로 보아 현행 선택적교육활동비 관 과목에서 일반교육활동비 관 과목으로 이동을 요구하고 있음.

○ 이와 달리 방과후과정은 모든 원아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시간 이후 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과정으로 일반교육활동비 관 과목이 아닌 현행 선택적교육활동비 관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3) 반영 가능성 및 대안

○ 방과후 과정이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하며(유아교육법 제2조),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최소 8시간을 운영하되 2017년부터 보호자 동의하에 1시간 이내 방과후 이용시간 개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음(권미경 외, 2019:18).

12)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 등. 공보 제274호. 867 [기각]

- 유아교육법 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현재 유아당 7만원을 보조하고 있음.
- 이를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세입 (관)보조금 및 지원금 - (항,목)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외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과후과정비(교육·돌봄과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수익자부담수입 - (항)방과후과정비에서 처리하고 있음.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사립유치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모든 원생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운영 이후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세출 상에서 현행대로 선택적교육활동비 관 과목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추가적으로 방과후 과정비에 대한 세입과 세출 항목이 대응되어 쉽게 관련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9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상에는 유치원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수익자부담에 대한 1:1 집행 확인이 가능하도록 항과 목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였음. 2018년 3월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별표5,6]은 이와 달리 예산과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입·세출예산과목은 수익자부담에 대한 1:1집행 확인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우선 세출의 선택적교육활동비(관)의 방과후교육활동비 항 과목은 세입의 보조금 및 지원금(관)의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항 과목과 수익자부담수입(관)의 방과후과정비 항 과목의 합계액으로 구성되어야 함.
- 또한 세입의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목 과목에는 인건비와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출에는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 방과후교육·돌봄 인건비와 방과후교육·돌봄 운영비 목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사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이 별도 방과후과정 교사 등의 채용이 아닌 담임교사에게 추가수당 지급 등을 통해 교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음.

〈표 Ⅳ-3-1〉 사립유치원 세출 중 방과후과정비에 대한 개선(안)

세 출(현재)				세 출(개선 안)		
관	항	목		관	항	목
선택적 교육 활동비	방과후교육 활동비	방과후교육 · 돌봄비	→	선택적 교육 활동비	방과후교육 활동비	방과후교육 · 돌봄 인건비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 돌봄 운영비
	그밖의 교육활동비	그밖의 교육활동비				방과후특성화비
		통학차량이용비			그밖의 교육활동비	그밖의 교육활동비
		특별급식비 · 간식비				통학차량이용비
		졸업앨범비				특별급식비 · 간식비
		수익자부담재원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수익자부담재원교육활동비

다. 적립금

○ 적립금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건축적립금과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으로 구분할 수 있어, 건축적립금과 그밖의 적립금으로 구분함.

라. 상환금

○ 현재 상환금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되어 있으나, 상환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표 Ⅳ-3-2〉 사립유치원 세출 중 상환금 개선(안)

세 출(현재)				세 출(개선 안)		
관	항	목		관	항	목
상환금	상환금	단기차입상환금	→	상환금	상환금	단기차입상환금
		장기차입상환금				장기차입상환금
						이자상환

마. 잡지출

○ 잡지출은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다소 편의적, 임의적으로 지출될 수 있고,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되도록 다른 예산과목(예를 들어 (관)운영비-(항)관리비-(목)그 밖에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잡지출 항목은 삭제하자는 의견과, 법인 사립유

치원의 경우 소송비 등 지출을 잡지출 과목에서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어 유지하자는 입장도 있음.

○ 그 사례는 적으나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보상금이나, 각종 사례금, 소송비, 원 단위 절사금 등 세출의 다름 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성격의 지출이 이에 해당함

바. 지연지출금

○ 지연지출금은 이월 및 불용제도를 통해 과년도 미집행사업을 익년도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이에 반해 이전 회계연도에서 지출되었어야 하나, 당시 예산 부족, 계약서 미 도착, 세금계산서가 미 제출 등의 이유로 지출을 못해 이번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 지연지출금은 현재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며, 유사용어로 과년도지출이 있으나 사립학교 회계와의 통일성 차원에서 현행 용어를 유지하도록 함.

사. 운영비

○ 운영비를 '관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구분에 대한 요구도 있음.

- 관리비에는 연료비, 차량유지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비는 각종 수수료및제세공과금, 소모품비, 도시구입비, 보험료, 여비 등을 포함함.
- 운영비에는 보험료를 명시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상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예를 들어 재정보증보험, 통학차량보험료 등)가 과목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예산 편성시 어려움이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제세공과금은 세금 및 공과금,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으로 교직원 건강검진비는 교직원 복지비의 항목 신설 또는 기타 운영비 신설하여 편성. 제세공과금에는 보험료가 안 들어 가게 함. 교직원 건강검진비 항목은 삭제 의견도 있음.

○ 하지만 관리비와 운영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관-항-목 체계를 유지하는 입장도 있음. 현장의 혼란 방지와 운영상의 유연성 보장을 위해 운영비 관련 사항은 현행을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됨.

아. 시설·설비비

○ 현행 시설비(항)에 있는 신·증축비(목)와 유지비(목)을 통합하여 시설비(목)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대규모 수선 및 개·보수 등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와 시설부대비까지를 포함하도록 함.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 4] 학교회계 세출예산과목에는 시설비(항)-자산시설비(목)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표 Ⅳ-3-3〉 사립유치원 세출 중 시설비 개선(안)

세 출(현재)				세 출(개선 안)		
관	항	목		관	항	목
시설·설비비	시설비	신·증축비	→	시설·설비비	시설비	시설비
		유지비				
	설비·비품비	취득비	→		설비·비품비	취득비
		유지비				유지비

자. 반환금

○ (관,항)반환금에는 (목)보조금반환금과 (수익자반환금)만 있어 공통과정지원비 등 지원금 미사용에 대한 (목)지원금반환금 목 신설이 필요함.

- 사립유치원 재원아의 퇴원이나 출결일수 부족으로 인한 지원금 반납 등 지원금 과오납 등으로 인한 반환계정이 필요함.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에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반환 기준이 있어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은 필요 없고, 그 외 선택적교육활동비에 포함되는 방과후과정비나 급식비·간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이용비, 졸업앨범비 등의 수입은 성질이 수익자부담금인 관계로 이에 대한 유지가 필요해 보임.
- 수익자 반환금의 경우 세입 해당 계정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전년도 수익자부담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집행 잔액 발생으로 학부모반환을 명령할 경우 세입 해당 계정에서 반납 처리가 곤란하기에 수익자부담금 반환 세출 과목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표 Ⅳ-3-4〉 사립유치원 세출 중 반환금 개선(안)

세 출(현재)				세 출(개선 안)		
관	항	목		관	항	목
반환금	반환금	보조금반환금	→	반환금	반환금	보조금반환금
						수익자반환금
		수익자반환금				지원금반환금

4. 사립유치원 적립금 제도 관련 논의

가. 사립유치원 적립금 제도 개요

1) 적립금 제도

○ 사립유치원은 노후교실의 개축이나 증축을 위해 건축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경우 적립할 수 있음(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6).

○ 현재 사립유치원 적립금은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되고 있음. 관할청은 해당 법인이나 유치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 ·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

〈표 Ⅳ-4-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 · 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0. 2. 4.〉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해당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 ·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2. 24.〉

- 교육청들은 적립금에는 방수공사, 내외벽 도장공사, 노후교실 및 시설 개보수, 증·개축,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이 포함된 건축적립금과 노후 통학차량 교체·구입을 위한 통학차량 적립금의 형태가 대부분임.

※ 전남 고흥교육지원청의 경우 사립 초·중등학교 적립금 운영 대상을 법정부담금 이상의 법인 전입금이 있는 학교로 한정하는 교육청 지침에 의거 적립금을 허용하지 않음(교육부 내부자료, 2019a).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상에는 적립 재원, 산정 방법 및 운용 원칙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도교육감 및 관할청에게 위임하고 있음.

〈표 Ⅳ-4-2〉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가. 유치원이 [별표 6] 5-1-1. 적립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 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세입예산 항목으로 하되 적립금 규모 및 비율은 해당법인 및 유치원의 재정상태(원장·설립경영자 등 보수 수준 포함)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함

1. 공통과정지원금
2. 교육비
3. 설치·경영자이전수입(법정부담전입금 제외)
4. 잡수입금
5. 순세계잉여금

나. 건축적립금 적립은 유치원교육 직접 사용 교사의 해당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까지 적립할 수 있음. 다만, 임대유치원은 직접 소유가 아니므로 건축적립금 적립 불가

다. 토지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4]에 따름

라. 감가상각비까지 건축적립금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건물의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도과한 내용연수분에 대해서는 유아들에 대한 직접교육비 축소 우려 등으로 소급하여 적립할 수 없음

마. 동일 고정자산에 대한 장기차입상환금·적립금의 동시 운용은 불가하며 관할청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개·보수 또는 증·개축(신축 포함)한 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분은 적립할 수 없음

자료: 교육부(2017).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p. 106.

○ 향후 법·제도 고려할 사항으로는 법체계상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반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서는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사학기관이 적립금 적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사립학교법 제51조(준용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3조에 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립금 적립 및 사용 등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김우영, 마희영, 유지연, 2018).

〈표 Ⅳ-4-3〉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적립금 재원

○ 적립금 재원은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설치·경영자이전수입(법정부담금 제외), 잡수입금, 순세계잉여금 세입항목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청에 따라 다소 상이함(교육부 내부자료, 2019a).

- 교육청별로는 재원 기준을 당해 회계연도 예산(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전주), 제주), 이전 회계연도 결산(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익산), 전남, 경북, 경남)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별도기준 없음(전북 정읍교육지원청), 종합적인 조건을 판단하여 금액 결정(전남 순천, 광양, 구례, 영암, 함평, 영광)

  * 부산의 경우 적립대상 재원은 교육과정수업료(유아학비지원금)임.

나.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쟁점 논의

1) 감가상각을 고려한 적립금 설정

가) 사립유치원 적립금 인정 문제

○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인정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고,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개보수까지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적립금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누리과정비나 유치원 원비 등은 유아를 위한 직접 교육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에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있음(교육과학기술부, 2012).

- 적립금 인정 주장으로는 사립유치원은 건축물의 내용연수가 끝나도 국가가 시설 건축에 대한 투자 보장이 없고, 영리나 수익의 인식 여부를 떠나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영속성을 유지하려면 장래의 교사 건축을 위한 재원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타

당한 일정액이나 일정 비율의 감가상각을 인정하여 건축적립금을 인정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교육시설보수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적립금 인정은 필요해 보임. 다만, 적립금 규모 산정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나) 적립금과 감가상각비

○ 적립금은 시설의 증축, 대규모 개·보수, 차량 구입 등에 일시적으로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능재원 중 일부를 떼어 예금 등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정영기, 2018).

○ 사립유치원의 적립금은 현재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감가상각) 등에 의해 현재 사립유치원은 감가상각비를 건축적립금 등에 반영하고 있음.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서는 유치원의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세출항목으로 직접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예금 등으로 적립하여 차후 시설의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인정하고 있음(정영기, 2018).

○ 그러나 다른 비용항목과 동일한 세출항목인 신·증축비, 취득비로 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세출항목인 적립금으로 계상하도록 한다면, 이중으로 세출항목에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정영기, 2018).

○ 또한 사립유치원 적립금에 적용하고 있는 적립금 적립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의 감가상각 방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따르고 있으나, 특례규칙 대학 대상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부분 사인설립 유치원이 대다수인 사립유치원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음.

〈표 Ⅳ-4-4〉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감가상각)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4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⑤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다) 적립금액 설정을 위한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 적립금 적립시 감가상각을 고려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립금 인정이 불가피하고 현행 기준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유지할 때,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여기에서는 적립금을 건축적립금과 통학차량 적립금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계산방식을 제안함.

(1) 건축적립금

○ 적립금 적립시 감가상각비를 편의상 건축적립금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도과한 내용연수분에 대해서는 유아들에 대한 직접교육비 축소 우려 등으로 소급하여 적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를 우선 고려하여야 함.

- 취득가액은 자산을 구입할 때부터 처분까지 발생한 총 비용, 잔존가액은 고정자산을 처분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이 사용될 수 있는 예상 기간임.
- 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이중체감법 등이 있으며, 건축물의 경우 정액법을 사용함.
- 정액법은 각 기간마다 일정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정액법상각률(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1/n로 계산)로 나타냄.

○ 사립유치원 적립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표 Ⅳ-4-5〉 적립금액 산출식

감가상각비(연간) = (건물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총 적립금액 = 감가상각비(연간) × 잔존연한

주. 1) 내용연수(부록 3 참조)
2) 사립유치원의 경우 내용연수가 전부 도과한 경우라도 임의 처분이나 매매가 어려워 잔존가치를 0원으로 설정
3) 잔존연한 = 내용연수 - 이미 도과한 내용연수
4) 취득가액: 원시취득 또는 매매취득 가액

- 적립금액 설정을 위해 편의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조건 적립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감가상각에 대한 재검토 및 추정은 전진법을 사용하고 소급하지 않으며, 따라서 적립금은 소급하여 적립하지 않도록 함.

○ 오래되어 최초 취득가액 서류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 건물가액에 대한 서류를 증빙하도록 하며, 건물기준시가나 검인계약서 등을 활용함.

- 정부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년 부동산을 일정하게 평가해 고시하는 기준시가 활용

〈표 Ⅳ-4-6〉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2019년)

건물 기준시가	=	㎡당 금액1)	×	평가대상 건물 면적

주: 1) ㎡당 금액=건물 신축 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2018.12.31.).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9「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 양도자 및 양수자, 거래금액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법상의 기준양식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 등의 검인이 찍힌 문서인 검인계약서(1988년부터 시행)를 활용함.

(2) 통학차량 적립금

○ 통학차량적립금은 신규 통학차량 구입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노후 통학차량 교체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노후 통학차량 교체를 위한 적립금은 기본적으로 건축적립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교체의 경우 잔존가액이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도록 함.
- 신규 통학차량 구입을 위한 적립금은 차량가액(예: 견적서), 적립금액과 적립기간(최대 5년)이 포함된 적립계획에 따라 적립하도록 하고, 당초 적립계획에 있는 적립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도록 함.

2) 사용계획에 의한 건축적립금 규모 산출

○ 사립유치원 적립금은 노후교실의 개축이나 증축, 대규모 개·보수, 통학차량 구입 등에 일시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관할청의 승인 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당초 적립금을 도입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동시에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적립사유 발생에 따른 사안 해결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적정한 수준의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내용연수가 도과했거나 거의 도달한 노후화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현재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활용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감가상각비 적용 방식이 아닌, 건축적립금에 한해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실제 건축비(예를 들어 시공 견적)에 기초하여 적립금 규모를 설정하는 방안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2 제4항 후단)의 개선안을 제안함. 또한 통학차량 적립금을 신규로 기준에 포함함.

〈표 Ⅳ-4-7〉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2 제4항 후단) 개선(안)

현행	개선(안)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4항 후단*)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4항 후단*)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안)] 가. 유치원이 [별표 6] 5-1-1. 적립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 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세입예산 항목으로 하되 적립금 규모 및 비율은 해당 법인 및 유치원의 재정상태(원장·설립경영자 등 보수 수준 포함)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함 1. 공통과정지원금 2. 교육비 3. 설치·경영자이전수입(법정부담전입금 제외) 4. 잡수입금 5. 순세계잉여금 나. 건축적립금 적립은 유치원교육 직접 사용 교사의 해당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까지 적립할 수 있음. 다만, 임대유치원은 직접 소유가 아니므로 건축적립금 적립 불가 다. 토지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4]에 따름 라. 감가상각비까지 건축적립금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건물의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도과한 내용연수분에 대해서는 유아들에 대한 직접교육비 축소 우려 등으로 소급하여 적립할 수 없음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안)] 가. 유치원이 [별표 6] 5-1-1. 적립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 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세입예산 항목으로 하되 적립금 규모 및 비율은 해당 법인 및 유치원의 재정상태(원장·설립경영자 등 보수 수준 포함)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함 1. 공통과정지원금 2. 교육비 3. 설치·경영자이전수입(법정부담전입금 제외) 4. 잡수입금 5. 순세계잉여금 나. 건축적립금 적립은 유치원교육 직접 사용 교사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위한 건축비(시공견적)에 따라 적립할 수 있음. 다만, 임대유치원은 직접 소유가 아니므로 건축적립금 적립 불가 다. 관할청이 통학차량적립금을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차량가액과 잔존가액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까지 적립할 수 있음, 다만 업무용 차량은 적립금 적립 불가 라.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4]에 따름

현행	개선(안)
마. 동일 고정자산에 대한 장기차입상환금·적립금의 동시 운용은 불가하며 관할청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개·보수 또는 증·개축(신축 포함)한 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분은 적립할 수 없음	마. 동일 고정자산에 대한 장기차입상환금·적립금의 동시 운용은 불가하며 관할청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개·보수 또는 증·개축(신축 포함)한 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분은 적립할 수 없음

3) 적립금 적립한도 적정수준 설정

○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적립금 한도액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으나, 한도액이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칫 유아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주지해야 함.

○ 이에 따라 유아의 학습권 침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유치원이 건물개보수 등을 위해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적정한도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가) 적립한도 설정 근거1: 현행 시·도교육청별 관련 지침

○ 적립금 규모 및 비율은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해당 법인 및 유치원의 재정상태(원장·설립경영자 등 보수 수준 포함)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적립금 한도액과 적립기간이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청별로 상이함.

○ 시·도교육청의 적립금 한도는 대부분 적립금 재원 세입과목 수입액의 5% 이내이며, 서울, 경기, 제주가 10% 이내, 광주가 8% 이내, 부산, 충남, 경남이 7% 이내로 정하고 있음(교육부 내부자료, 2019a).

- 어린이집의 경우, 적립금은 그 규모가 과다할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 총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9:58)

  * 총 보육료수입 = 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기본보육료

  ** 적립금 적립 시, 기타운영비+적립금+장기차입금상환+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목)의 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표 Ⅳ-4-8〉 시·도별 사립유치원 적립금 한도

적립금 한도	시·도
적립금 재원 세입예산과목 수입액의 10% 이내	서울, 경기, 제주
적립금 재원 세입예산과목 수입액의 8% 이내	광주

적립금 한도	시·도
적립금 재원 세입예산과목 수입액의 7% 이내	부산, 충남, 경남
적립금 재원 세입예산과목 수입액의 5% 이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적립금 재원 세입예산과목 수입액의 3% 이내	울산

주: 1) 서울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건축적립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범위 내 교육지원청 승인 가능
2) 전북, 전남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적립금을 허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음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9a). 시·도별 사립유치원 적립금 허용 여부 및 한도 현황.

○ 적립금 적립기간은 대부분 최대 4년 또는 5년 이었고, 서울과 경기의 경우 고정자산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4]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제34조제2항 관련)을 따르고 있음.

〈표 Ⅳ-4-9〉 시·도별 사립유치원 적립금 적립기간

적립기간	시·도
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	서울, 경기, 충남
최대 10년	전북(전주)
최대 5년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목포, 담양, 나주, 장성), 경북, 제주
최대 4년	부산, 대구, 전남(여수, 보성, 장흥, 해남, 무안, 완도, 진도), 경남
최대 3년	전남(화순)

주: 1) 인천은 적립기간 기준은 없고, 5년 이내를 권장함. 경기는 통학차량은 최대 5년임.
2) 전북(익산, 정읍), 전남(순천, 광양, 구례, 영암, 함평, 영광) 별도 기준이 없음
3) 시·도교육청에 따라 적립금 적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9a). 시·도별 사립유치원 적립금 허용 여부 및 한도 현황.

○ 적립금이 있는 사립유치원의 평균 적립기간은 4.9년, 적립금 평균 금액은 원당 약 4천만원이었고, 2018년 적립금 규모는 75억원 규모임. 전체 누적적립금 규모는 589억원 수준임(교육부 내부자료, 2019b).

나) 적립한도 설정 근거2: 2019년 사립유치원 세출예산의 적립금 편성 규모

○ 2019년 사립유치원 세출예산 자료(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분석대상인 사립유치원 3,750개원 중 적립금을 편성한 사립유치원은 437개원(11.7%)임.

- 적립금 편성 사립유치원(437개)의 적립금 가능재원 총액은 2,927억원 규모, 원아당 금액으로는 월 386천원 규모임.
- 적립금 편성규모는 139억원으로 적립금 가능재원 총액의 4.8% 수준, 유치원당 31,923천원, 원아당 금액으로는 월 21천원임.

〈표 Ⅳ-4-10〉 2019년 사립유치원 적립금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개원)

구분	적립금 편성 유치원수			적립금 편성 유치원 대상					
	전체 (A)	편성 (B)	비율 (B/A)	적립금재원		실제 편성			비율 (D/C)
				가능 규모 (C)	원아당(월)	편성규모 (D)	원당(월)	원아당(월)	
계	3,750	437	11.7	292,709,102	386	13,950,362	31,923	21	4.8

주. 유치원정보공시자료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표 Ⅳ-4-11〉 2019년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적립금(유치원정보공시 세출예산자료)

(단위: 천원, 개원, %)

구분	적립금 편성 유치원 대상			적립금 비율
	2019년 적립금 재원	편성규모	유치원수	
전체	292,709,102	13,950,362	437	4.8
서울	3,161,152	516,571	19	3.2
부산	1,628,959	166,311	3	10.2
대구	12,769,600	555,004	20	4.3
인천	14,606,966	496,378	17	3.4
광주	3,707,974	97,109	7	2.6
대전	23,649,977	797,096	35	3.4
울산	10,453,961	320,145	15	3.1
세종			-	-
경기	75,164,546	3,714,187	90	4.9
강원	13,334,628	952,380	24	7.1
충북	5,101,589	208,136	8	4.1
충남	14,458,198	854,181	28	5.9
전북	12,750,416	399,696	27	3.1
전남	6,666,884	353,195	12	5.3
경북	26,787,725	1,377,218	49	5.1
경남	14,355,687	577,008	21	4.0
제주	5,133,105	276,865	10	5.4

주. 유치원정보공시자료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다) 적립한도 설정 근거3: 시설·설비비 중 시설비 비중

○ 적립금 적립사유(교사 개보수 및 증개축 등)와 동일하게 전체 분석대상 사립유치원(3,750개원) 중 시설비 세출예산 만큼 매년 적립금으로 사전 승인받아 적립한다고 가정한다면,

- 적립사유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립유치원 3,066개원(81.8%), 매년 적립금 총 규모는 최대 78,983백만원* 규모임.

  * 3,066개원 적립금 재원규모(1조 8,356억원)의 4.3% 수준임.

〈표 Ⅳ-4-12〉 2019년 사립유치원 시설비 편성 현황(전체)

(단위: 천원, %, 개원)

구분	시설·설비비(관)		시설비(항)		시설비(항) 편성 유치원	
	전체	원당 평균	시설비	원당 평균	유치원수	비율
시도						
서울	18,363,944	40,718	14,183,921	31,450	451	79.3
부산	8,332,448	32,805	5,652,425	22,254	254	87.6
대구	5,581,458	27,631	2,877,314	14,244	202	86.7
인천	5,685,589	29,307	4,073,079	20,995	194	85.1
광주	3,915,821	29,892	2,129,094	16,253	131	83.4
대전	6,304,933	47,052	4,052,652	30,244	134	87.6
울산	2,828,644	30,746	1,679,601	18,257	92	85.2
세종	10,300	3,433	4,000	1,333	3	100.0
경기	31,809,315	41,745	23,722,126	31,131	762	78.4
강원	3,248,433	49,219	2,678,473	40,583	66	71.7
충북	2,031,002	35,632	1,334,011	23,404	57	74.0
충남	3,995,122	38,049	2,304,060	21,943	105	84.7
전북	3,079,136	27,010	1,881,993	16,509	114	79.2
전남	1,737,013	22,855	1,055,022	13,882	76	75.2
경북	6,576,057	36,534	4,411,896	24,511	180	80.7
경남	10,205,530	44,761	6,301,720	27,639	228	89.1
제주	873,830	51,402	642,335	37,784	17	85.0
설립유형						
사립(법인)	24,526,306	52,295	18,832,591	40,155	469	82.9
사립(사인)	90,052,268	34,675	60,151,131	23,162	2,597	81.6
현원규모						
50인 미만	2,348,131	8,386	1,464,515	5,230	280	59.2
50~100인 미만	19,094,966	19,465	12,695,518	12,941	981	81.3
100~200인 미만	62,607,327	43,327	42,837,081	29,645	1,445	86.9
200인 이상	30,528,150	84,800	21,986,609	61,074	360	88.0
개원연도						
10년 미만	33,513,010	41,683	20,942,332	26,048	804	83.8
10~20년 미만	28,952,988	39,338	20,525,818	27,888	736	82.3
20~30년 미만	28,037,960	32,640	19,912,534	23,181	859	80.4
30년 이상	24,074,616	36,094	17,603,039	26,391	667	80.7
계	**114,578,574**	**37,371**	**78,983,722**	**25,761**	**3,066**	**81.8**

라) 적립한도 설정 근거4: 내용연수가 40년 이상이 경우만 적립금 적립

○ 사립유치원 적립금 개선안에 따라 기존에 내용연수 40년이 도과한 유치원은 적립금 적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였고, 전체 분석대상 사립유치원(3,750개원) 중 249개원(6.6%)에 해당하였음.

○ 적립금 개선안에 따라 내용연수가 도과한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적립금 적립을 허용할 경우 249개원에 대한 적립금 적립이 가능해 지며, 내용연수가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교사 개보수

등을 통한 추가적인 안전 확보와 유아교육의 질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적립사유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립유치원 249개원의 매년 적립금 총 규모는 최대 5,763백만원* 규모임.

  * 249개원 적립금 재원규모(1,089억원)의 5.3% 수준임.

〈표 Ⅳ-4-13〉 2019년 사립유치원 시설비 편성 현황(내용연수 도과 유치원 대상)

(단위: 천원, %, 개원)

구분	시설·설비비(관)		시설비(항)		시설비(항) 편성 유치원	
	전체	원당 평균	시설비	원당 평균	유치원수	비율
시도						
서울	4,186,934	55,091	3,406,158	44,818	76	13.4
부산	555,824	29,254	363,927	19,154	19	6.6
대구	434,635	24,146	246,044	13,669	18	7.7
인천	82,140	11,734	49,660	7,094	7	3.1
광주	102,207	20,441	65,000	13,000	5	3.2
대전	80,638	16,128	63,100	12,620	5	3.3
울산	170,430	34,086	118,451	23,690	5	4.6
세종	1,800	1,800	500	500	1	33.3
경기	530,066	24,094	255,422	11,610	22	2.3
강원	241,733	16,116	184,043	12,270	15	16.3
충북	374,290	53,470	292,290	41,756	7	9.1
충남	302,295	37,787	98,383	12,298	8	6.5
전북	205,387	20,539	83,870	8,387	10	6.9
전남	175,026	15,911	76,286	6,935	11	10.9
경북	515,999	21,500	298,288	12,429	24	10.8
경남	396,876	30,529	114,315	8,793	13	5.1
제주	70,280	23,427	47,000	15,667	3	15.0
설립유형						
사립(법인)	6,531,144	39,344	4,456,763	26,848	166	29.3
사립(사인)	1,895,417	22,836	1,305,974	15,735	83	2.6
현원규모						
50인 미만	238,111	7,441	178,667	5,583	32	6.8
50~100인 미만	2,583,305	24,371	1,557,853	14,697	106	8.8
100~200인 미만	4,933,409	50,341	3,521,655	35,935	98	5.9
200인 이상	671,736	51,672	504,562	38,812	13	3.2
계	**8,426,561**	**33,842**	**5,762,737**	**23,144**	**249**	**6.6**

마) 적립한도 설정 근거5: 서울특별시교육청 적립한도액 검토결과(서울시교육청 내부자료, 2019)

○ 서울시청 어린이집의 적립금 기준은 보육료 수입의 10% 이하로 설정하고 있고, 3년 이내로 적립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2017년 OECD 사립유치원 교육재정조사 현황 결과, 교육비재원(교특회계전입금 제외)에서 시설비, 부대경비 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자본적 지출)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비율이 11.5%였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적립재원 세입과목 총액의 10% 이내로 인정하되, 20년 이상 노후건물 유치원에 대하애서는 10~15%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였음.

바) 적립한도 설정 근거6: 초·중등 사립학교 자산취득비 비율

○ 최근 3년간 초·중등 사립학교 교비회계분석 결과 자산취득비의 비율이 세입결산 총액 대비 5.7%~ 7.7%, 지방이전수입이나 수익자부담수입 등을 제외한 세입결산액 대비로는 7.2%~ 9.5%로 나타났으며, 매년 자산취득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자산취득비는 학교시설에 대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시설비와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육용기자재, 정보화기기 취득 등의 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및 수영장 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등을 말함.
- 여기에서 시설비, 비품구입비, 적립금 규모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으나, 적립금 규모만 본다면 상당부문 축소될 것으로 사료됨.

〈표 Ⅳ-4-14〉 사립학교(초·중·고) 자산취득비 결산 현황

구분	2017	2016	2015
세입결산 총액(A)	10,995,593	10,637,387	10,343,977
세입결산액(B) = 중앙정부이전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등록금 + 행정활동수입 + 전년도이월금	8,974,108	8,508,852	8,213,893
자산취득비(C)	852,114	691,940	588,689
비율(C/A)	7.7	6.5	5.7
비율(B/A)	9.5	8.1	7.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사립학교 교비회계분석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함.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사립학교 교비회계분석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함.

사) 적립한도 설정 근거7: 어린이집의 적립금 현황

○ 유치원과 유사하게 3-5세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적립금과 재산조성비가 총 보육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약 4% 수준임.

- 설립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이 설립한 어린이집의 경우 적립금과 재산조성비의 비율이 총 보육료 중 10.1%, 12.2%였으며, 민간어린이집은 3.7%였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세출에서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기타운영비로 지출 비율이 높음. 약 절반에 이르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이 20인 미만 규모로, 이를 제외하면 적립금 비율은 다소 상승함.

〈표 Ⅳ-4-15〉 어린이집 유형별 적립금 및 재산조성비 현황(2017년)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총 보육료 수입(A)	세출 전체				어린이집수	비율 (B/A)
		적립금	재산조성비	소계(B)			
전체 평균	171,242	982	6,057	7,039	279,012	29,141	4.1
국공립	209,357	340	13,721	14,061	499,801	2,326	6.7
사회복지법인	223,105	5,940	21,374	27,314	564,523	1,121	**12.2**
법인단체 등	190,704	3,346	15,857	19,203	444,072	601	**10.1**
민간	241,222	1,350	7,587	8,937	361,508	10,205	**3.7**
가정	108,384	341	1,911	2,252	139,337	14,251	2.1
협동	121,655	100	1,511	1,611	204,211	547	1.3
직장	221,764	925	11,541	12,466	685,876	90	5.6

주: 1) 총 보육료수입 = 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기본보육료
자료: 보육통계시스템

- 규모별로는 적립금 전체평균은 3.7%를 차지하였으며, 소규모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대체로 5%~6% 수준의 적립금 및 재산조성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4-16〉 어린이집 규모별 적립금 및 재산조성비 현황(2017년)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총 보육료 수입(A)	세출 전체				어린이집수	비율 (B/A)
		적립금	재산조성비	소계(B)			
전체 평균	167,967	900	5,310	6210	259,768	14,042	3.7
16-20인	119,127	400	2,153	2553	154,368	10,623	2.1
46-50인	202,480	1,085	7,229	8314	344,244	1,113	4.1
73-81인	260,363	1,755	13,806	15561	497,998	755	6.0
93-101인	322,863	2,733	17,198	19931	605,490	821	6.2
120-128인	410,677	3,272	18,615	21887	749,593	219	5.3
138-146인	461,338	5,567	23,525	29092	853,893	153	6.3
165인 이상	685,987	5,710	31,940	37650	1,275,864	358	5.5

주: 1) 총 보육료수입 = 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기본보육료
2) 재산조성비 = 시설비 +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노후 업무용차량 교체 등 차량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그 외 자산 취득비
자료: 보육통계시스템

아) 적립한도 설정 근거8: 기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1항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에 대해 최소 100분의 6에서 최대 100분의 14까지 정하고 있고, 용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까지 상한을 설정하고 있음.

〈표 Ⅳ-4-1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일반관리비 항목	비율
공사	100분의 6
음 · 식료품의 제조 · 구매	100분의 14
섬유 · 의복 · 가죽제품의 제조 · 구매	100분의 8
나무 · 나무제품의 제조 · 구매	100분의 9
종이 · 종이제품 · 인쇄출판물의 제조 · 구매	100분의 14
화학 · 석유 · 석탄 · 고무 ·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 구매	100분의 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 · 구매	100분의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 · 구매	100분의 6
조립금속제품 · 기계 · 장비의 제조 · 구매	100분의 7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기타 물품의 제조 · 구매	100분의 11
폐기물 처리 · 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시설물 관리 · 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장비 유지 · 보수 용역	100분의 10
기타 용역	100분의 6

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김은설 외(2014)는 적립금은 전년도 세입결산의 수업료 총액의 7%를 이내에서 적립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수업료는 세입결산서 항목 중 수업료와 누리과정지원금의 합을 의미하였음.

- 적립한도액 비율은 유치원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시설비와 차량구입비를 연간 시설개·보수비로 보고 개·보수 기간 및 횟수를 가정하여 금액을 산출한 후, 이 비용이 연간 수업료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 것임.

자) 적립금 한도액 설정 종합

○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적립금 편성은 결국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고, 결국에는 유아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사립유치원 원장·설립경영자들이 급여와 각

종 수당을 통해 일정수준의 투자에 대한 회수를 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한도액을 일정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1안으로는 적립금 적정한도를 5% 이내, 적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적립기간을 관할청 승인 후 연장할 수 있음.
- 2안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시·도교육청의 기준을 일부 반영하여 5~10% 이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적립기간은 1안과 동일하게 함.

○ 사립유치원의 규모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적립금 비율 및 적립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일률적으로 설정할 경우 필요한 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유아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표 Ⅳ-4-18〉 적립금 적립한도 관련 검토 결과

구분	적립금 적립한도 관련 검토 결과
시·도교육청 지침	적립금재원 세입액의 3% ~ 10%
2019년 적립금 예산편성	적립금재원 세입액의 4.8%
시설·설비비 중 시설비 비율	(전체)적립금재원 세입액의 4.3% (내용연수 도과 유치원)적립금재원 세입액의 5.3%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청, 사립유치원 시설비 비율 등을 고려하여 10%
초·중등 사립학교 자산취득비 비율	세입결산액(지방이전수입/수익자부담수입 등 제외) 대비 7.2%~9.5% ※ 자산취득비: 시설비, 비품구입비, 적립금 포함
어린이집 적립금 현황	총 보육료수입의 약 4% 수준
일반관리비	예정가격의 5%~10%

○ 사립유치원 적립금 한도액 설정시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정원충족률과 원장·설립경영자 인건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활동 제공과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 통학차량 구입·교체 등은 필요한 사항으로 적립금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 첫째, 정원충족률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적립한도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정원충족률이 결국 세입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유아의 학습권까지 귀결된다는 것을 고려한 것임.

- 2019년 정원충족률 평균이 69.0%(2019년 유치원정보공시 자료, 인가정원 대비 현원)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인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적립한도 비율을 100%, 이후, 정원충족률이 5% 하락할 따마다 적립한도액 비율을 일정비율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표 Ⅳ-4-19〉 사립유치원 정원충족률 대비 적립금 한도 허용(안)

정원충족률 / 적립금 한도안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미만
적립금 한도 조정	최대 한도액 (A)	A × 80%	A × 60%	A × 40%	A × 20%

주: 시·도교육청별로 정원충족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둘째, 유아교육의 질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장·설립경영자의 인건비 비율이 적립금 재원 대비 20% 이상인 경우에는 적립금을 허용하지 않을 필요도 있음.

- 적립금 규모는 원장·설립경영자[13] 등 보수 수준 등을 포함한 유치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으로, ○○○○○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 중 17개 사립유치원의 2019회계연도 예산서 상의 원장·설립경영자의 보수수준을 살펴보았음.
- 원장·설립경영자의 2019년 연간보수액 평균은 140,483천원이었으며, 이 중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83.0%, 수당 14.2%, 복리후생비 0.4%, 기타 2.4%이었음.
- 적립금재원 대비 원장·설립경영자의 총 급여 비율은 평균 17.3%이고, 최저 8.7%에서 최고 40.1%로 나타남. 유아교육의 질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장·설립경영자의 인건비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적립금을 허용하지 않을 필요도 있음.

〈표 Ⅳ-4-20〉 2019년도 사립유치원 원장·설립경영자 인건비 예산(○○교육청 일부)

(단위: 천원, %)

구분	합계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기타	적립금재원 대비 원장·설립경영자 총급여 비율
전체 평균(금액)	**140,483**	**116,627**	**20,016**	**486**	**3,354**	**17.3**
(비율)	**100.0**	**83.0**	**14.2**	**0.4**	**2.4**	**-**
A유치원	62,185	54,613	5,820	1,752	0	9.2
B유치원	68,544	62,544	6,000	0	0	10.6
C유치원	176,702	119,942	56,760	0	0	17.3
원장	44,702	35,942	8,760	0	0	
대표	132,000	84,000	48,000	0	0	
D유치원	229,580	222,000	6,600	980	0	20.2
E유치원	123,154	66,274	32,280	600	24,000	15.1
F유치원	187,800	165,000	22,800	0	0	23.0
G유치원	84,262	84,262	0	0	0	12.2
H유치원	163,490	91,490	72,000	0	0	16.2
I유치원	149,600	125,600	24,000	0	0	18.4
J유치원	153,000	136,560	10,560	0	5,880	18.8

13) 설립경영자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설립경영자 보수는 유치원 교직원으로 등록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구분	합계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기타	적립금재원 대비 원장·설립경영자 총급여 비율
K유치원	108,246	87,600	2,400	600	17,646	16.6
L유치원	144,000	128,400	15,600	0	0	8.7
M유치원	82,200	81,900	0	300	0	15.2
N유치원	124,565	120,965	3,600	0	0	19.3
원장	28,165	24,565	3,600	0	0	
행정	96,400	96,400	0	0	0	
O유치원	91,720	76,400	14,400	920	0	12.7
P유치원	323,499	227,580	79,479	3,600	12,840	40.1
원장	65,139	48,780	14,679	1,200	480	
행정	120,360	84,600	34,200	1,200	360	
시설관리	138,000	94,200	30,600	1,200	12,000	
Q유치원	221,700	219,300	2,400	0	0	24.1
원장	125,400	123,000	2,400	0	0	
시설관리	96,300	96,300	0	0	0	
R유치원	34,454	28,862	5,592	0	0	13.7

주: 1) 기관 법정부담금은 제외하였음
2) 사학연금 교원부담금, 원장 기본급보주수당, 소득세 별도 편성, 시간외수당 과다 편성, 법정부담금 과다 편성, 내역이 없는 기타수당 과다 등의 예산편성 오류 의심사례가 있음

자료: ○○○○○교육청 내부자료.

4) 적립금 운용·관리

가) 적립금 이자

○ 적립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사립유치원의 총 적립금액 범위에 포함하며 적립기간 내에서 이를 감안하여 조정하도록 유도함.

나) 적립금 불인정 또는 적립 중단 기준 설정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관할청은 해당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할청 차원에서의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적립금 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립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서울특별시교육청 내부자료, 2018).

- 적립기간 중 폐원이 예상되는 유치원
- 적립금 운영시 교육운영비 집행재원 감소로 교육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유치원(연도별 전체 세출예산 대비 교육운영비 감소추세 등 고려)

- 적립금에 대응하여 교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설립·경영자나 원장, 행정실장 등에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보수 지급 규모에 따라 적립금을 불인정할 수 있음.
- 동일 고정자산에 대한 장기차입금과 적립금의 합이 적립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의 경우 적립가능 금액은 적립재원 세입과목의 10%임.
- 교육(지원)청 또는 지자체 등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개·보수(증·개축)한 시설이거나, 임대유치원인 경우
-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회계운영 등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재정여건, 적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유치원

다) 기존 적립금의 처리

○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지침이 시행되지 전에 이미 적립금을 운용하여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 사립유치원으로 하여금 관할청에 적립금 사용계획 등 관련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청은 적립목적 등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립금 인정여부를 통보함(서울특별시교육청 내부자료, 2018).
- 또는 해당 적립금을 관할청의 승인 하에 유치원회계 세입의 적립금이전수입으로 한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세출에서 적립금을 포함한 적절한 세출과목으로 편성하도록 함.

라) 폐원 시 적립금 처리

○ 건축적립금이 있는 상태에서 폐원할 경우 기 적립금액에 대한 처리문제가 발생함.

○ 사인 사립유치원 폐원시 출연의 개념이 없어 폐원 시 사인 설립·경영자에게 재산이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당초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건축적립금이나 통학차량적립금도 이를 전제로 일정부분 인정해 주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적립금이 있는 경우 사인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할 경우, 관할청은 적립금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원 승인 불허를 원칙으로 하여 적립금이 유용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마) 사립유치원 적립금 공개

○ 현재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적립 현황은 별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당해연도 세출 예결산에서만 적립금 현황이 파악이 되고, 사립유치원별 적립금 누적 현황은 시·도교육청과 원장 이외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임.

○ 적립금 현황에 대해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홈페이지, 유치원알리미 공시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음.

5. 사립유치원 차입금 제도 관련 논의

가. 사립유치원 차입금 제도 개요

1) 차입금 제도

○ 건전재정 운영 원칙과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음.

〈표 Ⅳ-5-1〉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4조 및 제8조 제1항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차입금)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 차입금은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됨.

〈표 Ⅳ-5-2〉 차입금 종류 및 차입처

구분	적립금 적립한도 관련 검토 결과
단기차입금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 차입하는 경우로서 회계연도 내 상환(예시 : 학부모지원교육과정비 지연 지원 시 일시 차입하는 경우 등)
장기차입금	시설 개·보수를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시설 개·보수이외 용도 장기차입금 운용 불가 - 학교법인은 차입허가 시, 사립학교경영자는 차입금 예산편성 보고 시 차입 규모,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립학교법 제31조제2항 및 제48조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자료: 충청남도교육청(2017). 사립유치원회계 차입금 및 적립금 지침.

2) 차입

○ 원리금 상환재원이 유치원회계이므로 제1금융권 차입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차입은 제1금융권이나 한국사학진흥재단보다 이자가 낮을 때 가능함.

나. 사립유치원 차입금 제도 논의

1) 쟁점1: 관할청 허가 없이 차입 가능하게 허용

○ 현행 차입금의 경우 관할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 결정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사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설립자 또는 원장이 유치원회계 이외에 유치원의 운영 상 필요할 경우 별도 개인계좌의 금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유치원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유치원 설립자 및 경영자가 지고 있는 만큼 차입금 마련에 대한 절차나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함.

○ 이에 대해 열악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차입금에 대한 상환재원이 결국에는 정부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등으로 상환된다는 점을 볼 때, 자칫 유아 학습권의 침해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1인당 월 22만원의 유아학비와 7만원의 방과후지원금이 지원되고 있고, 학부모로부터 받는 교육과정 수업료 등 원비에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3월 시점에 원아들의 수급상황에 따라 교직원의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규모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시에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은행 대출 등을 통한 차입금을 현재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나,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 차입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으며, 사립학교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3조에 의거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회계규칙으로 차입금 허용을 규정하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이에 차입은 유치원의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리고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립유치원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행처럼 차입금액, 사유, 방법과 상환방법, 계획에 대한 관할청의 사전 허가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임. 이를 통해 무분별한 차입이나 공금 유용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유치원의 공공성 및 건전한 회계 운영 책무성 등 감안 시, 그 상환재원이 유치원회계인 만큼 관할청이 차입 규모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해 보임.

- 다만, 사인사립유치원의 경우 관할청의 승인 없이 차입이 가능한 상황이나 유치원회계에 차입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이후 관할청의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되고 상황에 따라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쟁점2: 차입금 규제비율 설정 및 기간 조정

○ 차입금에 대한 한도 규제비율이 시·도교육청마다 달라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단기차입금에 대한 상환시기를 조정하자는 주장이 있음.

○ 현재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적립금 재원인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설치·경영자이전수입(법정부담전입금 제외), 잡수입금,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교육청별 차입금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립금+장기차입상환금+차량할부금의 합이 적립금 재원 세입 총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장기차입금은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적립금과 같은 목적이므로 적립금과 함께 관리되어야 함. 따라서 차입금 한도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과도한 차입 등으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수준 규제는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적립금 한도액 설정안과 동일하게 5% 또는 5%~10% 한도내에서 적립금+장기차입상환금+차량할부금 규모가 결정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단기차입금은 학부모지원교육과정비(공통과정지원금)가 늦게 지원되어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비용이 부족한 경우에 일시차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원금이 당해연도에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내에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소결

가. 세입 관련

○ 보조금과 지원금의 분리 등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통과정지원금과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은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을 한 보호자의 인증을 거쳐 매월 유치원으로 입금되는 유아학비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공공재원의 대부분이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현행 사학기관 재무·규칙 별표5에는 교사(校舍) 등 시설·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으로 자본보조금을 두고 있는데, 사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자본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는 시설·설비보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 수익자부담수입(관) 용어를 학부모부담수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 항-목 체계는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함.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교육비(입학금, 일반교육과정비)와 수익자부담수입에 대한 집행을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

○ 급식비·간식비를 기본적인 교육비에 포함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익자부담경비로서 별도로 편성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임. 다만, 향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시 관련 항목을 별도로 산출하는 등 지역이나 사립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 하에 일정수준의 급·간식비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기존의 설치·경영자이전수입 관을 이전수입으로 변경하고, 유치원 설립유형과 이전수입 기관 등을 고려하여 목 과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및 재해보상 부담금 등에 대한 전입금과 유치원으로 교부하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설치·경영자이전수입을 법인법정부담금과 그밖의 이전수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자방자치단체, 교육청 이외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등에 대한 (항)기타공공이전수입 대한 과목 신설이 필요함.

○ 적립금은 건축적립금과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이 있고, 사전에 관할청이 사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당초 적립금이전수입을 건축적립금과 그밖의 적립금으로 구분함.

○ 기부·후원금은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 별도관리가 필요하나, 소규모와 현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유치원회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최소한 기부·후원금의 경우 기부후원 일지, 기부후원자, 기부후원금 용도 등이 포함된 접수·관리대장과 출납부는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잡수입, 기부·후원금 수입, 지연수납수입, 행정활동 수입은 현재 발생비율이나 금액규모가 작아 예산과목 명칭과 배열을 조정하여 '교육 부대 및 그 밖의 수입' 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잡수입, 기부·후원금 수입, 지연수납수입은 현 유치원에서 필요한 과목이나 그 규모나 빈도가 낮아 교육부대 및 그 밖의 수입 관을 신설하여 교육부대 수입, 이자 및 잡수입 항을 신설함.

나. 세출 관련

○ 운영비 관과 관련하여 관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항을 구분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관리비와 운영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관항목 체계를 유지하는 입장도 있음. 현장의 혼란과 일부 유연성의 보장을 위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적립금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현행 적립금을 건축적립금과 그밖의 적립금으로 구분함.

○ 상환금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되어 있으나, 상환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 잡지출은 법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소송비나 보상금, 각종 사례금, 원단위 절사금 등 다른 세출예산과목에 편성할 수 없는 성격의 지출이 있어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신·증축비와 대규모 수선 및 개·보수 등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 시설부대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기존의 시설비-신·증축비와 유지비를 시설비로 용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반환금에 사립유치원 재원아의 퇴원이나 출결일수 부족으로 인한 지원금 반납 등 지원금 과오납 등으로 인한 반환계정을 신설함.

다. 적립금 및 차입금

○ 적립금 적립시 감가상각비를 편의상 건축적립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도과한 내용연수분에 대해서는 유아들에 대한 직접교육비 축소 우려 등으로 소급하여 적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를 우선 고려하고, 최초 취득가액 서류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 건물가액에 대한 서류를 증빙하도록 하며, 건물기준시가나 검인계약서 등을 활용함.

○ 감가상각에 의해 건축적립금을 적립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적립한 적립금이 개보수 비용에 못미치거나, 내용연수가 도과한 사립유치원은 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어 실제 활용가능성이 낮아짐. 이에 기존 감가상각비 적용 방식이 아닌, 건축적립금에 한해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실제 건축비(예를 들어 시공 견적)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통학차량적립금은 신규 통학차량 구입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노후 통학차량 교체로 구분하고, 노후 통학차량 교체를 위한 적립금은 기본적으로 건축적립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교체의 경우 잔존가액이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도록 함.

○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적립금 편성은 유아교육의 질 저하와 유아의 학습권에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고,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한도액을 일정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립금 적정한도를 적립금 적정한도 5% 이내와 5~10% 이내 등 2개안으로 제안하고, 적립기간은 5년 이내에서 추가로 관할청 승인하에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사립유치원 적립금 한도액 설정시 추가로 정원충족률과 원장·설립경영자 인건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인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적립한도 비율을 100%, 이후, 정원충족률이 5% 하락할 때마다 적립한도액 비율을 일정비율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 유아교육의 질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장·설립경영자의 인건비 비율이 적립금 재원 대비 20% 이상인 경우에는 적립금을 허용하지 않을 필요도 있음.

○ 적립금이 있는 경우 사인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할 경우, 관할청은 적립금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원 승인 불허를 원칙으로 하여 적립금이 유용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적립금 현황에 대해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홈페이지, 유치원알리미 공시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차입금은 그 용도가 적립금과 유사하기에 적립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차입은 유치원의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리고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립유치원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행처럼 차입금액, 사유, 방법과 상환방법, 계획에 대한 관할청의 사전 허가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임. 이를 통해 무분별한 차입이나 공금 유용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함.

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방안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선안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개선을 위해,

- 우선 세입과 세출항목 중에서 대응되는 항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조정함.
- 법인 및 사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세입·세출예산과목의 보완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
- 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법적지위와 공공성을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쉽고 명료한 세입·세출항목으로 개선함.

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5, 6] 개선안

가. 개선안 요약

〈표 Ⅴ-2-1〉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현행			개선(안)		
관	항	목	관	항	목
1. 보조금 및 지원금			1. 보조금 및 지원금 수입		
	1. 공통과정지원금			1. 공통과정 지원금 수입	
		1. 공통과정지원금			1. 공통과정 지원금
	2.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2.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수입	
		1.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1.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수입	
		1. 국가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4. 자본 보조금			4. 시설 설비 보조금 수입	
		1. 국가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현행			개선(안)		
관	항	목	관	항	목
	5. 일반운영 보조금			5. 일반운영 보조금 수입	
		1. 국가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2. 수익자부담수입			2. 학부모부담금 수입		
	1. 교육비			1. 교육비 수입	
		1. 입학금			1. 입학금
		2. 일반 교육과정비			2. 일반 교육과정 수업료
	2. 방과후과정비			2. 방과후과정비 수입	
		1. 방과후교육·돌봄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2. 방과후특성화비			2. 방과후특성화비
	3. 급식비·간식비			3. 급식비·간식비 수입	
		1. 일반급식비·간식비			1. 일반급식비·간식비
		2. 특별급식비·간식비			2. 특별급식비·간식비
	4.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4.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1. 현장체험학습비			1. 현장체험학습비
		2. 통학차량이용비			2. 통학차량이용비
		3. 졸업앨범비			3. 졸업앨범비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3. 설치·경영자이전수입			3. 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1. 법인법정부담금
					2. 그 밖의 이전수입
				2. 기타 이전수입	
					1. 기타 공공이전수입
4. 차입금			4. 차입금		
	1. 차입금			1. 차입금	
		1. 단기차입금			1. 단기차입금
		2. 장기차입금			2. 장기차입금
5. 적립금이전수입			5.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1. 건축적립금
					2. 그 밖의 적립금
6. 잡수입금			6. 교육 부대 및 그 밖의 수입		
	1. 잡수입금			1. 교육 부대 수입	
		1. 이자수입			1. 지연수납수입

현행			개선(안)		
관	항	목	관	항	목
		2. 행정활동수입			2. 기부·후원금수입
7. 기부·후원금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2. 잡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1. 이자수입
					2. 행정활동수입
8. 지연수납수입					
	1. 지연수납수입				
		1. 지연수납수입			
9. 전년도이월금			7. 전년도 이월금 수입		
	1. 전년도이월금			1. 전년도 이월금 수입	
		1. 이월사업비			1. 이월사업비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2. 정산대상재원잔액
		3. 순세계잉여금			3. 순세계잉여금

〈표 Ⅴ-2-2〉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현행			개선(안)		
관	항	목	관	항	목
1. 인건비			1. 인건비		
	1. 교원인건비			1. 교원인건비	
		1. 급여			1. 급여
		2. 수당			2. 수당
		3. 복리후생비			3. 복리후생비
		4. 법정부담금			4. 법정부담금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 직원인건비			2. 직원인건비	
		1. 급여			1. 급여
		2. 수당			2. 수당
		3. 복리후생비			3. 복리후생비
		4. 법정부담금			4. 법정부담금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 그 밖의 인건비			3. 그 밖의 인건비	
		1. 그 밖의 인건비			1. 그 밖의 인건비
2. 운영비			2. 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수용비			1. 수용비

현행			개선(안)		
관	항	목	관	항	목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3. 연료비			3. 연료비
		4. 여비			4. 여비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2. 업무추진비			2. 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3. 일반교육활동비			3. 일반교육활동비		
	1. 일반교육활동비			1. 일반교육활동비	
		1. 교사연수·연구비			1. 교사연수·연구비
		2. 교재·교구구입비			2. 교재·교구구입비
		3. 행사비			3. 행사비
		4. 장학금			4. 장학금
		5. 복리비			5. 복리비
		6. 일반급식비·간식비			6. 일반급식비·간식비
4. 선택적교육활동비			4. 선택적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인건비
		2. 방과후특성화비			2. 방과후교육·돌봄비 운영비
					3. 방과후특성화비
	2. 그 밖의 교육활동비			2. 그 밖의 선택적 교육활동비	
		1. 현장체험학습비			1. 현장체험학습비
		2. 통학차량이용비			2. 통학차량이용비
		3. 특별급식비·간식비			3. 특별급식비·간식비
		4. 졸업앨범비			4. 졸업앨범비
		5. 수익자부담재원교육활동비			5. 그 밖의 선택적 교육활동비
5. 적립금			5. 적립금		
	1. 적립금			1. 적립금	
		1. 적립금			1. 건축적립금
					2. 그 밖의 적립금
6. 상환금			6. 상환금		
	1. 상환금			1. 상환금	
		1. 단기차입상환금			1. 단기차입상환금
		2. 장기차입상환금			2. 장기차입상환금
7. 반환금					3. 이자상환금
	1. 반환금				
		1. 보조금반환금			

현행			개선(안)		
관	항	목	관	항	목
		2. 수익자반환금			
8. 시설·설비비			7. 시설·설비비		
	1. 시설비			1. 시설비	
		1. 신·증축비			1. 시설비
		2. 유지비			
	2. 설비·비품비			2. 설비·비품비	
		1. 취득비			1. 취득비
		2. 유지비			2. 유지비
9. 지연지출금			8.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0. 잡지출			9. 잡지출		
	1. 잡지출			1. 잡지출	
		1. 잡지출			1. 잡지출
11. 예비비			10. 예비비 및 반환금		
	1. 예비비			1. 예비비	
		1, 예비비			1. 예비비
				2. 반환금	
					1. 보조금반환금
					2. 수익자반환금
					3. 지원금반환금

나. 상세 개선안

〈표 Ⅴ-2-3〉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세부내역 포함

현행			개선(안)			세부내역
관	항	목	관	항	목	
1. 보조금 및 지원금			1. 보조금 및 지원금 수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
	1. 공통과정지원금			1. 공통과정 지원금 수입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지원금(학부모 등이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공통과정지원금			1. 공통과정 지원금	
	2.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2.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수입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 및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1.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1.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수입		교원 급여 등 인건비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1. 국가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4. 자본 보조금			4. 시설 설비 보조금 수입		교사(校舍) 등 시설·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
		1. 국가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5. 일반운영 보조금			5. 일반운영 보조금 수입		급식비·간식비 보조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으로 처리

현행			개선(안)			세부내역
관	항	목	관	항	목	
		1. 국가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2. 수익자부담수입			2. 학부모부담금 수입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
	1. 교육비			1. 교육비 수입		
		1. 입학금			1. 입학금	
		2. 일반 교육과정비			2. 일반 교육과정 수업료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받은 학부모부담금 ※ 학부모 등이 공통과정지원금을 받아 납입한 금액은 공통과정지원금으로 처리
	2. 방과후과정비			2. 방과후과정비 수입		
		1. 방과후교육·돌봄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방과후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비용은 방과후특성화비로 처리
		2. 방과후특성화비			2.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급식비·간식비			3. 급식비·간식비 수입		
		1. 일반급식비·간식비			1.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의 급식·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특별급식비·간식비			2. 특별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4.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1. 현장체험학습비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통학차량이용비			2. 통학차량이용비	통학차량이용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졸업앨범비			3.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입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수익자부담금

현행			개선(안)			세부내역
관	항	목	관	항	목	
3. 설치·경영자이전수입			3. 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설치·경영자가 유치원회계로 출연한 금액 ※ 설치·경영자가 대출을 받아 유치원회계로 이전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1. 법인법정부담금	
					2. 그 밖의 이전수입	
				2. 기타 공공이전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기업, 협회,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은 기부·후원금으로 처리
					1. 기타 공공이전수입	
4. 차입금			4. 차입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차입금			1. 차입금		
		1. 단기차입금			1. 단기차입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
		2. 장기차입금			2.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외의 차입금
5. 적립금이전수입			5. 적립금이전수입			적립금에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 노후교실의 증·개축, 야외운동장 전면보수 및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시설·설비사업을 위해 적립금에서 이전받는 금액
	1.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1. 건축적립금	건축적립금 해지 환급금
					2. 그 밖의 적립금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 해지 환급금
6. 잡수입금			6. 교육부대 및 그 밖의 수입			
	1. 잡수입금			1. 교육부대 수입		
		1. 이자수입			1. 지연수납수입	해당 회계연도 전에 이전 또는 수납되었어야 하나 이전·납부되지 않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납부된 수입

현행			개선(안)			세부내역
관	항	목	관	항	목	
		2. 행정활동수입			2. 기부·후원금수입	기부 또는 후원으로 발생한 수입
7. 기부·후원금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2. 잡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1. 이자수입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2. 행정활동수입	물품 등 자산 매각 수입,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및 보험금(만기 환급형 해지 환급금 등) 수입 등 행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8. 지연수납수입						
	1. 지연수납수입					
		1. 지연수납수입				
9. 전년도이월금			7. 전년도 이월금 수입			
	1. 전년도이월금			1. 전년도 이월금 수입		
		1. 이월사업비			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금액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2. 정산대상재원잔액	전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
		3. 순세계잉여금			3.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정산대상재원사용 잔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표 Ⅴ-2-4〉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개선(안): 세부내역 포함

현행			개선(안)			세부내역
관	항	목	관	항	목	
1. 인건비			1. 인건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1. 교원인건비			1. 교원인건비		정규직 교원인건비
		1. 급여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교직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후생비			3.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부담금			4.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 직원인건비			2. 직원인건비		정규직 직원인건비
		1. 급여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후생비			3.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부담금			4.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3. 그 밖의 인건비			3. 그 밖의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조·대체교사 보수 및 일용직 급여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인건비
		1. 그 밖의 인건비			1. 그 밖의 인건비	
2. 운영비			2. 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수용비			1. 수용비	소모품 구입비, 인쇄비, 교육용도서 외 일반도서 구입비, 차량 정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임차료, 대관료 및 비품대여료 등 유치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 통학차량 정비·유지비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전기·전화요금, 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안전공제회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직원 건강검진비 등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성격의 경비

현행			개선(안)			세부내역
관	항	목	관	항	목	
		3. 연료비			3. 연료비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료 및 차량 유류대 등 건물 난방 및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 통학차량 유류대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4. 여비			4. 여비	출장에 따른 소요 여비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유치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2. 업무추진비			2. 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유치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
3. 일반교육활동비			3. 일반교육활동비			
	1. 일반교육활동비			1. 일반교육활동비		유치원 일반 교육활동 소요 경비
		1. 교사연수·연구비			1. 교사연수·연구비	교직원 연수비 및 연구비
		2. 교재·교구구입비			2. 교재·교구구입비	교육 기자재, 교육용도서 등 구입 및 제작 소요 경비
		3. 행사비			3. 행사비	원아 교육과 직접 관련된 각종 행사 소요 경비
		4. 장학금			4. 장학금	원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5. 복리비			5. 복리비	원아건강검진비, 학생안전공제회비 등 원아 건강 및 안전 관련 소요 경비
		6. 일반급식비·간식비			6.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시간 내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을 위한 소요 경비(급식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
4. 선택적교육활동비			4. 선택적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u>인건비</u>	방과후교육 및 돌봄 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u>중 인건비</u>
		2. 방과후특성화비			<u>2. 방과후교육·돌봄비 운영비</u>	<u>방과후교육 및 돌봄 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중 운영비</u>
					<u>3.</u>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한 소요 경비
	2. 그 밖의 교육활동비			2. 그 밖의 선택적 교육활동비		
		1. 현장체험학습비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통학차량이용비			2. 통학차량이용비	통학차량 정비·유지비 및 유류대 등 통학차량 이용을 위한 소요 경비

현행			개선(안)			세부내역
관	항	목	관	항	목	
		3. 특별급식비·간식비			3. 특별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한 소요 경비
		4. 졸업앨범비			4.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입 소요 경비
		5. 수익자부담재원교육활동비			5. 그 밖의 선택적 교육활동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수익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활동 소요 경비
5. 적립금			5. 적립금			
	1. 적립금			1. 적립금		
		1. 적립금			1. 건축적립금	노후시설의 증·개축, 외부 운동장 및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시설 사업을 위한 적립금
					2. 그 밖의 적립금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로 처리
6. 상환금			6. 상환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보조·지원금 반환 금액
	1. 상환금			1. 상환금		
		1. 단기차입상환금			1. 단기차입상환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의 원금 상환액
		2. 장기차입상환금			2. 장기차입상환금	단기차입상환금 외의 차입금 원금 상환액
					3. 이자상환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7. 반환금						
	1. 반환금					
		1. 보조금반환금				
		2. 수익자반환금				
8. 시설·설비비			7. 시설·설비비			
	1. 시설비			1. 시설비		
		1. 신·증축비			1. 시설비	유치원 시설의 신·증축비, 시설 수선 및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2. 유지비				
	2. 설비·비품비			2. 설비·비품비		
		1. 취득비			1. 취득비	설비 설치비, 비품 구입비, 차량 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등 설비나 비품 취득 소요 경비

현행			개선(안)			세부내역
관	항	목	관	항	목	
		2. 유지비			2. 유지비	설비, 장비 및 비품의 정비·유지 비용 ※ 차량 정비·유지 비용은 차량 성격에 따라 수용비 또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9. 지연지출금			8. 지연지출금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지출되었어야 하나 지출되지 않았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된 사업비 등
	1.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0. 잡지출			9. 잡지출			원 단위 절사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성격의 지출
	1. 잡지출			1. 잡지출		
		1. 잡지출			1. 잡지출	
11. 예비비			10. 예비비 및 반환금			
	1. 예비비			1. 예비비		재해·재난 관련 비용 등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1. 예비비			1. 예비비	
				2. 반환금		
					1. 보조금반환금	보조금 미사용 등에 따른 반환금
					2. 수익자반환금	수익자부담금 미사용 및 목적외 사용에 따른 반환 명령 등에 따른 반환금
					3. 지원금반환금	지원금 미사용 등에 따른 반환금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 공청회 자료집.

교육부(2017).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교육부(2018).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교육부 내부자료(2019a). 시·도별 사립유치원 적립금 허용 여부 및 한도 현황.

교육부 내부자료(2019b). 시·도별 사립유치원 적립금 운영 현황.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육아정책연구소(2015).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강화 및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국세청 보도자료(2018.12.31.).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9「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고시.

김동훈(2018.12.28.).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넘어 공공성을 확보해야.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73호.

김병주·김성기·오범호(2010). 유치원재무회계규칙 도입방안 연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김병주·김성기·오범호(2011). 유치원재무회계규칙 제정의 쟁점과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0(1), 25-43.

김성섭(2015). 개인설립 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정 회계모형 개발. 강릉원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용남(2017).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재정연구, 26(1), pp.119-145.

김용남·하봉운·엄문영·이석열·김현철(2017). 사학법인 및 사립학교 재정 운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우영·마희영·유지연.(2018).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회계기준 간의 부조화 개선방안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15(6), 259-279.

김은설·박진아·이동하(2014). 통합 재무회계규칙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혜진(2015). 사립유치원 원장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보람.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승부(2014). 사립유치원 재정운영에 관한 관리자들의 인식유형.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정호·임은정(2018). 유치원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 홀리스틱 교육적 관점을 중심으로,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2(1), 105-130.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 부록.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 부록.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신하영·김수경(2016).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갈등 쟁점과 대안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3(1), 91-111.

오창걸·O, C(2012). 특집 - 대학 재정문제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과 대학선진화방안. 大學敎育, 175(-), 36-41.

우명숙·박경호·전홍주(2013). 사립유치원 재정운영 현황분석을 통한재무, 회계 규칙 제정 기준 탐색. 유아교육연구, 33(1), 5-30.

이종현.(2012). 학교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영기. (2018). 유아교육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연구: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연구, 16(3), 21-59.

충청남도교육청(2017). 사립유치원회계 차입금 및 적립금 지침.

헌법재판소(2019. 7.25.)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2017헌마1038, 1180(병합). 공보 제274호. 867.

[보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6. 9. 20.).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편의성 제고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 보도자료(2017. 2. 21.).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운영의 투명성 높인다.

교육부 보도자료(2017. 2. 27.).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업무 매뉴얼 마련 및 회계시스템 구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2018. 10. 25.).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교육부 보도자료(2019. 1. 16.).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

교육부 보도자료(2019. 3. 15.).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의무도입 99.6%.

통계청 보도자료(2019. 3. 27.).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법]

교육기본법(법률 제15950호, 공포일 2018.12.18./ 시행 2019.6.19.).

사립학교법(법률 제 15555호. 공포일 2018.4.17./ 시행 2018.10.18.).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 제 122호, 공포일 2017.2.24./ 시행 2017.9.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시행 2016.4.20.)

유아교육법(법률 제 14567호, 공포일 2017.2.8./ 시행 2018.2.9.).

유아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024호, 2019.8.6./ 시행 2019.8.6.)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보육통계시스템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9902)

통계청(kostat.go.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25EC%259D%25B8%25EA%25B5%25AC%25C2%25B7%25EA%25B0%2580%25EA%25B5%25AC%2520%253E%2520%25EC%259E%25A5%25EB%259E%2598%25EC%259D%25B8%25EA%25B5%25AC%25EC%25B6%2594%25EA%25B3%2584%2520%253E%2520%25EC%25A0%2584%25EA%25B5%25AD%282017%25EB%2585%2584%2520%25EA%25B8%25B0%25EC%25A4%2580%29%25EC%2584%25B1%2520%25EB%25B0%258F%2520%25EC%2597%25B0%25EB%25A0%25B9%25EB%25B3%2584%2520%25EC%25B6%2594%25EA%25B3%2584%25EC%259D%25B8%25EA%25B5%25AC%281%25EC%2584%25B8%25EB%25B3%2584%252C%25205%25EC%2584%25B8%25EB%25B3%2584%29%2520%252F%2520%25EC%25A0%2584%25EA%25B5%25AD(2019년 8월13일 인출)

부록

부록 1. 사립유치원 적립금 적립재원

〈부록 표 1〉 사립유치원 적립금 적립재원

관	항	목	적립금재원
보조금 및 지원금	**공통과정지원금**	**공통과정지원금**	○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인건비 보조금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교육청보조금	
	자본보조금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교육청보조금	
	일반운영 보조금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교육청보조금	
수익자부담수입	**교육비**	**입학금**	○
		일반 교육과정비	○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특성화비	
	급식비·간식비	일반급식비·간식비	
		특별급식비·간식비	
	그밖의 수익자 부담수입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이용비	
		졸업앨범비	
		그 밖의 교육활동수익자부담수입	
설치·경영자이전수입	**경영자이전수입**	**설치·경영자이전수입**	**○(법정부담금 제외)**
차입금	차입금	단기차입금차입	
		장기차입금차입	
적립금이전수입	적립금이전수입	적립금이전수입	
잡수입금	**잡수입금**	**이자수입**	○
		행정활동수입	○
기부·후원금수입	기부·후원수입	기부·후원금수입	
지연수납수입	지연수납수입	지연수납수입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이월사업비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

부록 2.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 제2항 관련)

〈부록 표 2〉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 유형고정자산		
구분	**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명**
건축물 1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건축물 2	2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그 밖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연구기자재	5년	교육, 연구 및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기계 비품	5년	연구 기자재를 제외한 기계장치, 각종 기구 및 각종 집기비품(실험연구용 시설 및 기계포함, 단 실습용 선박 및 항공기는 12년을 적용함)
차량운반구	5년	자동차 및 그 밖의 운반구
소프트웨어	5년	전산 프로그램 등
도서	5년	도서 단, 계약기간에 따른 해외저널, 학술데이터베이스의 전자적 구독 등은 사용기간으로 함
□ 무형고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년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년	댐 사용권

자료: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659#0000(2019년 8월22일 인출)

부록 3.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

〈부록 표 3〉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

지역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
서울	- 학급운영비(급당 월 15만원, 46.6억원) - 교재교구비(급당 월 5만원, 19.2억원) - 교사기본급보조(담임 월 13만원/기본급보조 월 52만원, 402.4억원) - 단기대체교사(6.7만/일, 2.8억원) - 신용카드수수료지원(결제액의 0.01%, 0.05억원)
부산	- 학급운영비(급당 월 25만원, 41.3억원) - 교사기본급보조(담임 월 13만원/기본급보조 월 52만원, 213.9억원) - 단기대체교사(6.7만/일, 1.5억원) - 신용카드수수료지원(결제액의 0.01%, 0.01억원)
대구	- 학급운영비(급당 월 1.8~13만원, 25억원) - 교사기본급보조(담임 월 13만원/기본급보조 월 52만원/방과후과정 전담교사 월 30만원, 151억원) - 단기대체교사(6.68만/일, 0.6억원) - 방과후과정반 운영비(연 1회/100만원, 10억원) - 신용카드수수료지원(결제액의 최대 2% 지원, 0.1억원)
인천	- 학급운영비(급당 월 25~70만원, 53.4억원) - 교사기본급보조(담임 월 13만원/기본급보조 월 52만원, 154.5억원) - 단기대체교사(6.7만/일, 1.6억원) - 신용카드수수료지원(결제액의 최대 0.46% 지원, 0.09억원)
광주	- 학급운영비(급당 월 5~30만원, 균등 25만원, 정책참여 15만원, 38.6억원) - 교사기본급보조(담임 월 13만원/기본급보조 월 52만원, 109.3억원) - 단기대체교사(6.7만/일, 0.7억원) - 방과후과정반 운영비(연 1회/130만원, 2.2억원) - 방과후과정 인건비(1인당 월 30만원, 6.2억원)
대전	- 학급운영비(급당 월 40만원, 45.1억원) - 방과후과정운영비(원당 연 600만원, 10.2억원) - 교원기본급보조(담임 13만원/기본급보조 52만원, 99.5억원) - 명절휴가비지원(연 2회/5만원, 1.5억원) - 단기대체교사(5만/일, 0.7억원) -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지원(2,300원/일, 80.8억원)
울산	- 학급운영비(월 5~30만원, 4.32억원, 입학시스템참여유치원 35개원 연 500만원 지원) - 교원기본급보조(담임 13만원/기본급보조 52만원, 60.5억원) - 방과후과정 교재교구 구입 보조금(연 1회/50만원, 0.54억원, 시청 보조금) - 방과후과정반운영비(급당 40만원, 5.52억원) - 돌봄운영비(1만원/시간, 3.76억원) - 단기대체교사인건비(6.2만원/일, 0.18억원) - 출산용품지원비(20만원/1인, 0.01억원) - 급식비지원(1,230원/일/1인, 200일 지원, 23.57억원, 지자체보조 3.73억원) (급식비 지원: 남구1,440원, 울주군2,050원)

지역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
세종	- 학급운영비(급당 월 40만원, 0.6억원) - 교사기본급보조(담임 13만원/기본급보조 62만원, 1.2억원) - 단기대체교사(6.7만/일, 0.04억원)
경기	- 급식비(2,650원/1식, 390억원, 지자체 390억원 보조, 최대 200일 지원) - 학급운영비(급당 월 40~50만원, 300억원) - 교원기본급보조(담임 월 13만원/기본급보조(장기근속수당포함) 52만원, 654.7억원) - 단기대체교사(6.7만/일, 3.5억원)
강원	- 학급운영비(급당 월 37만원, 20억원) - 교원기본급보조(담임 13만원/기본급보조 52만원, 50억원) - 방과후과정반 운영비(연 1회/200만원, 2.1억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10만원/월, 3.7억원) - 저녁돌봄 유치원 (1개원 당 2,500만원, 50억원)) - 신용카드수수료지원(결제액의 최대 0.01% 지원, 0.02억원) - 단기대체교사(6.68만/일, 0.64억원) - 급식비 지원(원아 1인당 2,670원/ 57.4억원) -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비(2.2억원) - 원장,원감,1급정교사 자격연수비(0.45억원) - 자발적 직무연수비(0.63억원)
충북	- 학급운영비(급당 월 40만원, 24.2억원) - 교원기본급보조(담임 13만원/기본급보조 52만원, 54.2억원) - 교원연구비(월 5만원, 4억원) - 단기대체교사(8만/일, 0.55억원) - 통학차량운영비(연 1회/500만원, 4.5억원) - 공기청정기 임차료(급당 5만원/월, 3억원) - 급식비 지원(원아 1인당 2,130~2,540원/ 42.8억원)
충남	- 학급운영비(급당 월 38-45만원, 44억원) - 교사기본급보조(담임 월 13만원/기본급보조 월 52만원/읍면동 인건비 보조 월 5~10만원/ 107.7억원) - 식품비(1,980원/1식, 68.4억원) - 교재교구비(연 1회 215~500만원, 4억원) - 단기대체교사(67천원/1일, 0.7236억원) - 읍면지역 교사 인건비 보조(100천원/월, 5.52억원) - 동지역 교사 인건비 보조(50천원/월, 4.62억원) - 사립유치원 교육비 추가지원(50.5천원/1월, 109.03억원)
전북	- 학급운영비(급당 월 40만원, 38.5억원) - 교사기본급보조(담임 월 62만원/ 비담임 월 49만원, 76억원) - 단기대체강사 지원(1일당 69천원, 1.3억원) - 방과후과정인건비지원(원당 월 80만원, 27.6억원) - 급식비 지원(원아 1인당 1,860원~2,540원/145개원/36.9억원) - 원비 동결지원(급당 지원 최소 130천원, 41.7억원) - 돌봄교실 운영지원(저녁돌봄 원당 32,000천원, 온종일돌봄 원당 43,000천원, 13.7억) - 자율선택과제 운영비 지원(2.5억)

지역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
	- 신용카드수수료지원(결제액의 최대 0.01% 지원, 0.1억원)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금 지원(원아 1인당, 실비 상한 100천원, 8.3억원) - 에듀파인운영지원금 (원당 500만원, 5.5억원) - 놀이중심 교육활동 환경조성 지원금 (원당 500만원지급, 7.2억원)
전남	- 학급운영비(급당 월 40만원, 29.5억원) - 교사기본급보조(담임 13만원/기본급보조 52만원, 58.1억원) - 방과후과정운영비(원당 500만원, 5.15억원) - 만5세 급식비지원(2019.9.~12. 2,822명 1인 2,200원 단가, 5.27억원) *20년 1월부터 만4세, 20년 9월부터 만3세로 확대 예정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4.8억원) - 만 3~4세 유아용보호장구 지원(사립신청 2004개, 2억원) - 단기대체교사 인건비(20년 본예산 1일 69,000원/0.83억원) - 유아학비 추가지원(20년 본예산 1인당 30,000원): 보류 - 사립유치원 교원 정액급식비(20년 본예산 1인당 70,000원): 보류
경북	- 학급운영비(급당 월 23~40만원, 58.1억원) - 교사기본급보조(담임 13만원/기본급보조 60만원, 165억원) - 단기대체교사(6.7만/일, 1억원) - 통학차량운영비(월 50~100만원, 26.8억) - 방과후과정운영비(원당 20만원, 월 6억) - 공기청정기 임대료(학급당 연 60만원, 연 7.2억) - 친환경 농산물 구입 지원(원아당 연 38,000원, 9.7억)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6억)
경남	- 교사기본급보조(담임 월 13만원/기본급보조 월 52만원, 194.6억원) - 학급운영비(급당 월 0~100만원, 70.4억원 - 방과후과정운영비(원당 연 680만원, 19억원) - 단기대체교사(6.7만/일, 0.9억원)
제주	- 학급운영비(급당 월 20~50만원, 4.3억원) - 교사기본급보조(담임 월 13만원/기본급보조 월 52만원, 13.6억원) - 단기대체교사(6만/일, 0.2억원) - 급식비지원(186일, 22.2억원) - 교육환경 및 놀이유치원 운영(1.2억원) -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비(0.75억원) - 공기청정기 임대료(0.14억원) - 저소득층유아학비(학부모 부담금 월 100천원, 1.28억원) - 장애유아무상교육비(학부모 부담금 월 100천원, 0.37억원) - 에듀파인 환경조성 컴퓨터 지원(원당 1대, 0.13억원)

자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내부자료

부록 4.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매뉴얼 보완(안)

변경전	변경후
제1장 사립유치원	
1. 사립유치원의 법적지위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 나. 사립유치원의 정의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3조(교사)·4조(교사용 대지) 등 다. 사립유치원 설치·경영자 ① 학교법인 : 사립학교(사립유치원 포함)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사립학교경영자 : 사립학교(사립유치원 포함)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	좌동
2. 관련 조문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	좌동

변경전	변경후
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3. 관계 법령 가. 유아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나. 사립학교법·시행령·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시행규칙 등	좌동
제2장 예산편성	**제2장 예산편성**
1.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업무흐름도	1.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업무흐름도
예산편성 사전 준비(11월말) 유치원장 및 교직원 ■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수익자부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규모 추계 → 교직원 인건비,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필수경비 산출 및 세입재원을 고려한 세출규모 사전 검토	예산편성 사전 준비(11월말) 유치원장 및 교직원 ■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수익자부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규모 추계 → 교직원 인건비,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필수경비 산출 및 세입재원을 고려한 세출규모 사전 검토
① 예산편성 지침 마련·시행(12월말)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 사립유치원 ■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집행기준 ■ 단가 및 서식 등 예산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① 예산편성 지침 마련·시행(12월말)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 사립유치원 ■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집행기준 ■ 단가 및 서식 등 예산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예산편성 요령 확정·통보(12월말)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유치원장 ■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유치원 예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	② 예산편성 요령 확정·통보(12월말)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유치원장 ■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유치원 예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
③ 예산편성·제출(회계연도 개시 1개 ■ 교직원 예산요구 → 자체 심의·조정 → 예산안 확정 →	③ 예산편성·제출(회계연도 개시 1개 ■ 교직원 예산요구 → 자체 심의·조정 → 예산안 확정 →

변경전	변경후
월 전) 유치원장 →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제출 ↓ ④ 심의의결 송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및 확정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유치원장 ■ 회계 관계 법령, 편성 지침 및 요령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한 후 유치원장에게 송부, 유치원장이 확정·집행 ↓ ⑤ 보고·공개(회계연도 개시 5일 전) 및 공시(4월)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홈페이지 1년간 공개 ■ 예산은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에 의거 4월 공시 ※ 추가경정예산도 위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편성하되 관할청 보고는 편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회계연도 중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 사용 가능 및 차기 추가경정예산 계상(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단서) ※ 관할청은 유치원장이 제출한 예산서를 검토하여 회계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사립학교법 제31조제2항 및 제48조)	월 전) 유치원장 →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제출 ↓ ④ 심의의결 송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및 확정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유치원장 ■ 회계 관계 법령, 편성 지침 및 요령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한 후 유치원장에게 송부, 유치원장이 확정·집행 ↓ ⑤ 보고·공개(회계연도 개시 5일 전) 및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원장) ■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홈페이지 1년간 공개 ■ 예산은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에 의거 4월 공시 ※ 추가경정예산도 위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편성하되 관할청 보고는 편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회계연도 중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 사용 가능 및 차기 추가경정예산 계상(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단서) ※ 관할청은 유치원장이 제출한 예산서를 검토하여 회계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사립학교법 제31조제2항 및 제48조)
2. 예산, 예산편성의 개념 및 의의 가. 예산의 개념 :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 나. 예산편성의 개념 : 1회계연도의 사업과 계획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 다. 예산편성의 의의 : 유치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세입 재원을 추계하고 개별 유치원의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차질 없는 실행·지원. 단, 회계 관계 법령, 각 시·도별 예산편성 지침 등 준수 필수 ※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좌동

변경전	변경후
3. 예산의 일반원칙 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해서는 안 됨(재무회계 규칙 제4조) 나.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함(예외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 재무회계 규칙 제6조) 다. 예산총계주의 : 수입과 지출은 누락됨이 없이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함(재무회계 규칙 제11조) 라.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함(재무회계 규칙 제20조) 마. 목적외 사용금지(한정성의 원칙) : 법인·교비회계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은 엄격히 금지됨(시행령 제13조제2항,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제1항) 바. 공개성의 원칙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 관할청 보고 및 학교홈페이지 공개(1년간)하고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에 의거 4월 공시(추경은 편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제14조제1·2·4항,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당해 연도 경비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당해 연도 책정경비의 다음연도 사용제한 일반원칙 아.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및 적립금은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 유치원교육에 직접 필요한 제 경비를 반영하여 경비 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한 후 잉여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함	좌동
4. 세부업무별 절차 가. 예산편성 사전 준비 : 세입규모 추계 및 필수경비·가용재원 파악 등 세출규모 사전 검토(11월말) ※ 세입규모 추계 :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수익자부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규모 추정 ※ 세출규모 추계 : 교직원인건비,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필수경비 산출을 통한 가용재원 규모 추정 나. 예산편성 지침 마련·시행 : 시·도교육청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단가, 각종 서식 등 예산 운용	4. 세부업무별 절차 가. 예산편성 사전 준비 : 세입규모 추계 및 필수경비·가용재원 파악 등 세출규모 사전 검토(11월말) ※ 세입규모 추계 :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수익자부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규모 추정 ※ 세출규모 추계 : 교직원인건비,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필수경비 산출을 통한 가용재원 규모 추정 나. 예산편성 지침 마련·시행 : 시·도교육청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단가, 각종 서식 등 예산 운용

변경전	변경후
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영한 편성지침 마련·시달(11월말)	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영한 편성지침 마련·시달(11월말)
다. 예산편성 요령 확정·시달 :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회계 관계 법령, 시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별 유치원 예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치원장에게 통보(12월말,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제1항)	다. 예산편성 요령 확정·시달 :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회계 관계 법령, 시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별 유치원 예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치원장에게 통보(12월말,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제1항)
라. 예산편성·제출 : 교직원 예산요구 → 자체 심의·조정* → 예산안 확정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제출(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제2항) * 결산('원' 단위)과 달리 '천원'단위로 작성하되 세입은 절사, 세출은 절상 원칙 * 조정된 세출예산안이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와 "세입예산액=세출예산액"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라. 예산편성·제출 : 교직원 예산요구 → 자체 심의·조정* → 예산안 확정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제출(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제2항) * 결산('원' 단위)과 달리 '천원'단위로 작성하되 세입은 절사, 세출은 절상 원칙 * 조정된 세출예산안이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와 "세입예산액=세출예산액"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 방과후과정비, 급식비·간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이용비, 졸업앨범비 등 수익자부담수입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드시 계상함.
마. 심의의결 송부 및 확정 : 회계 관계 법령, 편성지침 및 요령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한 후 유치원장에게 송부, 유치원장이 확정·집행(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송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제3항)	마. 심의의결 송부 및 확정 : 회계 관계 법령, 편성지침 및 요령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한 후 유치원장에게 송부, 유치원장이 확정·집행(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송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제3항)
바. 보고·공개 및 공시 : 회계연도 개시 전 5일 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홈페이지 1년간 공개(추경은 편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청 보고, 시행령 제14조제1·2·4항) - 본예산은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에 의거 4월 공시 대상 (http://e-childschoolinfo.moe.go.kr/ - 【참고】(예시)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달리 "세부 산출기초"가 없거나 관할청 보고 자료와 다른 경우 무조건 반려 조치")	바. 보고·공개 및 공시 : 회계연도 개시 전 5일 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홈페이지 1년간 공개(추경은 편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청 보고, 시행령 제14조제1·2·4항) - 본예산은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에 의거 4월 공시 대상 (http://e-childschoolinfo.moe.go.kr/ - 【참고】(예시)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달리 "세부 산출기초"가 없거나 관할청 보고 자료와 다른 경우 무조건 반려 조치")
[※ 관할청 예산 보고 시 첨부 서류(재무회계 규칙 제15조 제2항)] ▹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5. 과년도 미수액 조서	[※ 관할청 예산 보고 시 첨부 서류(재무회계 규칙 제15조 제2항)] ▹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5. 과년도 미수액 조서

변경전	변경후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사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으로 대체) 12.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사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으로 대체) 12.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 13. 적립금 기금설치(관리)보고서) 사본(해당시)
사. 추경 및 정리추경 :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본예산 편성 세부업무 절차에 준하여 편성하고 편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청 보고 - 결산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회계연도 말 반드시 정리추경 실시(∵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함.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제2항)	사. 추경 및 정리추경 :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본예산 편성 세부업무 절차에 준하여 편성하고 편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청 보고 - 결산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회계연도 말 반드시 정리추경 실시(∵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함.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제2항)
[※ 추경 사유] ▹ 전년도 이월액 확정에 따른 재원 활용 ▹ 성립 전 예산 집행액의 차기 추경 반영 ※ 성립 전 예산 집행 : 연도 중 ① 용도가 지정되고 ②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경성립 전 사용 가능하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수익자부담 경비도 가능은 하나 최소화 필요) ▹ 예상하지 못한 수입·지출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예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존 예산 과부족, 사업목적 변경, 항목 조정 등 수요변경으로 증△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추경 사유] ▹ 전년도 이월액 확정에 따른 재원 활용 ▹ 성립 전 예산 집행액의 차기 추경 반영 ※ 성립 전 예산 집행 : 연도 중 ① 용도가 지정되고 ②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경성립 전 사용 가능하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수익자부담 경비도 가능은 하나 최소화 필요) ▹ 예상하지 못한 수입·지출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예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존 예산 과부족, 사업목적 변경, 항목 조정 등 수요변경으로 증△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예산항목

세 입('천원'단위, 산출기초는 '원'단위)			세 출('천원'단위, 산출기초는 '원'단위)		
▹ 관항목 구분, 절사 원칙 ▹ 지원·재원부담주체에 따라 구분			▹ 관항목 구분, 절상 원칙 ▹ 경비 성격 및 재원부담주체에 따라 구분		
관	항	목	관	항	목
보조금 및 지원금	공통과정 지원금	공통과정지원금	인건비	교원 인건비	급여
					수당
	방과후 과정 운영 보조금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인건비 보조금	국가보조금			퇴직금및퇴직 적립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육청보조금		직원 인건비	상동
	자본 보조금	국가보조금		그밖의인건비	그밖의인건비
			운영비	관리	수용비

5.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예산항목

세 입('천원'단위, 산출기초는 '원'단위)			세 출('천원'단위, 산출기초는 '원'단위)		
▹ 관항목 구분, 절사 원칙 ▹ 지원·재원부담주체에 따라 구분			▹ 관항목 구분, 절상 원칙 ▹ 경비 성격 및 재원부담주체에 따라 구분		
관	항	목	관	항	목
보조금 및 지원금 수입	공통과정 지원금 수입	공통과정지원금	인건비	교원 인건비	급여
					수당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수입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인건비 보조금 수입	국가보조금			퇴직금및퇴직 적립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육청보조금		직원 인건비	상동
	시설 설비 보조금 수입	국가보조금		그밖의인건비	그밖의인건비
			운영비	관리	수용비

변경전

수익자 부담 수입	일반운영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일반 교육 활동비	운영비	수수료및제세 공과금
		교육청보조금			연료비
		국가보조금			여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그밖의관리운영비
		교육청보조금		업무 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교육비	입학금·일반 교육과정비		일반교육 활동비	교사연수·연구비
					교재·교구구입비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교육·돌봄비			행사비
		방과후특성화비			복리비
	급식비·간식비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급식비·간식비
		특별급식비·간식비	선택적 교육 활동비	방과후 교육 활동비	방과후교육·돌봄비
	그밖의 수익자 부담수입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이용비			
		졸업앨범비			방과후특성화비
		그밖의교육활동수익자부담수입		그밖의 교육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이용비
설치·경영자 이전 수입	설치·경영자이전수입	설치·경영자이전 수입			특별급식비·간식비
					졸업앨범비
					수익자부담재원 교육활동비
차입금	차입금	단기차입금차입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장기차입금차입	상환금	상환금	단기차입상환금
					장기차입상환금
적립금 이전 수입	적립금이전수입	적립금이전수입	반환금	반환금	보조금반환금
					수익자반환금
잡수입금	잡수입금	이자수입·행정활동 수입	시설·설비비	시설비	신·증축비
기부·후원 수입	기부·후원 수입	기부·후원금수입			유지비
				설비·비품비	취득비
지연수납수입	지연수납 수입	지연수납수입			유지비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이월사업비	지연 지출금	지연 지출금	지연지출금
		정산대상재원사용 잔액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6.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예산항목 세부내역

[별표 5]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관	항	목	세부 내역
1. 보조금 및 지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

변경후

학부모 부담금 수입	일반운영 보조금 수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일반 교육 활동비	운영비	수수료및제세 공과금
		교육청보조금			연료비
		국가보조금			여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그밖의관리운영비
		교육청보조금		업무 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교육비 수입	입학금		일반교육 활동비	교사연수·연구비
		일반 교육과정 수업료			교재·교구구입비
	방과후 과정비 수입	방과후교육·돌봄비			행사비
		방과후특성화비			복리비
	급식비·간식비 수입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급식비·간식비
		특별급식비·간식비	선택적 교육 활동비	방과후 교육 활동비	방과후교육·돌봄비 인건비
	그밖의 수익자 부담수입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교육·돌봄비 운영비
		통학차량이용비			방과후특성화비
		졸업앨범비		그밖의 교육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그밖의교육활동수익자부담수입			통학차량이용비
이전 수입	설치·경영자이전수입	법인법정부담금			특별급식비·간식비
		그 밖의 이전수입			졸업앨범비
					수익자부담재원 교육활동비
	기타 이전수입	기타 공공이전수입	적립금	적립금	건축적립금
					그 밖의 적립금
차입금	차입금	단기차입금차입	상환금	상환금	단기차입상환금
		장기차입금차입			장기차입상환금
적립금 이전 수입	적립금이전 수입	건축적립금			이자상환
		그 밖의 적립금	시설·설비비	시설비	시설비
교육 부대 및 그 밖의 수입	교육 부대 수입	지연수납수입		설비·비품비	취득비
		기부·후원금수입			유지비
	잡수입	이자수입	지연 지출금	지연 지출금	지연지출금
		행정활동수입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전년도 이월금 수입	전년도 이월금 수입	이월사업비	예비비 및 반환금	예비비	예비비
		정산대상재원사용 잔액		반환금	보조금반환금
		순세계잉여금			수익자반환금
					지원금반환금

6.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예산항목 세부내역

[별표 5]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관	항	목	세부 내역
1. 보조금 및 지원금 수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

변경전		변경후	
1. 공통과정지원금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지원금(학부모 등이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공통과정 지원금 수입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지원금(학부모 등이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공통과정지원금		1. 공통과정 지원금	
2.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 및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2.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수입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 및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1.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1.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교원 급여 등 인건비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3. 인건비 보조금 수입	교원 급여 등 인건비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1. 국가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4. 자본 보조금	교사(校舍) 등 시설·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	4. 시설 설비 보조금 수입	교사(校舍) 등 시설·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
1. 국가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5. 일반운영 보조금	급식비·간식비 보조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5. 일반운영 보조금 수입	급식비·간식비 보조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으로 처리
1. 국가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2. 수익자부담수입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	2. 학부모부담금 수입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
1. 교육비		1. 교육비 수입	
1. 입학금		1. 입학금	
2. 일반 교육과정비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학부모 등이 공통과정지원금을 받아 납입한 금액은 공통과정지원금으로 처리	2. 일반 교육과정 수업료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받은 학부모부담금 ※ 학부모 등이 공통과정지원금을 받아 납입한 금액은 공통과정지원금으로 처리
2. 방과후과정비		2. 방과후과정비 수입	
1.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방과후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비용은 방과후특성화비로 처리	1.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방과후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비용은 방과후특성화비로 처리
2.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급식비·간식비		3. 급식비·간식비 수입	
1.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의 급식·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1.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의 급식·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특별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특별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4.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통학차량이용비	통학차량이용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통학차량이용비	통학차량이용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입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입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변경전				변경후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수익자부담금
3. 설치·경영자이전수입				설치·경영자가 학교회계로 이전한 금액 ※ 설치·경영자가 대출을 받아 학교회계로 이전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	3. 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설치·경영자가 유치원회계로 출연한 금액 ※ 설치·경영자가 대출을 받아 유치원회계로 이전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
		1. 설치·경영자이전 수입					1. 법인법정부담금	
							2. 그 밖의 이전수입	
						2. 기타 공공이전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기업, 협회,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은 기부·후원금으로 처리
							1. 기타 공공이전수입	
4. 차입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4. 차입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차입금					1. 차입금		
		1. 단기차입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			1. 단기차입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
		2.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외의 차입금			2.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외의 차입금
5. 적립금이전수입				적립금에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5. 적립금이전수입			적립금에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 노후교실의 증·개축, 야외운동장 전면보수 및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시설·설비사업을 위해 적립금에서 이전받는 금액
	1.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1. 건축적립금	건축적립금 해지 환급금
							2. 그 밖의 적립금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 해지 환급금
6. 잡수입금					6. 교육부대 및 그 밖의 수입			
	1. 잡수입금					1. 교육부대 수입		
		1. 이자수입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1. 지연수납수입	해당 회계연도 전에 이전 또는 수납되었어야 하나 이전·납부되지 않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납부된 수입
		2. 행정활동수입		물품 등 자산 매각 수입,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및 보험금 수입 등 행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2. 기부·후원금수입	기부 또는 후원으로 발생한 수입
7. 기부·후원금수입				기부 또는 후원으로 발생한 수입		2. 잡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1. 이자수입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2. 행정활동수입	물품 등 자산 매각 수입,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및 보험금(만기 환급형 해지 환급금 등) 수입 등 행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8. 지연수납수입				해당 회계연도 전에 이전 또는 수납되었어야 하나 이전·납부되지 않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납부된 수입	7. 전년도 이월금 수입			
	1. 지연수납수입					1. 전년도 이월금 수입		
		1. 지연수납수입					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금액
9. 전년도이월금							2. 정산대상재원잔액	전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1. 전년도이월금						3.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정산대상재원사용 잔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금액				
		2.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전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3.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비고
1.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비고
1.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변경전

2.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관·항·목에 따른다.

[별표 6]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관	항	목	세부 내역
1. 인건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1. 교원인건비		정규직 교원인건비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교직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 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 직원인건비		정규직 직원인건비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 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3. 그 밖의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조·대체교사 보수 및 일용직 급여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인건비
		1. 그 밖의 인건비	
2. 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수용비	소모품 구입비, 인쇄비, 교육용도서 외 일반도서 구입비, 차량 정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임차료, 대관료 및 비품대여료 등 유치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 통학차량 정비·유지비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전기·전화요금, 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안전공제회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직원 건강검진비 등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성격의 경비
		3. 연료비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료 및 차량 유류대 등 건물 난방 및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 통학차량 유류대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4. 여비	출장에 따른 소요 여비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2. 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 추진비	유치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사업추진 업무 추진비
		2. 직책급업무 추진비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
3. 일반교육활동비			유치원 일반 교육활동 소요 경비

변경후

2.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관·항·목에 따른다.

[별표 6]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관	항	목	세부 내역
1. 인건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1. 교원인건비		정규직 교원인건비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교직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 직원인건비		정규직 직원인건비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3. 그 밖의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조·대체교사 보수 및 일용직 급여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인건비
		1. 그 밖의 인건비	
2. 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수용비	소모품 구입비, 인쇄비, 교육용도서 외 일반도서 구입비, 차량 정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임차료, 대관료 및 비품대여료 등 유치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 통학차량 정비·유지비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전기·전화요금, 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안전공제회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직원 건강검진비 등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성격의 경비
		3. 연료비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료 및 차량 유류대 등 건물 난방 및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 통학차량 유류대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4. 여비	출장에 따른 소요 여비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유치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2. 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 추진비	유치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
3. 일반교육활동비			

변경전		변경후	
1. 일반교육활동비		1. 일반교육활동비	유치원 일반 교육활동 소요 경비
1. 교사연수·연구비	교직원 연수비 및 연구비	1. 교사연수·연구비	교직원 연수비 및 연구비
2. 교재·교구 구입비	교육 기자재, 교육용도서 등 구입 및 제작 소요 경비	2. 교재·교구 구입비	교육 기자재, 교육용도서 등 구입 및 제작 소요 경비
3. 행사비	원아 교육과 직접 관련된 각종 행사 소요 경비	3. 행사비	원아 교육과 직접 관련된 각종 행사 소요 경비
4. 장학금	원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4. 장학금	원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5. 복리비	원아건강검진비 등 원아 건강 및 안전 관련 소요 경비	5. 복리비	원아건강검진비, 학생안전공제회비 등 원아 건강 및 안전 관련 소요 경비
6.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시간 내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을 위한 소요 경비	6.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시간 내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을 위한 소요 경비(급식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
4. 선택적교육활동비		4. 선택적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인건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 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중 인건비
		2. 방과후교육·돌봄비 운영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 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중 운영비
2. 방과후 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한 소요 경비	3. 방과후 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한 소요 경비
2. 그 밖의 교육활동비		2. 그 밖의 선택적 교육활동비	
1. 현장체험 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1. 현장체험 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통학차량 이용비	통학차량 정비·유지비 및 유류대 등 통학차량 이용을 위한 소요 경비	2. 통학차량 이용비	통학차량 정비·유지비 및 유류대 등 통학차량 이용을 위한 소요 경비
3. 특별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한 소요 경비	3. 특별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한 소요 경비
4.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입 소요 경비	4.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입 소요 경비
5. 수익자부담 재원 교육활동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수익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활동 소요 경비	5. 그 밖의 선택적 교육활동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수익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활동 소요 경비
5. 적립금	건축적립금 및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로 처리	5. 적립금	
적립금		1. 적립금	
적립금		1. 건축적립금	노후시설의 증·개축, 외부 운동장 및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시설 사업을 위한 적립금
		2. 그 밖의 적립금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로 처리
6. 상환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6. 상환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보조·지원금 반환 금액
1. 상환금		1. 상환금	
1. 단기차입 상환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1. 단기차입 상환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의 원금 상환액
2. 장기차입 상환금	단기차입상환금 외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 장기차입 상환금	단기차입상환금 외의 차입금 원금 상환액
		3. 이자상환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7. 반환금			
1. 반환금			
1. 보조금 반환금	보조금 미사용 등에 따른 반환금		
2. 수익자 반환금	수익자부담금 미사용에 따른 반환금		
8. 시설·설비비		7. 시설·설비비	
1. 시설비		1. 시설비	
1. 신·증축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 경비	1. 시설비	유치원 시설의 신·증축비, 시설 수선 및 개·보수

변경전				변경후			
		2. 유지비	시설 유지, 수선 및 개·보수 소요 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2. 설비·비품비						
		1. 취득비	설비 설치비, 비품 구입비, 차량 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등 설비나 비품 취득 소요 경비		2. 설비·비품비		
		2. 유지비	설비, 장비 및 비품의 정비·유지 비용 ※ 차량 정비·유지 비용은 차량 성격에 따라 수용비 또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1. 취득비	설비 설치비, 비품 구입비, 차량 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등 설비나 비품 취득 소요 경비
9. 지연지출금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지출되었어야 하나 지출되지 않았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된 사업비 등			2. 유지비	설비, 장비 및 비품의 정비·유지 비용 ※ 차량 정비·유지 비용은 차량 성격에 따라 수용비 또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지연지출금			8. 지연지출금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지출되었어야 하나 지출되지 않았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된 사업비 등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9. 잡지출			원 단위 절사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성격의 지출	9. 잡지출			원 단위 절사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성격의 지출
	잡지출				1. 잡지출		
		잡지출				1. 잡지출	
10. 예비비			재해·재난 관련 비용 등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10. 예비비 및 반환금			
	예비비				1. 예비비		재해·재난 관련 비용 등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예비비				1. 예비비	
					2. 반환금		
						1. 보조금 반환금	보조금 미사용 등에 따른 반환금
						2. 수익자 반환금	수익자부담금 미사용 및 목적외 사용에 따른 반환명령 등에 따른 반환금
						3. 지원금 반환금	지원금 미사용 등에 따른 반환금

비고
1.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관·항·목에 따른다.

【참고】(예시)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 세입 예산 명세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관	항	목				
1. 보조금및지원금			189,300	184,700	4,600	
	1. 공통과정지원금		132,000	131,300	700	
		1. 공통과정지원금	132,000	131,300	700	1. 유아학비 정부 지원금 220,000원 ×50명×12월=132,000,000
	2.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25,200	25,200	-	
		1.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25,200	25,200	-	1.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70,000원 ×30명×12월=25,200,000
	3. 인건비보조금		3,900	-	3,900	
		1. 국가보조금	-	-	-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	-	
		3. 교육청보조금	3,900	-	3,900	1. 단기대체교사인건비 1,300,000원 ×1명×3월=3,900,000
	4. 자본보조금		-	-	-	
		1. 국가보조금	-	-	-	

【참고】(예시)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 세입 예산 명세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관	항	목				
1. 보조금 및 지원금 수입			201,300	184,700	16,600	
	1. 공통과정 지원금 수입		144,000	131,300	700	
		1. 공통과정 지원금	144,000	131,300	700	1. 유아학비 정부 지원금 240,000원 ×50명×12월=144,000,000
	2.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수입		25,200	25,200	-	
		1.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25,200	25,200	-	1.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70,000원 ×30명×12월=25,200,000
	3. 인건비 보조금 수입		3,900	-	3,900	
		1. 국가보조금	-	-	-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	-	
		3. 교육청보조금	3,900	-	3,900	1. 단기대체교사인건비 1,300,000원 ×1명×3월=3,900,000
	4. 시설 설비 보조금 수입		-	-	-	
		1. 국가보조금	-	-	-	

변경전							변경후						
과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과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관	항	목					관	항	목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	-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	-	
		3. 교육청보조금	-	-	-				3. 교육청보조금	-	-	-	
	5. 일반운영보조금		28,200	28,200	-			5. 일반운영 보조금 수입		28,200	28,200	-	
		1. 국가보조금	-	-	-				1. 국가보조금	-	-	-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400	2,400	-	1. 친환경쌀보조 200,000원×12월 =2,400,000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400	2,400	-	1. 친환경쌀보조 200,000원×12월 =2,400,000
		3. 교육청보조금	25,800	25,800	-	1. 자원봉사자봉사료 400,000원×1명×12월=4,800,000 2. 학급운영비 350,000원×5학급 ×12월=21,000,000			3. 교육청보조금	25,800	25,800	-	1. 자원봉사자봉사료 400,000원×1명×12월=4,800,000 2. 학급운영비 350,000원×5학급 ×12월=21,000,000
2. 수익자부담수입			205,300	204,900	400		2. 학부모부담금 수입			205,300	204,900	400	
	1. 교육비		132,200	132,400	△200			1. 교육비 수입		132,200	132,400	△200	
		1. 입학금	200	200	-	1. 입학금 40,000원×5명 =200,000원			1. 입학금	200	200	-	1. 입학금 40,000원×5명 =200,000원
		2. 일반교육과정비	132,000	132,200	△200	1. 학부모부담 유아학비 220,000원 ×50명×12월=132,000,000			2. 일반교육과정수업료	132,000	132,200	△200	1. 학부모부담 유아학비 220,000원 ×50명×12월=132,000,000
	2. 방과후과정비		21,600	22,000	△400			2. 방과후과정비 수입		21,600	22,000	△400	
		1. 방과후교육·돌봄비	6,600	7,000	△400	1. 방과후과정수업료 10,000원×30명×12월=3,600,000 2. 방과후과정교재비10,000원×30명×10월=3,000,000			1. 방과후교육·돌봄비	6,600	7,000	△400	1. 방과후과정수업료 10,000원×30명×12월=3,600,000 2. 방과후과정교재비10,000원×30명 ×10월=3,000,000
		2. 방과후특성화비	15,000	15,000	-	1. 미술방과후과정 9,000,000 - 강사료 20,000원×25명×12월 =6,000,000 - 재료구입 10,000원×25명×12월=3,000,000 2. 음악강사료 20,000원×25명 ×12월=6,000,000			2. 방과후특성화비	15,000	15,000	-	1. 미술방과후과정 9,000,000 - 강사료 20,000원×25명×12월 =6,000,000 - 재료구입 10,000원×25명×12월=3,000,000 2. 음악강사료 20,000원×25명 ×12월=6,000,000
	3. 급식비·간식비		29,400	28,800	600			3. 급식비·간식비 수입		29,400	28,800	600	
		1. 일반급식비·간식비	24,000	24,000	-	1. 교육과정 급·간식비 24,000,000 - 급식비 2,000원×50명×180일 =18,000,000 - 간식비 10,000원×50명×12월 =6,000,000			1. 일반급식비·간식비	24,000	24,000	-	1. 교육과정 급·간식비 24,000,000 - 급식비 2,000원×50명×180일 =18,000,000 - 간식비 10,000원×50명×12월 =6,000,000
		2. 특별급식비·간식비	5,400	4,800	600	1. 방과후과정 간식비 15,000원 ×30명×12월= 5,400,000			2. 특별급식비·간식비	5,400	4,800	600	1. 방과후과정 간식비 15,000원×30명×12월= 5,400,000
	4. 그밖의수익자부담수입		22,100	21,700	400			4.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22,100	21,700	400	
		1. 현장체험학습비	2,000	2,000	-	1. 현장체험학습 10,000원×50명 ×4회=2,000,000			1. 현장체험학습비	2,000	2,000	-	1. 현장체험학습 10,000원×50명 ×4회=2,000,000
		2. 통학차량이용비	6,000	5,600	400	1. 차량운영비 10,000원×50명 ×12월=6,000,000			2. 통학차량이용비	6,000	5,600	400	1. 차량운영비 10,000원×50명 ×12월=6,000,000
		3. 졸업앨범비	600	600	-	1. 졸업앨범비 20,000원×30명 =600,000			3. 졸업앨범비	600	600	-	1. 졸업앨범비 20,000원×30명 =600,000
		4. 그밖의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13,500	13,500	-	1. 교육과정교재비및재료비 12,000,000 - 교재비 10,000원×50명×12월 =6,000,000 - 재료비 10,000원×50명×12월 =6,000,000 2. 원복비 50,000원×30명 =1,500,000 3. 체육복, 가방구입비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13,500	13,500	-	1. 교육과정교재비및재료비 12,000,000 - 교재비 10,000원×50명×12월 =6,000,000 - 재료비 10,000원×50명×12월 =6,000,000 2. 원복비 50,000원×30명 =1,500,000 3. 체육복, 가방구입비
3. 설치·경영자이전수입			-	-	-		3. 이전수입			-	-	-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	-	-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	-	-	
		1.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	-	-				1. 법인법정부담금	-	-	-	
									2. 그 밖의 이전수입	-	-	-	
								2. 기타 공공이전수입		-	-	-	

변경전

과목 관	과목 항	과목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4. 차입금			-	-	-	
	1. 차입금		-	-	-	
		1. 단기차입금	-	-	-	
		2. 장기차입금	-	-	-	
5. 적립금이전수입			20,000	-	20,000	
	1. 적립금이전수입		20,000	-	20,000	
		1. 적립금이전수입	20,000	-	20,000	1. 교사 시설 개·보수 20,000,000원 ×1식=20,000,000
6. 잡수입금			6,800	300	6,500	
	1. 잡수입금		6,800	300	6,500	
		1. 이자수입	300	300	0	1. 예금이자 150,000원×2회 =300,000
		2. 행정활동수입	6,500	-	6,500	1. 통학차량 매각대금 6,500,000원 ×1대=6,500,000
7. 기부·후원금수입			-	-	-	
	1. 기부·후원금수입		-	-	-	
		1. 기부·후원금수입	-	-	-	
8. 지연수납수입			240	-	240	
	1. 지연수납수입		240	-	240	
		1. 지연수납수입	240	-	240	1. 미수납 30,000원×4명×2월 =240,000
9. 전년도이월액			2,960	2,000	960	
	1. 전년도이월액		2,960	2,000	960	
		1. 이월사업비	-	-	-	
		2.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	-	-	
		3. 순세계잉여금	2,960	2,000	960	1. 순세계잉여금 2,960,000원 =2,960,000
세 입 합 계			424,600	391,900	32,700	

변경후

과목 관	과목 항	과목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1. 기타 공공이전수입	-	-	-	
4. 차입금			-	-	-	
	1. 차입금		-	-	-	
		1. 단기차입금	-	-	-	
		2. 장기차입금	-	-	-	
5. 적립금이전수입			20,000	-	20,000	
	1. 적립금이전수입		20,000	-	20,000	
		1. 건축적립금	20,000	-	20,000	1. 교사 시설 개·보수 20,000,000원 ×1식=20,000,000
		2. 그 밖의 적립금				
6. 교육부대 및 그 밖의 수입			7,040	-	7,040	
	1. 교육부대 수입		240	-	240	
		1. 지연수납수입	240	-	240	1. 미수납 30,000원×4명×2월 =240,000
		2. 기부·후원금수입	-	-	-	
	2. 잡수입		6,800	300	6,500	
		1. 이자수입	300	300	0	1. 예금이자 150,000원×2회 =300,000
		2. 행정활동수입	6,500	-	6,500	1. 통학차량 매각대금 6,500,000원 ×1대=6,500,000
7. 전년도 이월금 수입			2,960	2,000	960	
	1. 전년도 이월금 수입		2,960	2,000	960	
		1. 이월사업비	-	-	-	
		2. 정산대상재원잔액	-	-	-	
		3. 순세계잉여금	2,960	2,000	960	1. 순세계잉여금 2,960,000원 =2,960,000
세 입 합 계			436,600	391,900	44,700	

세출 예산 명세서

(단위 : 천원)

과목 관	과목 항	과목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1. 인건비			250,500	247,500	3,000	
	1. 교원인건비		228,840	227,040	1,800	
		1. 급여	176,400	179,000	△2,600	1. 봉급 176,400,000 - 원장 5,000,000원×12월 =60,000,000 - 원감 3,300,000원×12월 =39,600,000 - 교사(00호봉)1,100,000원×4명 ×12월=52,800,000 - 방과후교사 1,000,000원×2명 ×12월=24,000,000
		2. 수당	17,040	13,840	3,200	1. 정근수당 00호봉 300,000원 ×6명×2회= 3,600,000 2. 직급보조비 원장 400,000원×1명 ×12월=4,800,000 3. 연장근로(시간외)수당 120,000원 ×6명×12회= 8,640,000

세출 예산 명세서

(단위 : 천원)

과목 관	과목 항	과목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1. 인건비			262,500	247,500	15,000	
	1. 교원인건비		240,840	227,040	13,800	
		1. 급여	188,400	179,000	9,400	1. 봉급 176,400,000 - 원장 5,000,000원×12월 =60,000,000 - 원감 3,300,000원×12월 =39,600,000 - 교사(00호봉)1,350,000원×4명 ×12월=64,800,000 - 방과후교사 1,000,000원×2명 ×12월=24,000,000
		2. 수당	17,040	13,840	3,200	1. 정근수당 00호봉 300,000원 ×6명×2회= 3,600,000 2. 직급보조비 원장 400,000원×1명 ×12월=4,800,000 3. 연장근로(시간외)수당 120,000원 ×6명×12회= 8,640,000

변경전

과목 관	과목 항	과목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3. 복리후생비	21,360	20,160	1,200	1. 정액급식비 80,000원×7명 ×12월=6,720,000 2. 명절휴가비 420,000원×6명 ×2회=5,040,000 3. 교통보조비 교사 50,000원×7명 ×12월=9,600,000
		4. 법정부담금	14,040	14,040	-	1. 연금부담금 50,000원×12명 ×12월=7,200,000 2.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담금 40,000원×12명×12월 =5,760,000 3. 고용보험부담금 50,000원×12명×1회=600,000 4. 산재보험부담금 40,000원×12명×1회=480,000
		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	-	-	1. 퇴직금 2. 퇴직적립금(보통예금, 퇴직연금)
	2. 직원인건비		21,660	20,460	1,200	
		1. 급여	19,200	18,000	1,200	1. 사무직 1,200,000원×1명×12월=14,400,000 2. 조리사 400,000원×1명×12월 =4,800,000
		2. 수당	-	-	-	
		3. 복리후생비	600	600	-	1. 직급보조비 50,000원×1명 ×12월=600,000
		4. 법정부담금	660	660	-	1. 기관부담 연금(사학)보험료 2. 기관부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3. 기관부담산재보험료 4. 기관부담 고용보험료
		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200	1,200	-	1. 퇴직금 2. 퇴직적립금(보통예금, 퇴직연금) - 사무직원 1,200,000원×1명 =1,200,000
	3. 그밖의인건비		-	-	-	
		1. 그밖의 인건비	-	-	-	1. 임시직 2. 대체교사 인건비 3. 기타직 법정부담금(보험료)
2. 운영비			33,120	37,360	△4,240	
	1. 관리운영비		26,620	30,360	△3,740	
		1. 수용비	15,300	17,860	△2,560	1. 각종 소모품 3,300,000 - 사무용품 구입 200,000원×6회 =1,200,000 - 전산소모품 구입 250,000원 ×6회=1,500,000 - 기타소모품 구입 100,000원 ×6회=600,000 2. 각종 검사비 100,000원×3종 ×2회=600,000 3. 각종 용역비(소방, 전기, 무인 경비 등) 500,000원×12월=6,000,000 4. 원아모집 광고료 200,000원× 6회=1,200,000 5. 렌탈비 3,000,000 - 정수기렌탈료 150,000원× 12회=1,800,000 - 사무기기렌탈료 100,000원 ×12회=1,200,000 6. 특근매식비 100,000원×12회 =1,200,000

변경후

과목 관	과목 항	과목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3. 복리후생비	21,360	20,160	1,200	1. 정액급식비 80,000원×7명 ×12월=6,720,000 2. 명절휴가비 420,000원×6명 ×2회=5,040,000 3. 교통보조비 교사 50,000원×7명 ×12월=9,600,000
		4. 법정부담금	14,040	14,040	-	1. 연금부담금 50,000원×12명 ×12월=7,200,000 2.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담금 40,000원×12명×12월 =5,760,000 3. 고용보험부담금 50,000원×12명×1회=600,000 4. 산재보험부담금 40,000원×12명×1회=480,000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1. 퇴직금 2. 퇴직적립금(보통예금, 퇴직연금)
	2. 직원인건비		21,660	20,460	1,200	
		1. 급여	19,200	18,000	1,200	1. 사무직 1,200,000원×1명×12월=14,400,000 2. 조리사 400,000원×1명×12월 =4,800,000
		2. 수당	-	-	-	
		3. 복리후생비	600	600	-	1. 직급보조비 50,000원×1명 ×12월=600,000
		4. 법정부담금	660	660	-	1. 기관부담 연금(사학)보험료 2. 기관부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3. 기관부담산재보험료 4. 기관부담 고용보험료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200	1,200	-	1. 퇴직금 2. 퇴직적립금(보통예금, 퇴직연금) - 사무직원 1,200,000원×1명 =1,200,000
	3. 그 밖의 인건비		-	-	-	
		1. 그 밖의 인건비	-	-	-	1. 임시직 2. 대체교사 인건비 3. 기타직 법정부담금(보험료)
2. 운영비			33,120	37,360	△4,240	
	1. 관리운영비		26,620	30,360	△3,740	
		1. 수용비	15,300	17,860	△2,560	1. 각종 소모품 3,300,000 - 사무용품 구입 200,000원×6회 =1,200,000 - 전산소모품 구입 250,000원 ×6회=1,500,000 - 기타소모품 구입 100,000원 ×6회=600,000 2. 각종 검사비 100,000원×3종 ×2회=600,000 3. 각종 용역비(소방, 전기, 무인 경비 등) 500,000원×12월=6,000,000 4. 원아모집 광고료 200,000원× 6회=1,200,000 5. 렌탈비 3,000,000 - 정수기렌탈료 150,000원× 12회=1,800,000 - 사무기기렌탈료 100,000원 ×12회=1,200,000 6. 특근매식비 100,000원×12회 =1,200,000

변경전

과목 관	과목 항	과목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2. 수수료및제세공과금	5,620	6,000	△380	1.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4,764,000 - 전화요금 150,000원×12월 =1,800,000 - 전기요금 150,000원×12월 =1,800,000 - 인터넷요금 97,000원×12월 =1,164,000 2. 수수료 및 보험료 856,000 - 각종수수료 - 각종보험료 3. 재정보증보험료 4. 복리후생비 - 교직원 건강검진비 - 안전공제회비
		3. 연료비	1,500	2,000	△500	1. 난방(가스)비 15,000원×100명 ×1년=1,500,000
		4. 여비	4,200	4,500	△300	1. 관내 출장여비 20,000원×10명 ×12월=2,400,000 2. 관외 출장여비 50,000원×3명 ×12월=1,800,000
		5. 그밖의관리운영비	-	-	-	
	2. 업무추진비		6,500	7,000	△500	
		1. 업무추진비	3,500	4,000	△500	1. 협의회비 2,000,000원×1회 =2,000,000 2. 민원인 접대용품비 1,300,000 원×1회=1,300,000 3. 경조사비 50,000원×4명 =200,000
		2. 직책급업무추진비	3,000	3,000	-	1. 원장 250,000원×12월 =3,000,000
3. 일반교육활동비			57,680	54,340	3,340	
	1. 일반교육활동비		57,680	54,340	3,340	
		1. 교사연수·연구비	2,040	1,800	240	1. 교원 연수비 150,000원×6명 ×2회=1,800,000 2. 교원 연수 교재 20,000원×6명 ×2회=240,000
		2. 교재·교구구입비	12,600	10,900	1,700	1. 교구및기자재구입 4,000,000 - 교구구입 100,000원×5종× 4회=2,000,000 - 기자재구입 100,000원×5종 ×4회=2,000,000 2. 학습자료구입 7,600,000 - 학습준비물구입 30,000원× 20종×12월= 7,200,000 - 실험실습재료구입 20,000원 ×10종×2회= 400,000 3. 아동용도서구입비 5,000원 ×200권=1,000,000
		3. 행사비	1,500	1,700	△200	1. 각종행사비 1,500,000 - 입학식및졸업식 500,000원× 2회=1,000,000 - 학예, 체육행사 500,000원× 1회=500,000
		4. 장학금	-	-	-	
		5. 복리비	1,800	1,700	100	1. 아동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 - 원아상해보험료 15,000원× 50명×1회= 1,500,000 - 구급약품구입비 15,000원×2회 =300,000
		6. 일반급	39,740	38,240	1,500	1. 식품비 29,900,000

변경후

과목 관	과목 항	과목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5,620	6,000	△380	1.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4,764,000 - 전화요금 150,000원×12월 =1,800,000 - 전기요금 150,000원×12월 =1,800,000 - 인터넷요금 97,000원×12월 =1,164,000 2. 수수료 및 보험료 856,000 - 각종수수료 - 각종보험료 3. 재정보증보험료 4. 복리후생비 - 교직원 건강검진비 - 안전공제회비
		3. 연료비	1,500	2,000	△500	1. 난방(가스)비 15,000원×100명 ×1년=1,500,000
		4. 여비	4,200	4,500	△300	1. 관내 출장여비 20,000원×10명 ×12월=2,400,000 2. 관외 출장여비 50,000원×3명 ×12월=1,800,000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	-	-	
	2. 업무추진비		6,500	7,000	△500	
		1. 일반업무추진비	3,500	4,000	△500	1. 협의회비 2,000,000원×1회 =2,000,000 2. 민원인 접대용품비 1,300,000 원×1회=1,300,000 3. 경조사비 50,000원×4명 =200,000
		2. 직책급 업무추진비	3,000	3,000	-	1. 원장 250,000원×12월 =3,000,000
3. 일반교육활동비			57,680	54,340	3,340	
	1. 일반교육활동비		57,680	54,340	3,340	
		1. 교사연수·연구비	2,040	1,800	240	1. 교원 연수비 150,000원×6명 ×2회=1,800,000 2. 교원 연수 교재 20,000원×6명 ×2회=240,000
		2. 교재·교구구입비	12,600	10,900	1,700	1. 교구및기자재구입 4,000,000 - 교구구입 100,000원×5종× 4회=2,000,000 - 기자재구입 100,000원×5종 ×4회=2,000,000 2. 학습자료구입 7,600,000 - 학습준비물구입 30,000원× 20종×12월= 7,200,000 - 실험실습재료구입 20,000원 ×10종×2회= 400,000 3. 아동용도서구입비 5,000원 ×200권=1,000,000
		3. 행사비	1,500	1,700	△200	1. 각종행사비 1,500,000 - 입학식및졸업식 500,000원× 2회=1,000,000 - 학예, 체육행사 500,000원× 1회=500,000
		4. 장학금	-	-	-	
		5. 복리비	1,800	1,700	100	1. 아동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 - 원아상해보험료 15,000원× 50명×1회= 1,500,000 - 구급약품구입비 15,000원×2회 =300,000
		6. 일반급식비·	39,740	38,240	1,500	1. 식품비 29,900,000

변경전

과목 관	과목 항	과목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식비·간식비				- 양곡 450,000원×12월 =5,400,000 - 부식류 1,816,670원××12월 =21,800,000 - 우유대금 300원×50명×180일 =2,700,000 2. 운영비 3,840,000 - 급식소모품 구입 220,000원 ×12회=2,640,000 - 방역비 200,000원×6회 =1,200,000 3. 교육과정 간식비 500,000원 ×12월=6,000,000
4. 선택적교육활동비			50,300	49,700	600	
	1. 방과후교육활동비		19,800	20,200	△400	
		1. 방과후 교육·돌봄비	4,800	5,200	△400	1. 재료비 400,000원×12월 =4,800,000 (보조금 1,200,000 포함)
		2. 방과후특성화비	15,000	15,000	-	1. 미술방과후과정 9,000,000 - 미술강사료 500,000원×12월 =6,000,000 - 미술재료구입 250,000원× 12월=3,000,000 2. 음악강사료 500,000원×12월 =6,000,000
	2. 그밖의교육활동비		30,500	29,500	1,000	
		1. 현장체험학습비	2,000	2,000	-	1. 현장체험학습비 2,000,000 - 식비 7,000원×50×4회 =1,400,000 - 입장료 1,000원×50명×4회 =200,000 - 교통비 2,000원×50명×4회 =400,000
		2. 통학차량이용비	6,000	5,600	400	1. 유류비 300,000원×12월 =3,600,000 2. 카시트및소모품 400,000원× 4회=1,600,000 3. 수리비 200,000원×4회 =800,000
		3. 특별급 식비·간식비	5,400	4,800	600	1. 방과후과정간식비 450,000원 ×12월=5,400,000
		4. 졸업앨범비	600	600	-	1. 졸업앨범제작 20,000원×30부 =600,000
		5. 수익자부담 재원교육활동비	16,500	16,500	-	1. 교육과정교재구입 500,000원 ×12월=6,000,000 2. 교육과정재료 500,000×12월 =6,000,000 3. 방과후교재구입 300,000원 ×12월=3,000,000 4. 원복비 50,000원×30명 =1,500,000 5. 체육복비 6. 가방구입비
5. 적립금			-	-	-	
	1. 적립금		-	-	-	
		1. 적립금	-	-	-	
6. 상환금			-	-	-	
	1. 상환금		-	-	-	

변경후

과목 관	과목 항	과목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간식비				- 양곡 450,000원×12월 =5,400,000 - 부식류 1,816,670원××12월 =21,800,000 - 우유대금 300원×50명×180일 =2,700,000 2. 운영비 3,840,000 - 급식소모품 구입 220,000원 ×12회=2,640,000 - 방역비 200,000원×6회 =1,200,000 3. 교육과정 간식비 500,000원 ×12월=6,000,000
4. 선택적교육활동비			50,300	49,700	600	
	1. 방과후교육활동비		19,800	20,200	△400	
		1. 방과후교육·돌봄비 인건비	4,800	5,200	△400	
		2. 방과후교육·돌봄비 운영비				1. 재료비 400,000원×12월 =4,800,000 (보조금 1,200,000 포함)
		3. 방과후 특성화비	15,000	15,000	-	1. 미술방과후과정 9,000,000 - 미술강사료 500,000원×12월 =6,000,000 - 미술재료구입 250,000원× 12월=3,000,000 2. 음악강사료 500,000원×12월 =6,000,000
	2. 그 밖의 선택적 교육활동비		30,500	29,500	1,000	
		1. 현장체험 학습비	2,000	2,000	-	1. 현장체험학습비 2,000,000 - 식비 7,000원×50×4회 =1,400,000 - 입장료 1,000원×50명×4회 =200,000 - 교통비 2,000원×50명×4회 =400,000
		2. 통학차량 이용비	6,000	5,600	400	1. 유류비 300,000원×12월 =3,600,000 2. 카시트및소모품 400,000원× 4회=1,600,000 3. 수리비 200,000원×4회 =800,000
		3. 특별급식비·간식비	5,400	4,800	600	1. 방과후과정간식비 450,000원 ×12월=5,400,000
		4. 졸업앨범비	600	600	-	1. 졸업앨범제작 20,000원×30부 =600,000
		5. 그 밖의 선택적 교육활동비	16,500	16,500	-	1. 교육과정교재구입 500,000원 ×12월=6,000,000 2. 교육과정재료 500,000×12월 =6,000,000 3. 방과후교재구입 300,000원 ×12월=3,000,000 4. 원복비 50,000원×30명 =1,500,000 5. 체육복비 6. 가방구입비
5. 적립금			-	-	-	
	1. 적립금		-	-	-	

변경전

과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관	항	목				
		1. 단기차입금 상환금	-	-	-	
		2. 장기차입금 상환금	-	-	-	
7. 반환금			-	-	-	
	1. 반환금		-	-	-	
		1. 보조금 반환금	-	-	-	
		2. 수익자 반환금	-	-	-	
8. 시설·설비비			32,000	2,000	30,000	
	1. 시설비		20,000	2,000	18,000	
		1. 신·증축비	20,000	-	20,000	1. 교사 시설 개·보수 20,000,000원 ×1식=20,000,000
		2. 유지비	-	2,000	△2,000	
	2. 설비·비품비		12,000	-	12,000	
		1. 취득비	12,000	-	12,000	1. 통학차량 구입 00인승 12,000,000×1대 =12,000,000
		2. 유지비	-	-	-	
9. 지연지출금			-	-	-	
	1. 지연지출금		-	-	-	
		1. 지연지출금	-	-	-	
10. 잡지출			-	-	-	
	1. 잡지출		-	-	-	
		1. 잡지출	-	-	-	
11. 예비비			1,000	1,000	-	
	1. 예비비		1,000	1,000	-	
		1. 예비비	1,000	1,000	-	1. 예비비 1,000,000원 =1,000,000
세 출 합 계			424,600	391,900	32,700	

변경후

과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산출기초(원)
관	항	목				
		1. 건축적립금	-	-	-	
		2. 그 밖의 적립금	-	-	-	
6. 상환금			-	-	-	
	1. 상환금		-	-	-	
		1. 단기차입 상환금	-	-	-	
		2. 장기차입 상환금	-	-	-	
		3. 이자상환금	-	-	-	
7. 시설·설비비			32,000	2,000	30,000	
	1. 시설비		20,000	2,000	18,000	
		1. 시설비	20,000	2,000	18,000	1. 교사 시설 개·보수 20,000,000원 ×1식=20,000,000
	2. 설비·비품비		12,000	-	12,000	
		1. 취득비	12,000	-	12,000	1. 통학차량 구입 00인승 12,000,000×1대 =12,000,000
		2. 유지비	-	-	-	
8. 지연지출금			-	-	-	
	1. 지연지출금		-	-	-	
		1. 지연지출금	-	-	-	
9. 잡지출			-	-	-	
	1. 잡지출		-	-	-	
		1. 잡지출	-	-	-	
10. 예비비 및 반환금			1,000	1,000	-	
	1. 예비비		1,000	1,000	-	
		1. 예비비	1,000	1,000	-	1. 예비비 1,000,000원 =1,000,000
	2. 반환금		-	-	-	
		1. 보조금 반환금	-	-	-	
		2. 수익자 반환금	-	-	-	
		3. 지원금 반환금	-	-	-	
세 출 합 계			436,600	391,900	44,700	

7. 관련 조문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

좌동

변경전	변경후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변경전	변경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편성 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 2월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5. 과년도 미수액 조서 6. 추정 대차 대조표 7. 삭제	

변경전	변경후
8. 전년도 대차 대조표 9.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②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6조(예산편성절차)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예산) ①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이,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변경전	변경후
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①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결산을 함께 해당 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 ②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 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1976.1.7.〉 제59조(준용)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3장 수입·지출	
① 징수결정 세입징수자 ■ 징수 권리의 내용(수입원인 및 금액), 납부의무자, 납부시기 및 회계연도, 세입예	좌동

변경전	변경후
산 항목 등 확정 ↓ ② 징수결의서 작성 / 세입징수자 ■ 징수결정, 징수결정액 증△감 조정, 과오납금 반환, 이월 징수 결정, 불납결손 결정 시 작성 ↓ ③ 납입고지 / 세입징수자 ■ 납부금액, 납입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문서로서 통지하는 대외적 의사 표시 ■ 수입원의 즉시 수납의 경우 구술고지 가능 ↓ ④ 수납행위 / 수입원 ■ 납부의무자로부터 고지한 해당금원을 영수하는 행위 ■ 금융회사 취급 원칙, 현금 수납은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 불가(영수증 발급 등) ↓ ⑤ 독촉 / 세입징수자 ■ 납입기한 경과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 발송하되 납부기한은 당해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함 ↓ ⑥ 과오납금 반환 / 세입징수자 ■ 징수 및 수납 착오·중복, 납입 후 감면,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초과한 납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 →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하되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 ↓ ⑦ 불납결손 결정 / 세입징수자 ■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 ■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	
2. 세입, 수입의 개념 등 - 관련서류 5년간 보관 가. 세입의 개념 : 1회계연도의 유치원회계 모든 수입(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나. 수입의 개념 : 유치원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 확보를 위해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는 행위(징수행위)부터 해당금원을 영수하기(수납행위)까지의 일체의 회계 행위 다. 징수행위 : 수입원인 및 금액을 결정하고 납입을 고지하는 행위(세입징수자가 문서로서 고지, 재무회계 규칙 제28조) 라. 납입고지 :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납입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문서로서 통지하는 대외적 의사 표시(수입원의 즉시 수납의 경우 구술고지 가능,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제2항) 마. 수하는 행위(수납은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수	좌동

변경전	변경후
납행위 : 납부의무자로부터 고지한 해당금원을 영등〈이하 “금융회사”〉 취급 원칙, 현금 수납은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 불가,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3. 수입의 원칙 가. 회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수납 하여야 함(국고금관리법 제5조) ※ 유치원장은 수입 징수 시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 과목, 납부의무자, 금액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나. 유치원장은 징수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문서로 납입고지를 해야 함(재무회계 규칙 제28조제2항) 다. 수납은 금융회사 취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현금수납은 수입원이 하되 당일 금융회사에 예입(재무회계 규칙 제29조) 라. 징수 및 수납 착오·중복, 납입 후 감면,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초과한 납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함(재무회계 규칙 제31조) 마. 교직원 급식비의 경우 징수·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수납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함	좌동
4. 세부업무별 절차 가. 징수결정 : 징수 권리의 내용(수입원인 및 금액), 납부의무자, 납부시기 등을 확정하는 것으로 세입예산 항목별로 징수결의서를 작성해야 함 -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징수결정 후 수납하되 수납은 3.20. 폐쇄(단, 징수결정 변경은 3.20.까지 가능)하고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증△감 징수결정 또는 과목경정을 반드시 해야 함 [※ 징수결정 시기에 따른 구분] ▹ 사전징수 결정(사전에 납부의무자, 금액 등 징수 권리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 교육비, 수익자부담수입, 보조금및지원금 등 ▹ 계약과 동시에 징수결정(계약에 의해 납부의무자, 금액 등 징수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 : 차입금, 이외잡수입 중 물품매각대 등 ▹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수납에 의해 납부의무자, 금액 등 징수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 : 이자수입, 이외잡수입 중 제증명 수수료 등 나. 납입고지 :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납입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문서로서 통지하는 대외적 의사 표시(수입원의 즉시 수납의 경우 구술고지 가	좌동

변경전	변경후
능,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제2항) - 납입기간을 정할 때 초일은「민법」제157조에 의거 불산입* 하며 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로 함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 [※ 납입고지서 발부시기] ▹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 의거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 : 납부기간이 개시되기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교육비, 수익자부담수입 등,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납부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고지한 날부터 15일 범위에서 정함(계약과 동시에 징수결정(이외잡수입 중 물품매각대 등,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수납 수입금 : 납입고지서 미발부(이자수입, 이외잡수입 중 제증명 수수료 등) 다. 수납행위 : 납부의무자로부터 고지한 해당금원을 영수하는 행위(수납은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이하 “금융회사”〉 취급 원칙, 현금 수납은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 불가,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 (수납절차) 영수증 발급 → 수입일계표 작성 → 징수부 정리(폐쇄기간까지 미수납된 수입금은 다음연도 이월하여 징수결정,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일반 교육과정비 등 신용카드 결제 공지) 아이행복카드 가맹계약 완료·진행에 따라 현금납부에 따른 학부모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학부모부담 일반교육과정비, 급식비 등 신용카드 결제 가능 적극 안내 필요(∵ 국회 지적 및 신용카드 결제 진정 건 반영) 라. 독촉 : 납입기한 경과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 (발행시기 및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 발송하되 납부기한은 당해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함(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2항) 마. 과오납금 반환 : 징수 및 수납 착오·중복, 납입	

변경전	변경후
후 감면,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초과한 납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함(재무회계 규칙 제31조) ※ (반환절차)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 해당항목 수입세입에서 직접 반환하되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봄(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과오납금반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출납폐쇄 만료 전 : 과오납 된 당회 회계연도 수입세입에서 직접 반환 ▹ 출납폐쇄 이후 : 반환 회계연도 수입세입에서 직접 반환 바. 불납결손 결정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해야 하고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해야 함(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불납결손 결정 절차) 미수납액 징수 → 불납결손 내역 작성 → 불납결손 결정 ※ 유아학비 소멸시효 : 학부모부담 일반교육과정비 등은「민법」 제164조제4호에 따른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채권에 대항되어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따라서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 경과 후 1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결정의 대상이 됨	

변경전	변경후
① 집행품의 / 사업담당자 ■ 유치원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와 예산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물량, 규격, 단가, 사양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유치원장 결재를 득함 ↓ ② 견적서 징구 / 계약담당자 ■ 추정가격에 따라 1~2인 사업자로부터 징구 ■ 견적서 징구 생략 :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등 ↓ ③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 계약담당자 ■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 결정 ■ 계약서 작성(3천만 원 초과, 물품 매각) 또는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를 제출받아 비치 ↓ ④ 납품 및 준공 / 계약담당자 ■ 물품 납품, 용역 이행, 공사 착공계 → 공사감독 → 준공계 접수 등 ↓ ⑤ 검사·검수 / 계약담당자 ■ 규격, 제품 손상 및 서류 수량 등 확인 ■ 계약 이행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 ⑥ 지출 결의 및 대가지급 / 지출원 ■ 지출의사, 정당한 채주, 대가 등을 확인하는 행위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함 ↓ ⑦ 지출금 반납 / 지출원 ■ 사유 :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였거나 정당한 채주가 아닌 다른 채주에게 지급한 경우 ■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하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	좌동
2. 지출의 개념 등 - 관련서류 5년간 보관 가. 지출의 개념 : 유치원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비 집행을 위한 품의부터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고자 정당한 채주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 나. 집행품의 : 경비집행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다. 지출원인행위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확정하는 행위	좌동

변경전	변경후
라. 지출결의 : 지출의사, 정당한 채주, 대가 등을 확인하는 행위 마. 재정보증 : 회계 관계직원(세입징수자, 수입원, 지출명령자, 지출원 등)은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므로 1년 마다 갱신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보험료는 세출예산에서 지급(국고금관리법 제45조)	
3. 지출의 원칙 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서는 지출이 불가하므로 유치원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확인해야 함(시행령 제13조제2항) 나. 유치원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유치원의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국고금관리법 제20조) 다. 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되 지출원인행위 또는 채권자의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하고 지출해야 함(재무회계 규칙 제32조) 라.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하되 10만원미만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를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해야 함(재무회계 규칙 제33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마. 유치원장 및 지출원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때에는 지출품의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채권자의 영수증서, 세출내역부 등 지출서류와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함(재무회계 규칙 제53·54조)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짐(재무회계 규칙 제57조) 바. 사인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보수는 「사립학교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의거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 교직원으로 채용되어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립학교경영자는 학교법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교비회계(유치원회계)를 통한 보수지급은 부당. 다만, 교직원 급여는 교비회계에서 지급이 가능하므로 실제 근무를 전제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치원 상근교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13.7. 2개 법률자문 결과)	

변경전	변경후
사. 예비비는 재해·재난 관련 비용 등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계상한도는 1/1,000 범위 내 금액으로 하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추경 시 적립금이 아닌 일반사업비로 전환하여 집행해야 함 -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산서 제출 시 예비비 사용액 조서를 첨부해야 함 아. 수익자부담수입(교육비 제외)은 원아복지, 선택적 교육활동 등의 사업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타 비목과의 전용이 불가하며 당해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 잔액은 반환함 - 단, 집행 잔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학생복지 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수익자부담수입 반환 처리 기준] ▹ 반환기준 : 사업 종료 후 원아 1인당 반환금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미만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학생복지 사업으로 사용) ▹ 사전 안내 : 사업 안내 및 납입고지서 발부 시 반환기준에 대한 사전 동의 필요 ▹ 수익자부담수입별 사용기준 - 급·간식비 : 다음연도 이월 사용 / 기타 경비 : 학생복지 사업 사용 자. 수입목적에 맞게 지출에 적정을 기하여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제2항·제48조·제51조) 차.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및 한도(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액 포함), 여비지급 기준 등 예산편성 기준 단가 및 업무추진비 증액을 위한 전용 제한 등 일반사항은 매년 사립학교에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하여 운영	
4. 세부업무별 절차 가. 집행품의 : 세출예산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 규모, 집행예정액 등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예산범위 내에서 유치원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됨	좌동

변경전	변경후
[※ 품의서 작성 요령] ▹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며 집행예정 금액이 예산액 범위 내인지 여부 ▹ 집행예정 금액이 회계 관계 법령, 시도별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 적합 여부 ▹ 사업내역, 규모 및 추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인 ▹ 집행목적, 집행내역(복잡한 경우 첨부물로 작성) 및 집행예정액 기재 ▹ 30만 원 이하의 간단한 집행 품의는 지출결의서 적요란과 이면명세서로 대체 가능 ※ 품의서 작성 생략 : 기안에 의함 품의, 공공요금 및 제세, 보수, 여비 등 나. 견적서 징구 : 추정가격에 따라 1~2인 사업자로부터 견적서 징구하되 업체 유형에 따라 부가세 포함여부 확인 [※ 1인 징구 및 생략 사례] ▹ 1인 견적서 징구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지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 견적서 생략 :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지계법 시행규칙 제33조) 다.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확정하는 행위 ※ (종류) 공사 등 계약의 의한 지출원인행위와 교직원인건비 등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위한 지출원인행위로 구분 -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는 품의내용(공사·물품·용역·임대차 등) 및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대 제외)에 따라 계약의 방법 결정됨(일반경쟁·제한경쟁·수의계약) [※ 일반경쟁 대상(재무회계 규칙 제35조)] ▹ 건설공사 : 2억원(전문공사 1억 원) 초과. 기타 추정가격 8천만 원 초과 ▹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 임대차 계약 등 :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변경전	변경후
[※ 계약서 작성(재무회계 규칙 제37조)] ▹ 계약금액 3천만 원 초과 ▹ 물품매각(단,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인지세납부 확인서 징구 필요(3천만 원 초과 : 4만원, 5천만 원 초과 : 7만원, 1억 원 초과 : 15만원, 10억 원 초과 : 35만원) [※ 지출원인행위 확인사항] ▹ 회계 관계 법령 및 적정 집행품의 여부 ▹ 계약상대자, 금액, 기간 등 계약내용의 정당 여부 및 적정 지급액 산정 여부 등 라. 납품 및 준공 : 물품 납품, 용역 이행, 공사 착공계 → 공사감독 → 준공계 접수 등 마. 검사·검수 : 규격, 제품 손상 및 서류 수량 확인 (계약 이행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 지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검사 확인 사항(지계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시행규칙 제50조)]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함 ▹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 지연배상금(지계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 산정방식 : 계약금액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 × 지체일수 * 공사 : 5/10,000, 물품제조·구매 : 8/10,000, 용역 : 13/10,000, 운송 : 25/10,000 바. 대가 청구 : 검사·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	

변경전	변경후
[※ 청구서 제출 시 징구 서류] ▹ 청구서(청구서 대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사 전·중· 후 사진, 하자보수보증금(필요시) 등 ▹ 청구서 생략 : 위문금, 사례금, 보상금 등 사. 지출 결의 및 대가지급 : 지출의사, 정당한 채주, 대가 등을 확인하는 행위로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10만원미만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를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해야 함(재무회계 규칙 제33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 집행편의를 위한 유치원명의 신용카드사용 가능. 단, 호프집, 골프장 등 유흥업소 사용제한을 위해 클린카드* 발급·사용 의무화 필수 * ○○교육청 감사결과, '14~'15학년도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를 다수 누락했으며, 신용카드로 약 11억 9천만 원을 골프장이나 개인 의류매장 등 사적사용 사례 발생 - 적정한 자금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진도에 따른 자금집행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히, 유치원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바 유용이나 횡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목적외 사용 시 보조금은 법인·사인에 관계없이 횡령죄 성립, 지원금 및 일반 교육과정비 등 학부모부담수입 일체는 사인은 사립학교법 위반·법인은 타 회계 전출 시 횡령죄도 성립) ※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대법원 2001두7138 판결, '02.2.5.)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	

변경전	변경후
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7도9755, '08.2.29., 2011도12408, '12.5.10.) [※ 사례별 지출 방법] ▹ 원천징수 또는 공제할 경우의 지출(교직원의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 지급액에서 원천징수액 및 공제액을 차감하고 지급 ▹ 수익자부담수입 : 징수·수납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 [※ 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 ▹ 사용절차 : (집행품의)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관한 의사결정 → (지출원인행위) 가격비교 후 신용카드 사용 → (지출) 신용카드 결제일 도래 시 해당계좌 대금 입금 ▹ 관리 및 사용 주의사항 - 신용카드 발급·사용 시에는 클린카드 발급·사용 의무화 - 발생 포인트 등은 사적으로 사용 불가 - 카드 사용내역 점검 확인(매주 또는 1월) ▹ 사용 장점 : 서류 및 절차 간소화, 회계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 지연 이자 지급(지계법 시행령 제68조)] ▹ 대가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함 ▹ 지연이자 = 지연일수 × 미지급금액 ×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아. 지출금 반납 : 많이 지급하였거나 정당한 채주가 아닌 다른 채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회수하여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하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재무회계 규칙 제30조제2항) ※ (반납절차) 반납결의서 → 반납고지서발행 → 반납 → 장부정리(붉은 색 또는 △표시) [※ 유치원회계 부당지출 사례] ▹ 사유재산 공적사용료(시설사용료) 지출 : 법적 성격 임대료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어 교비 유용에 해당(임대유치원의 임대료 지출은 부당지출로 보기 어려우나 「고	

변경전	변경후
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위반되므로 설립·경영자가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거나 재산소유자로 설립·경영자를 변경인가 할 필요) ▹ 만기 환급형 보험(수익형 보험 포함) 가입 ○ "만기 환급형 보험(수익형 보험 포함)"에 가입하는 것은 목적 외의 과다 지출로 환급금이 목적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관리 ○ 특히, '16 ㅇㅇ시교육청의 "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약 50%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이 '만기 환급형 보험(수익형 보험 포함)'에 가입하여 적립성 목적 외 금액은 전부 유치원회계 여입 조치 ※ 동일보장 내용의 2개 이상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가급적 교육시설재난공제회(시설) 및 학교안전공제회(교직원, 유치원생) 가입 권장 ○ 행정사항 - 보험계약 해지 및 세입 조치 대상 • 유치원 회계 지도·감독 철저 안내('13.9.27.) 이후 가입한 모든 만기 환급형 보험(수익형 보험 포함) 계약 • '13.9.27. 우리 부 안내 이전 시도교육청이 자체 지도·감독 및 감사를 통해 기 안내한 경우에는 자체 안내 이후 가입한 모든 만기 환급형 보험(수익형 보험 포함) 계약 • 단, 안내이전 기 가입 보험은 유치원 명의 변경 선 조치 후 만기 시 환급 보험료를 유치원회계로 세입 처리하되 지속 관리 - 세입 조치 후 처리방안(안-보험 납입액 재원에 따라 적의 조치) • 수익자부담수입(유아학비 및 입학금 등 제외) : 수익자에게 반환 • 보조금 잔액 :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 반납 • 반환 및 반납의무가 없는 재원 :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목적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 - 향후 관리(시도교육청별 엄정 조치 추진) • 지도·감독 또는 감사 시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유치원 • 만기(중도 해지) 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환급금을 유치원 회계로 세입 조치하지 않은 유치원 • 신규 만기 환급형 보험(수익형 보험 포함)에 가입하는 유치원 등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자체, 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사립유치원 해당)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매년 1.25, 7.25)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물품 구입·용역·공사·식자재 구입비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 미 수취 또는 허위 증빙 거래한 금액 총 3억 원('14~'15.) 적발(국조실 부패척	

변경전	변경후
결추진단 감사결과, '17.12.21.) 〈 세금계산서 조회결과 허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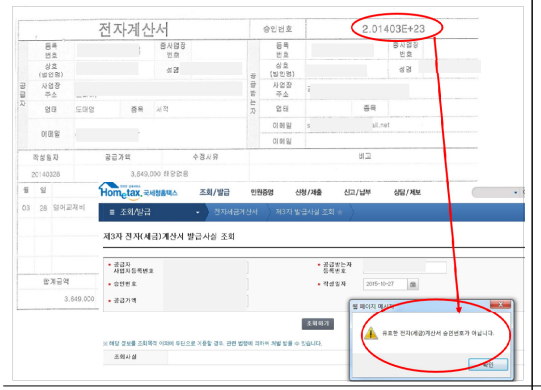 	
5.관련조문	좌동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③「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제32조의3(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	

변경전	변경후
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제48조(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54조의2(해임요구) 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변경전	변경후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매년 3월 20일)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7조(준예산) ①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이,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변경전	변경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③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의 방법)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변경전	변경후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제28조(수입금 징수) ①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9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30조(과년도수입과 반납금여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2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3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②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34조(지출의 특례) ①지출할 때에 선금급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보조금 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경비중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전	변경후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경비 제35조(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1) 공사계약 : 건설공사 2억 원(전문공사 1억 원) 초과. 기타 추정가격 8천만 원 초과 2)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6) 임대차 계약 등 :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	

변경전	변경후
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변경전	변경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	

변경전	변경후
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제36조(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제37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금액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1. 계약금액 3천만 원 초과 3. 물품매각(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비치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전	변경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해야 함 제38조(보증금)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2항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3항 및 제7항 경쟁입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분할 단가계약의 경우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③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함 ④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을,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변경전	변경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국가·지자체 등은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국가·지자체 등은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제41조(감사) ②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9조(준용)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	

변경전	변경후
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변경전	변경후
【참고】내부결재 및 각종계약서 양식 ❑ 차량임차계약 내부결재 예시 ○○○유치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반 현장체험학습활동 실시에 따른 차량임차계약 우리 유치원 ○○반 현장체험학습활동에 필요한 임차계약을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 체험학습활동 실시에 따른 차량 임차계약 2. 계약기간 : 0000.00.00.(월) ~0000.00.00.(화)(2일간) 3. 운행구간 : 유치원→천안→에버랜드→민속박물관→유치원 4. 차량대수 : 2대(45인용) 5. 소요예산 : 금팔십만원정(200,000원×2대×2일=800,000원) 6. 지출과목 : 관)수익자부담수입 항)그밖의수익자부담수입 목)현장체험학습비 7. 계약상대자 : ㅇㅇㅇ여행사 ㅇㅇㅇ 붙임 ㅇㅇ반 현장체험학습활동 계획서(사본) 1부. 끝. 결재일자 ○○/○○ 담당자 ○○○ 원감 ○○○ 원장 ○○○ 협조자 시행 ○○○- (0000 . ○○. ○○) 접수 우 000-000 00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 www.유치원홈페이지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공개	좌동
❑ 전세버스 임대차계약 예시 0000학년도 00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계약 ㅇㅇ유치원장 ㅇㅇㅇ를 “갑”이라 하고 ○○고속(주)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차량규격 및 차량대수: 대형차량(45인승) 2대	좌동

변경전	변경후
·용역명 : 0000학년도 00체험장 현장학습 전세버스 임차 ·운행기간 : 0000년 ○월 ○일 ·계약금액 : 금구십만원정(₩900,000) - 부가세 포함 ·계약보증금 : 금구만원정(₩90,000) 제1조 (운행구간 및 일정) 전세버스 운행구간은 다음에 따른다. 날 짜 | 출발장소 | 운행지역 | 탑승 | 도착장소 2016. 5. 20. | 유치원 (09:00) | 00체험장 도착 (10:00) | 16:00 | 유치원도착 (17:00) 제2조 (대기시각) "을"은 전세버스를 철저히 정비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각 30분 전까지 대기시켜야 한다. 제3조 (기타경비부담) 운행 중 소요되는 주차료는 "갑"이 부담하고 "을"은 버스운행 중 소요된 경비와 운전기사의 식비, 통행료, 주차요금 등 기타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4조 (운행중 사고 책임부담) "을"은 제반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운행하게 되는 차량은 보험에 가입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운행중의 응급조치) "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버스를 이용, 수송(관광)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임대차에 따른 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과 전세여객 운송사업 약관 및 일반계약 약관에 따르며, 배차차량은 "을"의 회사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의 기능상태)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 등 모든 안전 상태가 점검되어야 한다. 제8조 (아동수송차량표시) 계약된 차량은 차량 앞·뒷면에 아래와 같이 아동수송차량임을 표시한다. 〈앞 면〉 아 동 수 송 차 량 유치원명 : ○○유치원 대 상 : ○○반 (40명) 〈뒷 면〉 아 동 수 송 차 량 이 차에는 유치원 아동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제9조 (대금 지급) “갑”은 “을”이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청구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 (피해보상) “을”은 상기 제1조부터 제6조의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취소) 상급관서의 지시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 일 정 변경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어구해석)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갑” “을” ㅇㅇ유치원 ○○고속(주) 고유번호 : 사업자번호: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ㅇ읍 면동 00로 000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ㅇ 읍면동 00로 000 ㅇㅇ유치원장 ㅇㅇㅇ(직·사인)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 전세버스 차량운행용 특수조건 예시 전세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1. 운행차량 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 43인승 이상 차량 1대와 25인승 차량 1대 등 2대 나. 수송인원은 80명이며 최종참가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이 계약에 따른 운송차량은 2010년 이후 출시된 차량이어야 한다. (안전상의 문제로 학생 수송차량은 6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지양) 라.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붙임과 같이 “유치원생 수송차량”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운행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2. 운행차량 조건 가. 운행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좌동

변경전	변경후
나. 운행차량은 계약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 계약자 소유가 아닌 차량이 배치될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하여 향후 2년간 본교의 차량 임차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보험,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4.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동일 색상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5.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교사의 운행 확인을 거쳐,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7일 이내에 지급한다. 6.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 포함)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전	변경후
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운행차량의 대표자는 현장학습 운행에 따른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갑"의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의 차량으로 대체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라. 운행 종료장소, 현지 출발 시간 및 마지막 도착 시간은 전적으로 "갑"의 행사 일정에 준한다. 마. "을"의 소속 직원들은 임차기간 중 "갑"의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갑"은 운전기사의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행 중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을 지도한다. 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운행할 때에는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하여야 한다. 아.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 위험한 도로(산길, 낭떠러지길 등)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한다. (풋브레이크 사용자제) 8.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통행료 및 주차료를 포함한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9. 지체상금	

변경전	변경후
차량은 우리 유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30분 전까지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 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시간 매10분마다 차량 1대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5를 대금을 지불할 때에 공제한다.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우리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2. 관할법원 이 계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 주소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현장학습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400mm× 300mm 나. 양식 현장학습 차량 (제 호차) 기관명 : ㅇㅇ유치원 학생수 : 명 다. 부착위치: 전면에서 볼 때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500mm× 300mm 나. 양식 ㅇㅇ유치원 현장학습 차량 (제 호차) 이 차에는 유치원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위치: 뒤 유리창 중앙	좌동

변경전	변경후
❑ 수련시설 이용계약 내부결재 예시 ○○○유치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6학년도 수련활동에 따른 수련시설 이용계약 2016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따른 원아수련활동에 따라 수련시설이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 수련활동 시설 이용계약 2. 계약기간 : 0000.00.00.(월) ~ 0000.00.00.(수) (2박 3일) 3. 계약금액 : 금이백만원정(2,000,000원) 4. 계약방법 : 수의 계약 5. 계약업체 : ○○시도 ○○시군구 ○○읍면동 000번지 ○○수련원 6. 지출과목 : 관)수익자부담수입 항)그밖의수익자부담수입 목)현장체험학습비 붙임 1. 수련시설 이용계약서 1부. 2. 계약관련 서류 1부. 끝. 결재일자 ○○/○○ 담당자 ○○○ 원감 ○○○ 원장 ○○○ 협조자 시행 ○○○- (0000 . ○○. ○○) 접수 우 000-000 00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 www.유치원홈페이지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공개	좌동
❑ 수련시설 이용계약서 예시 **수련시설 이용계약서** ㅇㅇ유치원장 ㅇㅇㅇ를 “갑”이라 하고 ○○수련원 대표자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련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행 사 명 : ○○유치원 수련활동시설 이용계약 2. 행사기간 : 0000.00.00. ~ 0000.00.00.(2박 3일 6식) 3. 행사장소 :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읍면동 000번지 ○○수련원 4. 인원 및 계약금액 가. 계약금액 : 금이백만원정(2,000,000원) 나. 참가인원 : 인솔교사 10명, 원아 200명(생활보호대상자 2명 포함) 예상 다. 1인당 행사비 내역: 붙임 산출내역과 같음(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좌동

변경전	변경후
증감된 인원에 따른 계약금액은 계약완료 후에 정산한다.) 5. 대금 지급 대금은 입소인원을 확인하고, 행사 종료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한다. 6. 숙박 및 시설대여 가. 숙박에 있어서 “을”은 수련생을 포함한 사용자 전원이 편안하고, 유익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갖춘다. “갑”은 문제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을“은 성실히 요구에 응해야 한다. 나. “을”은 식사 제공 시 식단표에 의거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식수는 음용 기준에 적합한 끓은 물을 제공한다. 단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식중독이나 기타 위생상 문제되는 사항(입소일 시점부터 퇴소 후 5일 이내 발생의 질병이 “을”의 귀책사유인 경우 포함)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 수련원측에서는 숙박 및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을 행사기간 중 개방하며,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7.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가. “을”은 수련기간 중 예상되는 사고발생에 대비 응급 처리 할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적극 협조한다. 나. “을”은 수련기간 중 숙박시설 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수련활동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수련생의 고의 또는 객관적 귀책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자체교육 실시 "갑“이 수련원 시설 및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9.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 이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 또는 위약 시 응분의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통: 천재지변,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수련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전액 환급 나. 시설사용료 1) “을”의 사정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및	

변경전	변경후
10% 배상 •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다. 2) “갑”의 사정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10%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다. 다. 교육비(사용자 및 수련원측 사정에 따라 취소 시): 교육비는 해당 없음 1) 강의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2) 강의 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다. 10. 기타사항 가. “갑”과 “을”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보완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르고 상기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갑” “을” ㅇㅇ유치원 ○○수련원 고유번호 : 사업자번호: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ㅇ읍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ㅇ 면동 00로 000 읍면동 00로 000 ㅇㅇ유치원장 ㅇㅇㅇ(직·사인) 대표자 홍 길 동 (인) ※ 수련시설 이용 계약 시 갖추어야할 서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계약업체가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인지의 여부 확인), 사용인감계(인감으로 계약하지 않고, 다른 인감으로 사용할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시설(객실)배치도, 화재보험증권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식단표 및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식당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 증명서	
❑ 임용계약서 예시 임용계약서 교직원(을)과 원장(갑)은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좌동

변경전	변경후
제1조 [계약의 당사자]	

사용자(갑)	성 명		사업의 종류	
	사 업 체 명			
	소 재 지			
근로자(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사년월일		성 별	남·여
	담 당 업 무			
근무장소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의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이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① 근무장소는 본 유치원 소재지로 한다.

제4조 [시업 및 종업] ① 평일 : 09:00~17:00
② 휴게시간 : 12:00~13:00
③ '갑'은 계절, 기타 사업장 형편에 따라 시업·종업 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근로시간] ① '을'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을'은 '갑'이 업무상 사정으로 전항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하고, '갑'은 그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명시적인 요구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을'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수습사용기간] ① 제 2조 1항의 임용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사용기간으로 하며 '갑'은 이 기간 동안 '을'의 업무상 능력을 평정하여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7조제①항에 불구하고 수습기간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변경전	변경후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고, 해당직무 1년 이상 경력사원인 경우 수습을 적용하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휴일과 휴가] ① ‘갑’은 ‘을’에게 토요무급휴일 및 주휴일을 부여한다. ② ‘갑’은 ‘을’에게 연차유급휴가 및 무급생리휴가(여성근로자에 한함)를 부여한다. ③ ‘갑’은 전항의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을’을 휴무시킬 수 있으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휴(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휴가 또는 연차휴가는 원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사용한다. 제7조 [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월 원으로 한다. ②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는 시급 0,000원으로 한다. ③ 임금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을”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④ “을”이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해당 시간 만큼 위 1항의 임금에서 공제한다. ※ 단, 매월 임금계산기간(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함. 제8조 [계약의 중도해지]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이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에 정한 사유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조에 정한 업무의 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의 경영상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9조 [준칙] 이 계약이 정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등용에 관해서는 근로 기준법,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따른다. 제10조 [특약사항] ① ‘갑’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제1조에 정한 ‘을’의 담당업무 및 취업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야간근로(하오10시~상오6시) 또는 휴일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을’은 본 계약서에 약정된 기간을 근무해야 하며, 부득이 중도퇴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	

변경전	변경후
은 사직일로부터 적어도 60일 전에 유치원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퇴직일으로부터 30일전에 퇴직사유와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④ 상기 3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만약 3일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파면조치를 취하고 유무형의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과 '을'이 제2조에서 정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 ⑥ '갑'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을'에게 근로기준법 및 그에 의하여 발하는 시행령 요지와 취업규칙을 주지시킨 다음 계약서의 내용을 열람하게 한 바, '을'이 이에 동의함으로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⑦ '을'은 '갑'이 지향하는 유치원 운영의 근원적 목적 및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때 근로해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⑧ '을'은 '갑'의 지휘명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위법한 개인행동 또는 집단행동을 유발하지 않는다. 제11조 [경과조치] 이 계약 체결 당시 종전에 지급받은 임금 등은 이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임금 등으로 본다. 제12조 [퇴직금] 퇴직금은 사학연금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기밀유지] ① 업무수해시 발생된 원의 정보 및 기밀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누설로 인한 문제는 '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갑'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라도 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은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을'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생길시 '갑'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기타사항] 양 당사자는 위와 같이 임용계약을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 (인)

‘을’ : 직 (인)</td><td></td></tr>
<tr><td>❑ 채용계약서 예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기간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 사 자]
<table>
<tr><td rowspan="3">사용자
(갑)</td><td>성 명</td><td></td><td>사 업 종 류</td><td></td></tr>
<tr><td>사업체명</td><td colspan="3"></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근로자
(을)</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td></tr>
</table>
제2조(임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유치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따른 ○○○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정규교원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그 발령일 전일에</td><td>좌동</td></tr>
</table>

변경전	변경후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필요한 부분만 기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한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기타, 사용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유치원 교원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등「○○유치원 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정함.)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4조에 규정된 계약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유치원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전	변경후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되 출산휴가는 정규교원 결원보충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교원으로 동일 유치원에 근속 1년 이상 근무 계약한 기간제교원에 한하여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병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총 ○일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60일 내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제7장(복무)의 규정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정원 교원이 복직하여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제13조(기간제교원 연수) 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 반드시 15시간(1년 이상 3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 계약자에 해당되며 계약제 교원지침에 따라 처리함.)

제14조(기간제교원 평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교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201○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그 밖의 채용조건)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유치원 교원 인사관리규정」등을 준용한다. 다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 (인)

'을' : 직 (인)</td><td></td></tr>
<tr><td>운전원 채용계약서

운전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운전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 사 자]
<table>
<tr><td rowspan="3">사용자
(갑)</td><td>성 명</td><td></td><td>사 업 종 류</td><td></td></tr>
<tr><td>사업체명</td><td colspan="3"></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근로자
(을)</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td></tr>
</table>
제2조[계약기간]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② "갑"은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의 계약기간 중 차량운전능력, 원생들의 호응도, 근무태도 및 유치원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10일전까지 "을'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한다.</td><td>좌동</td></tr>
</table>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
제3조[근로조건]
① 근로장소 :
② 직　　종 : 운전기사
③ 근로시간 : 월~금요일(매일) 오전 08:20~10:00, 오후 02:00~03:00, 오후 05:30~06:20
토요일 연 4회 유치원 행사시 (운동회, 가을나들이 외)
갑과 을은 쌍방 합의하에 주 12시간이내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갑‘의 지시에 의한 근로만을 인정하고 “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근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휴게시간 : 하루 4시간이하 근무이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은 필요없음
⑤ 근 무 일 : 매일
⑥ 휴　　일 : 공휴일과 일요일
제4조[임　금]① 월 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기본급</th><th>기타수당</th><th>지급액</th></tr>
<tr><td></td><td></td><td></td></tr>
</table>
② 연장근로는 시급 0,000원을 지급한다.
③ 임금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을”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④ “을”이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해당시간 만큼 위 1항의 임금에서 공제한다.
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복무수칙]① “을”은 운전자로서의 일반적인 품위에 손상이 가는 언행, 외모를 하지 않으며 원아들에게 짜증, 위협적인 언행이나 체벌 등 비교육적인 태도를 하지 않으며, 본원의 성문(成文)·불문(不文)화된 관리수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을”은 허락된 경우가 아니고는 본원 이외의 장소에서는 학부모와 면담 등을 하지 않도록 하며, 본원의 교육내용이나 각종 운영관리사항(서류포함)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장이나 상급자의 지시·명령에 성실히 따른다.
④ “을”이 동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말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말서가 수차례 누적되거나 단 한차례라도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해고, 정직 등 별도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td><td></td></tr>
</table>

변경전	변경후
제6조[징계]“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해고, 정직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 위반 행위 2. 무단결근 3. 직장이탈, 근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4. 직장에서의 폭행 및 폭언행위 5. 직무외의 비행 및 범법행위 6. 업무방해 및 직장질서 위반행위 7. 유치원의 재산상 손실초래 행위 8. 복무수칙 및 안전수칙 위반행위 제7조[기 타]① 을은 제2조 제1항에 정한 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직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직 예정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기간 동안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유치원 제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0000년 00월 00일 ‘갑’ : (인) ‘을’ : (인)	

변경전	변경후
제 4장 결산	
1. 사립유치원 결산 업무흐름도 ① 출납폐쇄(3.20.) / 유치원장 ■ 당해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징수행위가 된 세입금 수납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지출 마감 ↓ ② 결산서 작성·제출(4.9.) / 유치원장 →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간 포함)에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제출 • 세입결산서 : 관항목별 재원을 구분하여 예·결산액 및 결산액 산출 기초 작성 • 세출결산서 : 관항목별 재원을 구분하여 예·결산액 및 결산액 산출 기초 작성 ※ 징수부·지출부·예금 잔고 확인을 통해 정확히 작성 ↓ ③ 심의의결·확정(4.24.) /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심의·확정(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④ 보고·공개(5.29.) 및 공시(10월) /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관할청 보고 및 홈페이지 1년간 공개 ■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에 의거 10월 공시 ※ 관할청은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사립학교법 제48조)	좌동
2. 결산서 작성 원칙 가. 예산(단위 : 천원, 세입 절사, 세출 절상)과 달리 결산은 '원'단위 작성 나.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불용액에 있어서의 수입총액·지출총액과 차인잔액(불용액)을 명확히 하여야 함 다. 세입·세출 관항목, 세입재원*, 징수부, 지출부 및 통장확인 등을 통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수정 및 변경 금지 * 학부모지원교육과정비와 부모부담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교육비와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등 정부지원·보조금과 학부모부담이 섞여 집행되	좌동

변경전	변경후
는 경우, 세출결산서 구분 란에 세입재원에 따라 정확하게 명시 라. 전년도 집행 잔액은 이월금 계상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산출기초는 반드시 집행사업과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명기* * 특히, 인건비의 경우, 원장, 유치원교사(평균), 행정실장, 직원(평균)을 구분하여 산출기초 명시 마. 결산액과 예금 잔액증명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불부합조서* 작성·첨부 * 예금 잔액증명서(3.20자)와 장부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과 사유 작성 바. 결산결과 발생된 불용액(집행잔액과 이월금 계상액이 서로 다른 경우) 및 과년도수입(미수액조서에 반영)은 익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 결산 서류] ※ 기본 : 유치원 현황,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세입·세출결산서, 예금 잔액증명서, 비정규직 명단 및 퇴직적립금현황,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 ※ 부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결손처분액조서·미수액조서·차입금명세서·채무확정액조서·예비비사용액조서·예산 전용명세서·이월경비 내역·계속비 내역·불부합조서 등	
3. 세부업무별 절차 가. 출납폐쇄 : 2월 말일 기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3.20., 재무회계 규칙 제9조) - 당해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징수행위가 된 세입금 수납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지출은 3.20.까지 반드시 마감 - 회계연도 내 징수결의 된 금액 중 미수납액이 있는 경우, 사항에 따라 결손처분 또는 미수금 처리(익년도 수납발생 시 과년도수입 처리) -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된 금액 중 미지출액이 있는 경우, 이월사업비 처리(보조금 등은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처리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없거나 지출하지 못한 경우는 과년도지출 처리) 나. 결산서 작성·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제출(4.9.,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 관항목별 징수부·지출부 및 예금 잔고 확인을 통해 정확히 작성 ·세입결산서 : 관항목별 재원을 구분하여 예·결산액 및 결산액 산출기초 작성 ·세출결산서 : 관항목별 재원을 구분하여 예·결	좌동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산액 및 결산액 산출기초 작성
-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이전에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2항*에 의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
* 사립유치원장은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
다. 심의의결·확정 :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심의·확정(4.24.,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제1항제2·3호, 법인은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함)
라. 보고·공개 및 공시 :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관할청 보고 및 홈페이지 1년간 공개(5.29., 시행령 제14조제1·5항)
- 관할청 보고 시 위 결산 기본서류 및 해당 부표를 함께 제출
- 결산은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에 의거 10월 공시 대상
(http://e-childschoolinfo.moe.go.kr/)
※ 유치원알리미에 공시한 '14~'15년 예·결산서에는 입학금이 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 결과 입학금 360만원을 현금으로 징수 후 예·결산서에 누락. 또한, 결산서의 세출액과 실제 현금출납부상의 금액도 다르게 작성·공시(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 감사결과, '17.12.21.)</td><td></td></tr>
<tr><td>■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유치원회계 세입결산서
<table>
<tr><th colspan="3">과목</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보조금 및 지원금</th><th rowspan="2">부모 부담 수입</th><th rowspan="2">기타 수입</th><th rowspan="2">계</th><th rowspan="2">산출기초 (원)</th></tr>
<tr><th>관</th><th>항</th><th>목</th></tr>
<tr><td colspan="3" rowspan="3"></td><td>예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결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증감</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3"></td><td rowspan="3">합계</td><td>예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결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증감</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3"></td><td rowspan="3">합계</td><td>예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결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증감</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3">총계</td><td>예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결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증감</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좌동</td></tr>
</table>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

유의사항

1. 유치원에서만 사용함.
2. 유치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추가·삭제)이 가능함.

210㎜×297㎜[백상지(80g/㎡)]

</td><td></td></tr>
<tr><td>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6호의5서식]

유치원회계 세출결산서

<table>
<tr><th colspan="3">과목</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보조금 및 지원금</th><th rowspan="2">부모 부담 수입</th><th rowspan="2">기타 수입</th><th rowspan="2">계</th><th rowspan="2">산출기초 (원)</th></tr>
<tr><th>관</th><th>항</th><th>목</th></tr>
<tr><td colspan="3" rowspan="3"></td><td>예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결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증감</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3"></td><td rowspan="3">합계</td><td>예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결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증감</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td><td colspan="2" rowspan="3">합계</td><td>예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결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증감</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3">총계</td><td>예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결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증감</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유의사항

1. 유치원에서만 사용함.
2. 유치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추가·삭제)이 가능함.

210㎜×297㎜[백상지(80g/㎡)]

</td><td>좌동</td></tr>
<tr><td>

4. 관련 조문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

</td><td>좌동</td></tr>
</table>

변경전	변경후
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유치원 포함)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변경전	변경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3조(결산)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40일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과 차인잔액(불용액)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미수액조서·차입금명세서·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①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결산을 함께 해당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 ②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 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변경전	변경후
제 5장 차입·적립금	
5-1. 사립유치원 차입금 운영 업무흐름도 ① 차입허가 이사장 → 관할청 ■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음(이사장·사립학교경영자 공통) ■ 학교법인은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사유, 상환방법·계획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② 차입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상환재원이 유치원회계 재원이므로 제1금융권 차입 및 사학진흥재단 융자를 원칙으로 함. ■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차입은 위 기관보다 이자가 낮을 때 가능 ※ 장기차입 : 시설 개·보수에 한정 ↓ ③ 세입·세출예산 편성·집행 유치원장 ■ 차입금도 수입에 해당되어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음 ↓ ④ 차입금 원리금 상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일시차입금은 회계연도 중 상환 ■ 장기차입금은 상환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상환 ↓ ⑤ 차입금 상환결과 보고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관할청 ■ 일시·장기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관할청 결과 보고	5-1. 사립유치원 차입금 운영 업무흐름도 ① 차입허가 이사장 → 관할청 ■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음(이사장·사립학교경영자 공통) ■ 학교법인은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사유, 상환방법·계획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② 차입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상환재원이 유치원회계 재원이므로 제1금융권 차입 및 사학진흥재단 융자를 원칙으로 함. ■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차입은 위 기관보다 이자가 낮을 때 가능 ※ 장기차입 : 시설 개·보수에 한정 ↓ ③ 세입·세출예산 편성·집행 유치원장 ■ 차입금도 수입에 해당되어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음 ↓ ④ 차입금 원리금 상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단기차입금은 회계연도 중 상환 ■ 장기차입금은 상환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상환 ↓ ⑤ 차입금 상환결과 보고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관할청 ■ 단기·장기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관할청 결과 보고
2. 차입금 운용 원칙 가.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음(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8조제1항)	2. 차입금 운용 원칙 가.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음(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8조제1항)

변경전	변경후
[※ 차입금 종류 및 차입처] ▹ 차입금 종류 - 단기차입금 :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 차입하는 경우로서 회계연도 내 상환(예시 : 학부모지원교육과정비 지연 지원 시 일시 차입하는 경우 등) - 장기차입금 : 시설 개·보수를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시설 개·보수이외 용도 장기차입금 운용 불가 - 학교법인은 차입허가 시, 사립학교경영자는 차입금 예산편성 보고 시 차입 규모,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립학교법 제31조제2항 및 제48조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차입처 : 원리금 상환재원이 유치원회계이므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제1금융권 차입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차입은 제1금융권보다 이자가 낮은 경우에는 가능	[※ 차입금 종류 및 차입처] ▹ 차입금 종류 - 단기차입금 :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 차입하는 경우로서 회계연도 내 상환(예시 : 학부모지원교육과정비 지연 지원 시 일시 차입하는 경우 등) - 장기차입금 : 시설 개·보수를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시설 개·보수이외 용도 장기차입금 운용 불가 - 학교법인은 차입허가 시, 사립학교경영자는 차입금 예산편성 보고 시 차입 규모,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립학교법 제31조제2항 및 제48조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차입처 : 원리금 상환재원이 유치원회계이므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제1금융권 차입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차입은 제1금융권보다 이자가 낮은 경우에는 가능
나.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하여야 하고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 모두 예산에 편성한 후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음(재무회계 규칙 제6조 및 제8조제2항) - 차입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이므로 유치원장은 차입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학교법인의 차입은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 없이 차입한 행위는 무효임(대법원 98다44642, '98.12.8.)	나.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하여야 하고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 모두 예산에 편성한 후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음(재무회계 규칙 제6조 및 제8조제2항) - 차입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이므로 유치원장은 차입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학교법인의 차입은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 없이 차입한 행위는 무효임(대법원 98다44642, '98.12.8.)
다. 예산서에는 차입금을 포함한 전년도 부채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결산서에는 차입금명세서가 부표로 작성되어야 하는바, 관할청은 차입 유치원의 규모 및 정원충족률을 고려하여 유아들에 대한 직접교육비가 낮아지지 않도록 차입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다. 예산서에는 차입금을 포함한 전년도 부채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결산서에는 차입금명세서가 부표로 작성되어야 하는바, 관할청은 차입 유치원의 규모 및 정원충족률을 고려하여 유아들에 대한 직접교육비가 낮아지지 않도록 차입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라. 차입금으로는 건물, 토지 구입 등 자산증식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원리금 상환은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설치·경영자이전수입(법정부담전입금 제외), 잡수입금,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상환함 ※ 매 회계연도 장기차입상환금 상환 시, 적립금+장기차입상환금+차량할부금의 합은 해당지역 실정에 맞게 관할청이 정한 상기 원리금 상환 세입예산 항목 총 수입액의 일정범위(비율)를	라. 차입금으로는 건물, 토지 구입 등 자산증식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원리금 상환은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설치·경영자이전수입(법정부담전입금 제외), 잡수입금,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상환함 ※ 매 회계연도 장기차입상환금 상환 시, 적립금+장기차입상환금+차량할부금의 합은 해당지역 실정에 맞게 관할청이 정한 적립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변경전	변경후
초과할 수 없음 마. 교육청 지원 또는 적립금과 동일 목적 장기차입금 운용 불가 ※ 부실운영 방지를 위해 장기차입금 상환 중에는 적립금 적립은 원칙적으로 불가. 단, 관할청이 정한 일정범위(비율) 내 상환은 허용 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체육장 등의 재산은 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법 제28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제1항) * 설립·변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지, 원사, 유원장으로서 실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대법원 2004도6261, '04.12.10.)	마. 교육청 지원 또는 적립금과 동일 목적 장기차입금 운용 불가 ※ 부실운영 방지를 위해 장기차입금 상환 중에는 적립금 적립은 원칙적으로 불가. 단, 관할청이 정한 일정범위(비율) 내 상환은 허용 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체육장 등의 재산은 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법 제28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제1항) * 설립·변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지, 원사, 유원장으로서 실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대법원 2004도6261, '04.12.10.)
3. 관련 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좌동

변경전	변경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④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 등"이라 한다)의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 20퍼센트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 원 미만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 진흥재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 원 미만,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	

변경전	변경후
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차입금)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변경전	변경후
제15조(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②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제23조(결산)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미수액조서·차입금명세서·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5-2. 사립유치원 적립금 운영 업무흐름도 ①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 / 유치원장 ▪ 자체 적립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 ↓ ② 관할청 보고 / 유치원장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관할청에 사전 보고 ▪ 제출서류 : 연도별 적립액, 사용계획, 전년도 결산서·당해연도 예산서, 사업비 견적서, 연도별 정원 취원율 등 자료 ↓ ③ 유치원 통보 / 관할청 ▪ 관할청에서는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검토 ▪ 해당 유치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적립금 인정 여부 통보 ※ 적립금 운용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④ 적립금 운용 / 유치원장 ▪ 연도별 적립된 적립금을 기금의 형태로 누계 관리 ▪ 적립금 사용 시에는 당초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 ※ 적립목적 위반 사용 시에는 시정명령 부과	좌동

변경전	변경후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 2 제4항 후단*)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 2 제4항 후단*)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안)] 가. 유치원이 [별표 6] 5-1-1. 적립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 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세입예산 항목으로 하되 적립금 규모 및 비율은 해당법인 및 유치원의 재정상태(원장·설립경영자 등 보수 수준 포함)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함 1. 공통과정지원금 2. 교육비 3. 설치·경영자이전수입(법정부담전입금 제외) 4. 잡수입금 5. 순세계잉여금 나. 건축적립금 적립은 유치원교육 직접 사용 교사의 해당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까지 적립할 수 있음. 다만, 임대유치원은 직접 소유가 아니므로 건축적립금 적립 불가 다. 토지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4]에 따름 라. 감가상각비까지 건축적립금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도과한 내용연수분에 대해서는 유아들에 대한 직접교육비 축소 우려 등으로 소급하여 적립할 수 없음 마. 동일 고정자산에 대한 장기차입상환금·적립금의 동시 운용은 불가하며 관할청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개·보수 또는 증·개축(신축 포함)한 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분은 적립할 수 없음	[※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1안)] 가. 유치원이 [별표 6] 5-1-1. 적립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 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세입예산 항목으로 하되 적립금 규모 및 비율은 해당법인 및 유치원의 재정상태(원장·설립경영자 등 보수 수준 포함)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함 1. 공통과정지원금 2. 교육비 3. 설치·경영자이전수입(법정부담전입금 제외) 4. 잡수입금 5. 순세계잉여금 나. 건축적립금 적립은 유치원교육 직접 사용 교사의 해당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까지 적립할 수 있음. 다만, 임대유치원은 직접 소유가 아니므로 건축적립금 적립 불가 다. 관할청이 통학차량적립금을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차량가액과 잔존가액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까지 적립할 수 있음, 다만 업무용 차량은 적립금 적립 불가 라. 토지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4]에 따름 마. 감가상각비까지 건축적립금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도과한 내용연수분에 대해서는 유아들에 대한 직접교육비 축소 우려 등으로 소급하여 적립할 수 없음 바. 동일 고정자산에 대한 장기차입상환금·적립금의 동시 운용은 불가하며 관할청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개·보수 또는 증·개축(신축 포함)한 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분은 적립할 수 없음

변경전	변경후
	[※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2안)] 가. 유치원이 [별표 6] 5-1-1. 적립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 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세입예산 항목으로 하되 적립금 규모 및 비율은 해당법인 및 유치원의 재정상태(원장·설립경영자 등 보수 수준 포함)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함 1. 공통과정지원금 2. 교육비 3. 설차·경영자이전수입(법정부담전입금 제외) 4. 잡수입금 5. 순세계잉여금 나. 건축적립금 적립은 유치원교육 직접 사용 교사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위한 건축비(시공견적)에 따라 적립할 수 있음. 다만, 임대유치원은 직접 소유가 아니므로 건축적립금 적립 불가 다. 관할청이 통학차량적립금을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차량가액과 잔존가액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까지 적립할 수 있음, 다만 업무용 차량은 적립금 적립 불가 라.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4]에 따름 마. 동일 고정자산에 대한 장기차입상환금·적립금의 동시 운용은 불가하며 관할청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개·보수 또는 증·개축(신축 포함)한 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분은 적립할 수 없음
3. 적립금 운용 원칙 가. 관할청은 적립금(장기차입상환금, 차량할부금 포함) 규모가 과다할 경우, 유아교육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기「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안)」 '가'의 각호 세입예산 항목의 총 수입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해당지역 실정에 맞게 그 비율을 정하여 운영함 ※ 적립금에 대응하여 설립·경영자, 유치원장, 행정실장 등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 규모에 따라 적립금을 불인정할 수 있음 ※ 유아교육 직접 사용 교사·교지의 재산세는 유치	3. 적립금 운용 원칙 가. 관할청은 적립금(장기차입상환금, 차량할부금 포함) 규모가 과다할 경우, 유아교육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기「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안)」 '가'의 각호 세입예산 항목의 총 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지역 실정에 맞게 그 비율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적립금에 대응하여 설립·경영자, 유치원장, 행정실장 등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적립금 재원 대비 20% 이상)에는 보수지급 규모에 따라 적립금을 불인정할 수 있음 ※ 사립유치원 정원충족률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적립금 한도액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1안) ※ 유아교육 직접 사용 교사·교지의 재산세는

변경전	변경후
원회계를 통한 납부 허용(단, 교사 취득세는 건축적립금 감가상각비에 반영, 교지 취득세는 회계납부 불가)	유치원회계를 통한 납부 허용(단, 교사 취득세는 건축적립금 감가상각비에 반영, 교지 취득세는 회계납부 불가) (2안) ※ 유아교육 직접 사용 교사·교지의 재산세는 유치원회계를 통한 납부 허용(교지 취득세는 회계납부 불가) ※ 매 회계연도 적립금+장기차입상환금+차량할부금의 합은 적립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적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관할청이 연장사유 등을 판단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적립사유 소멸 등으로 인해 적립기간이 지났음에도 집행하지 않게 된 적립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해당 유치원 회계로 여입하여 교육비 등으로 집행해야 함
나. 적립금 운용을 위해서는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1~3항) ※ 관할청 미보고 적립금 운용 시 해당 적립금은 여입처리 후 정당 용도에 지출함	다. 적립금 운용을 위해서는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1~3항) ※ 관할청 미보고 적립금 운용 시 해당 적립금은 여입처리 후 정당 용도에 지출함 라. 적립금은 당초 적립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다만, 불가피하게 적립 및 사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관할청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계획에 따른 적립 또는 집행 가능 마. 유치원 폐쇄 시 적립금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편성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
다. 관할청이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따라야 함(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4항)	바. 관할청이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따라야 함(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4항)
4. 적립금 운용 절차	4. 적립금 운용 절차
가. 사용계획 수립 : 자체 적립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	가. 사용계획 수립 : 자체 적립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
나. 관할청 보고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관할청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연도별 적립액, 사용계획, 전년도 결산서·당해 연도 예산서, 사업비 견적서, 연도별 정원 취원율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관할청 보고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관할청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연도별 적립액, 사용계획, 전년도 결산서·당해 연도 예산서, 사업비 견적서, 연도별 정원 취원율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해당 유치원 통보 : 관할청에서는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검토하고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다. 해당 유치원 통보 : 관할청에서는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검토하고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적립금 인정 여부 통보
- 향후, 정원 충족률 저하 등 적립금 규모 및 기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 및 관리 지속 추진
라. 적립금 운용 : 기금의 형태로 관리하되 당초 적립 목적에 한하여 사용(건축적립금 감가상각비 적립 시, 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용도 사용 가능)
마. 적립금 관할청 관리 : 유치원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회계연도 중 임의처분 후 연도 말 여입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관리 보고 시 입출금 내역도 함께 제출받아 점검
※ 개별유치원은 적립금 운용 시 ①「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한 후 ③ 관할청이 당해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음</td><td>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적립금 인정 여부 통보
- 향후, 정원 충족률 저하 등 적립금 규모 및 기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 및 관리 지속 추진
라. 적립금 운용 : 기금의 형태로 관리하되 당초 적립 목적에 한하여 사용(건축적립금 감가상각비 적립 시, 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용도 사용 가능)
<u>※ 누적 적립금 현황 및 사용결과의 유치원 홈페이지 공개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u>
마. 적립금 관할청 관리 : 유치원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회계연도 중 임의처분 후 연도 말 여입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관리 보고 시 입출금 내역도 함께 제출받아 점검
※ 개별유치원은 적립금 운용 시 ①「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한 후 ③ 관할청이 당해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음</td></tr>
<tr><td>5. 감가상각 내용연수(특례규칙 제34조제2항 관련 별표 4)
□ 유형고정자산
<table><tr><th>구분</th><th>내용연수</th><th>구조 또는 자산명</th></tr><tr><td>건축물 1</td><td>40년</td><td>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td></tr><tr><td>건축물 2</td><td>20년</td><td>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그 밖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td></tr><tr><td>연구 기자재</td><td>5년</td><td>교육, 연구 및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td></tr><tr><td>기계 비품</td><td>5년</td><td>연구 기자재를 제외한 기계장치, 각종 기구 및 각종 집기비품(실험연구용 시설 및 기계포함, 단 실습용 선박 및 항공기는 12년을 적용함)</td></tr><tr><td>차량 운반구</td><td>5년</td><td>자동차 및 그 밖의 운반구</td></tr><tr><td>소프트웨어</td><td>5년</td><td>전산 프로그램 등</td></tr><tr><td>도서</td><td>5년</td><td>도서 단, 계약기간에 따른 해외저널, 학술데이터베이스의 전자적 구독 등은 사용기간으로 함</td></tr></table></td><td>좌동</td></tr>
</table>

변경전	변경후
□ 무형고정자산 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 10년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 20년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 50년 / 댐 사용권	
【참고】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보고)서 서식	【참고】 [서식1]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보고)서 서식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보고)서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보고)서
① 적립금액(목표액) / 금 원정(₩)	① 적립금액(목표액) / 금 원정(₩)
② 적립사유	② 적립사유(또는 변경사유) / *6하 원칙에 의거 적립 사유(또는 변경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소요경비 산출내역, 재산공부 등)는 별도 첨부"*
③ 사용용도	③ 사용용도 / *노후차량 교체(통학용 차량)*
④ 적립처	④ 적립처 / *○○유치원회계 내에 기금으로 별도 적립함*
⑤ 적립기간	⑤ 적립기간 / *20○○. 3. 1. ~ 20○○. 2. 29. (총 5년 간)*
⑥ 적립금 적립계획	⑥ 적립금 적립계획 / *연도별 적립계획서 개요 작성* *※ 세부내용 별첨【서식3】*
⑦ 적립금 사용계획	⑦ 적립금 사용계획 /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 개요 작성*
위와 같이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유치원장 직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위와 같이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유치원장 직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① "원"단위까지 작성(예, 금일천칠백이십이만원정(₩17,220,000) ② 개조식 작성(세부내용은 별지 작성 제출) ③ ○○노후교실 증·개축, ○○시설 개·보수 등으로 명확히 작성(토지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 등에 대해서는 감가	① "원"단위까지 작성(예, 금일천칠백이십이만원정(₩17,220,000) ② 개조식 작성(세부내용은 별지 작성 제출) ③ ○○노후교실 증·개축, ○○시설 개·보수 등으로 명확히 작성(토지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 등에 대해서는 감가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동 자산 매입 또는 자산에 대해서는 절대 적립 불가)
④ “○○유치원회계 내에 기금으로 별도 적립” 으로 기재
⑤ “연” 단위로 함(예, 0000.1.1.~0000.12.31.(유치원 정원 조정 등 규모 및 취원율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에서 회계연도별 적립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⑥ “세부내역 별지작성”으로 기재 후 별지 제출</td><td>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동 자산 매입 또는 자산에 대해서는 절대 적립 불가)
④ “○○유치원회계 내에 기금으로 별도 적립” 으로 기재
⑤ “연” 단위로 함(예, 0000.1.1.~0000.12.31.(유치원 정원 조정 등 규모 및 취원율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에서 회계연도별 적립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⑥ “세부내역 별지작성”으로 기재 후 별지 제출</td></tr>
<tr><td>[사유서 서식]

사유서

“6하 원칙에 의거 적립금 적립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20 . . .

○○유치원장 직인</td><td>[서식2] 사유서

사유서

“6하 원칙에 의거 적립금 적립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20 . . .

○○유치원장 직인</td></tr>
<tr><td>[적립금 적립계획서 서식]

적립금 적립계획서

기관명 : ○○유치원장 20 . . .현재

<table>
<tr><th>①연도별</th><th>②적립금액(원)</th><th>③재원</th><th>④적립금 관리</th><th>비고</th></tr>
<tr><td>2017</td><td></td><td></td><td></td><td></td></tr>
<tr><td>2018</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⑤합계</td><td></td><td></td><td></td><td></td></tr>
</table>
① 적립금은 연도별 적립</td><td>[서식3] 적립금 적립계획서

적립금 적립계획서

기관명 : ○○유치원장 20 . . .현재

1. 일반현황
<table>
<tr><th colspan="2">학급현황</th><th colspan="3">원아현황(명)</th><th>정원 충족률</th><th colspan="5">교직원현황(명)</th></tr>
<tr><td>인가 학급</td><td>모집 학급</td><td>인가 정원</td><td>모집 정원 (A)</td><td>현원 (B)</td><td>(B/A) ×100</td><td>원장</td><td>원감</td><td>교원</td><td>기타</td><td>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적립금 적립 계획서
<table>
<tr><th>①연도별</th><th>②적립금액(원)</th><th>③재원</th><th>④적립금 관리</th><th>비고</th></tr>
<tr><td>2017</td><td></td><td></td><td></td><td></td></tr>
<tr><td>2018</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⑤합계</td><td></td><td></td><td></td><td></td></tr>
</table>
① 적립금은 연도별 적립</td></tr>
</table>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② 적립금의 연도별 예정액 기재
③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설치·경영자이전수입(법정 부담전입금 제외), 잡수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④ “별도의 기금으로 유치원회계 내에서 관리”로 기재
⑤ 합계액은 적립 목표액과 같아야 함
※ 건축적립금 적립 시 ⑤ 합계액은 잔존연한 감가상각비 균분액[(취득가액-잔존가치)/(건축물 내용연수-도과 내용연수)]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내용연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제2항 관련 별표 4에 따름
※ 도과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예시 : 40년 철근콘크리트조 교사로 2017학년도 현재 20년이 도과했다면 나머지 20년에 한해서면 적립 가능)</td><td>② 적립금의 연도별 예정액 기재
③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설치·경영자이전수입(법정 부담전입금 제외), 잡수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④ “별도의 기금으로 유치원회계 내에서 관리”로 기재
⑤ 합계액은 적립 목표액과 같아야 함
※ 건축적립금 적립 시 ⑤ 합계액은 잔존연한 감가상각비 균분액[(취득가액-잔존가치)/(건축물 내용연수-도과 내용연수)]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내용연수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제2항 관련 별표 4에 따름
※ 도과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예시 : 40년 철근콘크리트조 교사로 2017학년도 현재 20년이 도과했다면 나머지 20년에 한해서면 적립 가능)</td></tr>
<tr><td></td><td>[서식4] 기금설치(관리)보고서

○○학년도 기금설치(관리)보고서

1. 일반현황
<table><tr><th colspan="2">학급현황</th><th colspan="3">원아현황(명)</th><th>정원 충족률</th><th colspan="5">교직원현황(명)</th></tr><tr><th>인가 학급</th><th>모집 학급</th><th>인가 정원</th><th>모집 정원 (A)</th><th>현원 (B)</th><th>(B/A) ×100</th><th>원장</th><th>원감</th><th>교원</th><th>기타</th><th>계</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2. 적립금 현황
<table><tr><th>① 기금명</th><th>②예치기관명 (예금종류)</th><th>③계좌번호 (예금주)</th><th>④ 설치일자</th><th>⑤ 예치기간</th><th>⑥보고일 현재잔고 (원)</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3. 적립금 세부현황 (단위 : 원)
<table><tr><th rowspan="2">적립금명</th><th rowspan="2">적립 연도</th><th colspan="3">적립금액</th><th rowspan="2">⑦전년도 적립금 재원 결산액</th></tr><tr><th>원금</th><th>이자액</th><th>계</th></tr><tr><td rowspan="3"></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2">합 계</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td><td>별첨 1: 예금잔액증명서 1부
2. 적립금 통장 사본 1부

20 . . .

○○유치원장 직인

ㅇㅇ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작성요령]
① 사용용도 및 목적을 요약하여 기금명으로 기재
②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기재
③ 예금계좌번호 및 유치원명의 예금주 기재
④ 적립금 보고, 수리에 따라 기금의 확정(계좌개설일) 일자 기재
⑤ 적립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⑥ 보고일 현재 기금(예치금)잔고 기재
⑦ 전년도 적립금 재원 결산 금액
(공통과정지원금+교육비+설치·경영자이전수입+잡수입금+순세계잉여금 중 재원이 되는 금액)</td></tr>
<tr><td>[적립금 사용계획서 서식]

적립금 사용계획서

기관명 : ○○유치원장
<table><tr><td colspan="2">①적립목적(용도)</td><td></td></tr><tr><td colspan="2">②재원</td><td></td></tr><tr><td colspan="2">③적립총액</td><td></td></tr><tr><td rowspan="5">사용
계획</td><td>④사업명</td><td></td></tr><tr><td>⑤계약(예정)
금액</td><td></td></tr><tr><td>⑥계약방법</td><td></td></tr><tr><td>⑦사용잔액</td><td></td></tr><tr><td>⑧사용잔액 처리</td><td></td></tr></table></td><td>[서식5] 적립금 사용계획서 서식]

적립금 사용계획서

기관명 : ○○유치원</td></tr>
</table>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① 적립금 적립사유로 적립계획서의 사용용도와 같아야 함
② 공통과정지원금, 교육비, 설치·경영자이전수입(법정부담전입금 제외), 잡수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③ 적립금 총액으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보고)서의 목표액, 적립금 적립계획서의 총액과 같아야 함
④ ○○노후교실 증개축, ○○시설 개·보수 등 구분에 따른 적합한 시설사업 명칭 기재
⑤ 집행예정액을 기재하되, 시장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현실과 부합하게 산출
⑥ 사학기관 재무와 회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방법 기재
⑦⑧ 사용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td>
<td>
<table>
<tr><td colspan="2">①적립목적(용도)</td><td>노후통학차량 교체</td></tr>
<tr><td colspan="2">②재원</td><td>유치원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법인 전입금</td></tr>
<tr><td colspan="2">③적립총액</td><td>금이천오백만원정(₩25,000,000)</td></tr>
<tr><td rowspan="5">사용계획</td><td>④사업명</td><td>어린이 통학차량 구입</td></tr>
<tr><td>⑤계약(예정)금액</td><td>금이천사백오십만원정(₩24,500,000)</td></tr>
<tr><td>⑥계약방법</td><td>수의계약</td></tr>
<tr><td>⑦사용잔액</td><td>금오십만원(₩500,000)</td></tr>
<tr><td>⑧사용잔액처리</td><td>유치원회계 여입 조치(공공요금 사용예정)</td></tr>
<tr><td colspan="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에 의거 위와 같이 적립금 집행결과를 제출하며, 적립금을 적립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에는 사용금액 전액을 보전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원금 삭감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유치원장(직인) 설립자 ○○○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td></tr>
</table>
【작성요령】
①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보고)서와 동일(서식1의 사용용도와 같아야 함)
② 적립계획 당시의 재원마련 계획을 참고하여 실제 적립 재원을 기재
③ 적립금 총액 연도별 적립계획의 계와 동일해야 함(원금: 서식1의 목표액 동일)
④ 노후통학차량 교체, 유치원 시설 보수 등 구분에 따른 적합한 사업 명칭 기재
⑤ 집행예정액을 기재하되, 시장조사, 견적서 등을 통해 최대한 현실과 부합하게 산출
⑥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기재
⑦~⑧ 사용 잔액 미 발생을 원칙으로 함
</td></tr>
<tr><td>[기금설치(관리)보고서 서식]

기금설치(관리)보고서</td><td>양식 수정후 [서식4]로 이동</td></tr>
</table>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기금현황
<table>
<tr><th>①기금명</th><th>②예치기관명 (예금종류)</th><th>③ 계 좌 번호 (예금주)</th><th>④ 설 치 일자</th><th>⑤ 예 치 기간</th><th>⑥ 보 고 일 현 재 잔고(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보고일 현재 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증명서 1부 첨부.

20 . . .

○○유치원장 직인

ㅇㅇ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① 사용용도 및 목적을 요약하여 기금명으로 기재
②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기재
③ 예금계좌번호 및 유치원명의 예금주 기재
④ 적립금 보고, 수리에 따라 기금의 확정(계좌개설일) 일자 기재
⑤ 적립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⑥ 보고일 현재 기금(예치금)잔고 기재</td><td></td></tr>
<tr><td></td><td>[서식6] 적립금 사용결과 보고서

적립금 사용결과 보고서

기관명 : ○○유치원
<table>
<tr><td colspan="2">① 적립목적(용도)</td><td>노후통학차량 교체</td></tr>
<tr><td colspan="2">② 적립총액</td><td>금이천오백만원정(₩25,000,000)</td></tr>
<tr><td rowspan="6">집 행 내 역</td><td>③ 사업명</td><td>어린이 통학차량 구입</td></tr>
<tr><td>④ 계약방법</td><td>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td></tr>
<tr><td>⑤ 계약일</td><td>2023.5.10.</td></tr>
<tr><td>⑥ 준공(납품)일</td><td>2023.6.20.</td></tr>
<tr><td>⑦ 집행(지출)일</td><td>2023.6.23.</td></tr>
<tr><td>⑧ 집행내역 (집행 잔액 처리계획)</td><td>■ 집행내역
- 집행금액: ₩24,500,000원
- 내역: 25인승 어린이 통학차량 1대 구입
■ 집행잔액 처리계획
- 집행잔액: ₩500,000원
- 계획: 2018학년도 유치원회계 여입 조치하여 전기요금 사용 예정 (2018.7.10. 추경예정)</td></tr>
<tr><td colspan="3">※ 첨부: 증빙서류</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td><td>(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사본, 집행 내역서, 공사 전·중·후 사진, 통학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년 월 일
유치원장(직인) 설립자 ○ ○ ○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작성요령]
①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보고)서와 동일(서식1의 사용용도와 같아야 함)
② 적립금 총액 연도별 적립계획의 계와 동일해야 함(원금: 서식1의 목표액 동일)
③ 노후통학차량 교체, 유치원 시설 보수 등 구분에 따른 적합한 사업 명칭 기재
④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방법 기재(수의계약, 입찰 등)
⑤ 계약일(계약서 계약일자 기재)
⑥ 공사 완공(준공)일, 통학버스 납품일 기재
⑦ 대금 지급(지출)일 기재
⑧ 집행세부 내역 및 사용 잔액 발생 처리 계획(잔액 미발생 원칙으로 함)</td></tr>
<tr><td></td><td>[서식7] 적립금 관리대장(유치원용)

○○유치원 △△적립금 관리대장

□ 적립용도(사업명) : ○ ○ ○
□ 적립처 : 예) ○○은행 123-45-678910
□ 적립기간 : 예) 2018. 3. 1.~2023. 2. 28.(5년간)
(단위 : 원)
<table><tr><th rowspan="2">적립 연월일</th><th colspan="4">적립내역</th><th colspan="2">사용내역</th><th colspan="2">결 재</th><th rowspan="2">승인일 (교육지원청 관련 문서)</th></tr><tr><th>적립액</th><th>예금이자</th><th>계</th><th>누계액</th><th>적요</th><th>사용액</th><th>기록자</th><th>원장</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적립대장은 사업별로 작성</td></tr>
</table>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td><td>[서식8] 적립금 기금 운용 대장(교육지원용)

적립금 기금 운용 대장(○○교육지원청)

(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유치원명(법인명)</th><th rowspan="2">적립금승인일자</th><th rowspan="2">관련공문</th><th rowspan="2">적립용도</th><th rowspan="2">사업명</th><th rowspan="2">적립목표액</th><th rowspan="2">적립개시일</th><th rowspan="2">적립종료일</th><th colspan="5">기 금 현 황</th></tr>
<tr><th>연도</th><th>전회누계(A)</th><th>금회적립(B)</th><th>사용액(C)</th><th>계(A+B-C)</th></tr>
<tr><td rowspan="5">1</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5">2</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5">3</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6. 관련 조문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td><td>좌동</td></tr>
</table>

변경전	변경후
제33조(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58조의2 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하는 행위 다.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변경전	변경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감가상각) ①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4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⑤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다만,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4항 및 [별표 6] 비고 6에 의거 해당유치원 운영 규모, 정원 대비 취원율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제 6장 감사지적 사례	
1. 교직원 인건비 등 관련 [※ 관련법령 등 감사지적 근거] ▹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사용자는 퇴직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해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5·12·127~129·134·13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6·198조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해당 과세기간(1.1 ~ 12.31.)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함 ▹ 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등 위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자를 제외하고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좌동

변경전	변경후
(사례 1) ○○유치원장은 1년간 총 급여 0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근거도 없는 수당으로 매월 0,000천원 1년간 추가 수령 (사례 2)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정실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00,000천원을 지급하고도 조리실 업무보조 명목으로 합계 00,000천원을 추가 부당 지급 (사례 3) 유치원 교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설립자에게 월 급여 0,000천원 부당 지급 (사례 4) 행정관리실장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8개월)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퇴직급여 명목으로 0,000천원 지급 (사례 5) 실제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에게 통학차량 운전기사 인건비 지급 (사례 6) 근로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거나, 연말정산 대상자임에도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음 (사례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등 위 4개 법률에서 정한 적용 제외자가 아닌 조리보조원, 보조교사, 운전원 등 근로자에 대해 최소 5월에서 최대 1년 동안 4대 보험에 미가입 (사례 8) 설립자 배우자를 시설관리원으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 및 구체적인 근로조건 명시하지 않는 등 형식적 근로계약 체결 후 보수로 월 0,000천원 지급 (사례 9) 근로계약 조건 없이 실질 경영자에게 임시고용직 명목 인건비 월 00천원 지급 (사례 10) 방과후 활동(체육, 태권도, 발레 등) 교사 인건비(급여·수당 등) 000,0000천원을 해당교사가 아닌 원장에게 지급 (사례 11) 가족 직원채용 후 별도 증빙 없이 00,000천원 지급	
2. 공적 사용료 및 차입·적립금 관련 [※ 관련법령 등 감사지적 근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및 제21조 :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며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적립금 및 차입금은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유치원	좌동

변경전	변경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 ▹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사례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없이 적립금 운영 (사례 2) 관할청에 사전보고 없이 적립금 조성 명목으로 원장 또는 설립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료 합계 00,000천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 (사례 3) 예산과목에 없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예산 항목을 임의로 편성한 후 유치원의 별도계좌에 합계 000,000천원을 이체하여 보관 (사례 4) 시설 적립금 0,000천원을 원장 본인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총 00,000천원을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적립	
3. 사적사용 및 수익자부담수입 등 관련 [※ 관련법령 등 감사지적 근거] ▹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되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수납한 날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함 ▹ 재무회계 규칙 제6·10조,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 및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학교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학교장에게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학교장이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재무회계 규칙 제32·33조 :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	좌동

변경전	변경후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 각 시도별 공립유치원 및 학교회계 규칙 및 사립유치원 업무편람 : 수익자경비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추진내역(예·결산 내역,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등)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금액 이상 잔액발생 시 수익자에게 환불하여야 함 (사례 1) 지출증빙도 없이 원장 배우자가 개인자격으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유치원 인근 토지 매매계약 잔금 00,000천원을 “자연학습장 임차 계약금” 명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지출 (사례 2) 유치원 원장 본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ㅇㅇ어린이집 원아수가 줄어들어 인건비 등 운영비가 부족하자 유치원회계에서 지출명령 및 증빙 없이 어린이집 계좌로 00,000천원 이체 (사례 3) 운동장 및 체험학습장 임대료를 집행하면서 원장 개인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사용·임대료 지급 (사례 4) 원장 배우자 소유 체험학습장의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비 0,000천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부적정한 경우) (사례 5) 지출결의서나 거래당사자도 없이 견학·행사용으로 현금 00억 원, 설립자의 다른 유치원회계 계좌로 0억 0천만 원 지출 (사례 6) 사무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계약과 상이 또는 근로계약 없이 보수 지급하고 설립자겸 원장의 개인 양도소득세를 유치원회계 운영비에서 지출 (사례 7) 유치원 2층에 거주하는 설립자 개인의 공공요금을 유치원 공공요금에 포함하여 납부 (사례 8) 원장 자녀의 대학등록금 등 00,000천원 유치원회계에서 집행 (사례 9) 모텔·호텔비, 노래방, 성인용품 등 원장 개인명의 카드 사용 874회 00,000천원을 유치원 증빙으로 첨부하여 지출 (사례 10) 원장 개인차량 할부금(00,000천원), 보험료(0,000천원), 자동차세 및 과태료(0,000천원)를 유치원회계에서 집행	

변경전	변경후
(사례 11) 경조사비 명목 00,000천원 원장 개인계좌 이체 (사례 12) 루이비통 가방(0,000천원) 및 지갑(000천원) 등 교직원 선물 구입명목 00,000천원 지출 (사례 13) 설립자 개인 사학연금부담금 0,000천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 (사례 14)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이 불가한 나대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합계 0,000천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 (사례 15) 원장 개인 차량 유류비 0,000천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 (사례 16) 유치원회계에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개인명으로 등록하고 출·퇴근 등 사적 용도로 사용 (사례 17) 동창회비, 대학축제 후원금 등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및 후원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 (사례 18) 유치원연합회비 명목 0,000천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해당연합회로부터 지출내역을 제출 받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육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확인 전제) (사례 19) 유치원 급식물품, 간식, 기타 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유치원에 사용할 물품과 사적사용 물품을 혼용해서 구입한 후 운영비 예산에서 123회 총 0,000천원, 수익자부담 예산에서 184회 총 0,000천원 물품을 구입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 (사례 20) 설립자 개인명의 수입금 수납 후 일정금액이 되면 유치원회계 현금으로 일괄 입금 (사례 21) 여러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면서 기업형으로 회계를 혼합 운영 (사례 22) 지출사유, 지출액 등 지출명령과 사용처 지정 없이 수입금 0,0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지출증빙 없이 총 65회 000,000천원을 지출(일부는 입금증 보관 나머지는 지출서류 및 입금증 일체 없이 회계처리) (사례 23) 급식비 000,000천원을 징수하여 000,000천원만을 집행하여 0,000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환불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처리	

변경전	변경후
4. 공사 등 계약 관련 [※ 관련법령 등 감사지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 :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반영하고 건설공사 발주자는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아동복지법 제29조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도로교통법 제52조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에는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함 ▹ 재무회계 규칙 제53조 : 학교에는 1. 교육용 재산대장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등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사례 1) 3천만 원 이상 공사를 계약·집행하면서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를 갖추지 않고 시설공사 집행	좌동

변경전	변경후
(사례 2) 도면 및 사진대장 등 공사입증 서류 없이 정당한 채주가 아닌 제3자에게 공사대금 00,000천원 지출 (사례 3) ○○유치원 증축 및 보수공사를 ○○업체와 수의계약하면서 분리발주 대상인 전기공사(총공사비 기준 0,000천원)와 통신공사(0,000천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할 소방공사(0,000천원)를 위 증축·보수공사에 포함하여 일괄발주 (사례 4) ○○업체와 계약하여 준공한 "○○유치원 증축 및 보수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 중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합계 0,000천원을 감액정산하지 않음 (사례 5) 0000학년도에 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사례 6) 방과후 과정 종일반 차량 운영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 (사례 7)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집행이 건전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 및 회계장부 미 보관(유용, 횡령의혹으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등 별도조치 필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 연구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